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2011. 7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익 · 유진아 · 변혜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 상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가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과 노후건강 등 노후대비를 어렵게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에 대해 정부와 가계, 기업 등이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어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경제의 활력이 상실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과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이전의 연구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자산운영시장 발전 등 금융의 역

할을 가계위험 관리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거시경제위험 관리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금융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고령친화산업 및 신성장산업 등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계위험에 대해서도 금융은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을 위해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등 공적부문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적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며,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금융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에 발생한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관대한 복지정책은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계 스스로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7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김 대 식

■ 목차

요 약 / 1

I. 서 론 / 24

II.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 / 28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28
2.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 33
3. 베이비 붐 세대 충격 / 36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저출산·고령화 / 40
5. 소결 / 44

III.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 / 45

1.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 45
2.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 55
3.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시장 / 63

IV.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 72

1.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소비 / 72
2.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 / 76
3.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 83
4. 소결 / 89

V. 저출산·고령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 91

1. 가계위험 관리 / 92
2. 거시경제위험 관리 / 147

VI.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168

1. 가계위험 관리 / 168
2. 거시경제위험 관리 / 199

■ 목차

VII. 결론 / 211

| 참고문헌 | / 220

■ 표 차례

- 〈표 II-1〉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29
- 〈표 II-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30
- 〈표 II-3〉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 31
- 〈표 II-4〉 우리나라 및 주요국 총부양비 / 32
- 〈표 II-5〉 출산 관련 통계 추이 / 34
- 〈표 II-6〉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 35
- 〈표 II-7〉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 37
- 〈표 II-8〉 베이비 붐 세대의 교육 수준 / 37
- 〈표 II-9〉 베이비 붐 세대의 산업별 취업 분포 / 39
- 〈표 II-10〉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41
- 〈표 II-11〉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 41
- 〈표 II-12〉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고용률 추이 / 42
- 〈표 II-13〉 주요국 고용률 / 43
- 〈표 III-1〉 OECD 잠재성장률 전망치 / 53
- 〈표 III-2〉 세목별 조세수입 국제비교(2006년 기준) / 55
- 〈표 III-3〉 60세 이상 인구비중의 국제비교 / 56
- 〈표 III-4〉 퇴직연금 적립금 및 도입 사업장 수 추이 / 57
- 〈표 III-5〉 분야별 재정지출 국제비교(2006년 기준) / 59
- 〈표 III-6〉 OECD 사회복지 항목별 지출 추계 비교(2005년 기준) / 60
- 〈표 III-7〉 공적연금 재정추계 / 61
- 〈표 III-8〉 건강보험 재정추계 / 62
- 〈표 III-9〉 연령별 월평균소득·평균지출 차이 / 64
- 〈표 III-10〉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 66
- 〈표 III-11〉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 66
- 〈표 III-12〉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 67
- 〈표 IV-1〉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2009년 기준) / 73
- 〈표 IV-2〉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 78

■ 표 차례

- 〈표 IV-3〉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 78
- 〈표 IV-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 79
- 〈표 IV-5〉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구성 / 80
- 〈표 IV-6〉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 85
- 〈표 IV-7〉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 86
- 〈표 IV-8〉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 86
- 〈표 V-1〉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 96
- 〈표 V-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추이 / 97
- 〈표 V-3〉 30년 가입 시 연금액 비교 / 98
- 〈표 V-4〉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국제비교 / 112
- 〈표 V-5〉 국민건강보험 재정추이 / 114
- 〈표 V-6〉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추이 / 119
- 〈표 V-7〉 200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율 및 본인부담률(기능별) / 120
- 〈표 V-8〉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급여율 추이 / 121
- 〈표 V-9〉 연도별 급여비와 본인부담의 증가율 추이 / 122
- 〈표 V-10〉 전체 연령과 65세 이상의 1인당 급여비 및 본인 부담 비교 / 124
- 〈표 V-11〉 장기요양 8개 서비스 군 / 129
- 〈표 V-12〉 장기요양등급 / 130
- 〈표 V-1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30
- 〈표 V-14〉 노인성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 131
- 〈표 V-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도 / 132
- 〈표 V-16〉 노인 빈곤률 추이 / 134
- 〈표 V-17〉 고령인구 연금수령 여부 / 135
- 〈표 V-18〉 주요국 노동시장 참가율 비교(55세 이상) / 136
- 〈표 V-19〉 주요국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동기 비교 / 136
- 〈표 V-20〉 아동빈곤률 추이 / 137
- 〈표 V-21〉 주요국 아동빈곤률 비교(상대빈곤률) / 138

■ 표 차례

- 〈표 V-22〉 아동학대 사례유형 / 139
- 〈표 V-23〉 고령인구 수입 중 공공지출 비중 추이 / 141
- 〈표 V-24〉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 증가 / 142
- 〈표 V-25〉 빈곤 및 결식아동 추계 및 급식서비스 지원현황(2007) / 142
- 〈표 V-26〉 디딤씨앗통장(CDA) 저축 현황 / 143
- 〈표 V-27〉 노인인구 취업자 직업별 분포 / 145
- 〈표 V-28〉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방향 비교 / 149
- 〈표 V-29〉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추이 / 152
- 〈표 V-30〉 주요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실적 및 전망 / 156
- 〈표 V-31〉 인구고령화와 금융위기의 재정부담 비교 / 157
- 〈표 V-32〉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158
- 〈표 V-33〉 주요국 국채규모 비중 / 163
- 〈표 V-34〉 MBS 발행현황 / 167
- 〈표 VI-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 170
- 〈표 VI-2〉 노후소득보장의 국제비교(2008년) / 171
- 〈표 VI-3〉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 172
- 〈표 VI-4〉 연금제도의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 175
- 〈표 VI-5〉 401(k)형 은퇴시점 수익보장 연금상품(예: 미국) / 176
- 〈표 VI-6〉 장수스왑 제공 금융회사(예: 영국) / 178
- 〈표 VI-7〉 투자수익률에 따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 180
- 〈표 VI-8〉 전통적 운용과 부채 중심 운용과의 차이 / 181
- 〈표 VI-9〉 고령층의 본인인지 만성질병 수 / 183
- 〈표 VI-10〉 간병비 보장보험 위험보험료 실적현황 / 190
- 〈표 VI-11〉 자산관리 시 고려되는 복합적 재무목표 / 194
- 〈표 VI-12〉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 194
- 〈표 VI-13〉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 195
- 〈표 VI-14〉 금융의 경쟁력 비교 / 205

■ 표 차례

〈표 VI-15〉 고령친화산업 분류 / 206

〈표 VI-16〉 고령친화산업 수요자 추계 / 207

〈표 VI-17〉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 현황 / 208

〈표 VI-18〉 개선 방향 및 실행방안 / 209

■ 그림 차례

- 〈그림 II-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28
- 〈그림 II-2〉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 33
- 〈그림 II-3〉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 35
- 〈그림 II-4〉 2010년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 36
- 〈그림 II-5〉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40
- 〈그림 II-6〉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 42
- 〈그림 III-1〉 일본의 사회보장급부 추세 / 51
- 〈그림 III-2〉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이자율 추이 / 69
- 〈그림 IV-1〉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 76
- 〈그림 IV-2〉 연령대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 / 77
- 〈그림 IV-3〉 향후 마련 가능한 노후소득 / 83
- 〈그림 IV-4〉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 / 87
- 〈그림 V-1〉 국민건강보험 의료서비스 분류체계 / 116
- 〈그림 V-2〉 연도별 급여비와 본인부담의 증가율 추이 / 122
- 〈그림 V-3〉 1인당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추이 / 123
- 〈그림 V-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행태별 분류 / 128
- 〈그림 V-5〉 조기은퇴와 고령인구 근로소득세율 / 144
- 〈그림 V-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비교 / 147
- 〈그림 V-7〉 공적연금 지출 비중 / 158
- 〈그림 V-8〉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 159
- 〈그림 V-9〉 국가부채와 통화가치간의 관계 / 161
- 〈그림 V-10〉 CPI와 BEI 추이 / 165
- 〈그림 VI-1〉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예상)소득대체율 / 169
- 〈그림 VI-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 / 173
- 〈그림 VI-3〉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 174
- 〈그림 VI-4〉 GDP 대비 사적 연기금 자산비율 / 174
- 〈그림 VI-5〉 은행의 자금조달 및 대출 / 200

■ 그림 차례

〈그림 VI-6〉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 201

〈그림 VI-7〉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과 담보대출 비중 / 201

〈그림 VIII-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219

Population Aging and Roles of Financial Markets

Population aging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growth, public finance, and asset markets. They also can change household' behaviors regarding consumption and savings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by exploring macroeconomic risks and household risks that population aging may cause, and suggest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to help the government (public sectors) and households to manage them.

While this topic is important because the baby-boom generation approaches retirement and the group of people aged 65 and older will increase unprecedentedly fast in Korea during the next several decades, which will shrink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pensions and medical care due to the fiscal sustainability, little work has been done on population aging-related risk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market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may need to reconsider the appropriate sharing of risks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household sectors, although shifting more risks to households. Second,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of financial markets should be enhanced to support economic growth by dividing economic resources more efficiently. Third,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private pensions and private medical insurance plans) are required for households to convert their savings into a dependable income stream during retirement.

요약

I. 서론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거시경제와 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거시적인 측면과 가계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함.

II.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노인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임.
 -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출산율(1.2명)이 OECD 평균(1.8명)보다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임.
 - 저출산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결혼 감소, 초산 연령 증가 등이 거론되나 이 이면에는 고용불안 심화, 주택마련비용 증가, 결혼관의 변화,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

- 또한 총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차: 1955~63년 출생, 2차: 1968~74년 출생)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 도래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미치기 시작함.
 - 일본의 경우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 은퇴로 숙련노동력 부족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한 바 있음.
- 따라서 속도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거시경제 및 가계에 미칠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함.

Ⅲ.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

1.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 저출산·고령화는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저축률 하락, 자본축적 둔화, 노동공급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9년 4% 중반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1인당 교육투자가 확대될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될 수도 있음.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양(+)의 경제성장을 유지함.
 - 우리나라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이 나타날 개연성이 적지 않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 보다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중요함.
- 한편,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행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할 경우 젊은 세대는 저축을 늘리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이 필요함.

2.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기준으로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20.5%인 반면 우리나라는 6.9%에 불과하나 동 비중은 2030년 14.4%, 2050년 20.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향후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박형수·전병목(2009)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은 2009년 GDP 대비 0.3%에서 2030년 1.22%, 2050년 1.64%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자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스템의 재정의 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시장

-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과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 및 수익률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함.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가구는 음(-)의 저축을 보여야 하는데, 실증분석 결과 은퇴가구도 양(+)의 저축을 시현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금융자산 수요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 공급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실질이자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실질기준으로 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무엇보다도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드는 한편,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대,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주로 저축률 하락과 금융자산 수요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변화에 금융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금융이 노후소득보장 및 노후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 주택연금, 민영건강보험 등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럴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완화되어 금융증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상쇄될 수 있을 것임.

IV.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1. 저출산·고령화와 가계소비, 저축 및 자산

- 은퇴 이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생애주기가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음.
 - 4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18%로 가장 낮고 6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26.5%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금융자산은 은퇴 직전(59~54세)에 가장 많고 부채는 이보다 이른 40~43세(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이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임.
 - 은퇴 이후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은퇴 이후 순자산이 부족함을 깨닫는 한편,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함.
-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면 실물자산(비중 79%)에 집중되어 있고 노후 대비와 관련된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음.
 -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보험 및 연금이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30%, 일본 27%, 영국 54%에 비해 비중이 낮음.

2. 저출산·고령화와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53.6%)과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41.3%)인 것으로 조사됨.
-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현재 소득의 58.9%이나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0% 정도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안중범·전승훈(2006)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음.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51.9%가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 37.6%가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함.
-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인 저소득층이 51% 차지하여 OECD 평균 30%에 비해 매우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가계의 저축률이 하락하지 않는데, 이는 은퇴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함에 따라 부의 부족과 건강위험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임.
 - 가계자산구성 측면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필요한 노후대비에 취약함.
 - 노인가구의 노후준비가 부족하며 은퇴를 앞둔 세대의 경우 역시 노후준비가 부족함.

V. 저출산·고령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1. 가계위험 관리

가. 공적연금

- 국민연금은 1999년 4월부터 가입대상이 전국민을 포괄하게 되었고 두 차례의 모수적 개혁을 통해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의 보장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
 - 그러나 204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인데,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으나 적절하게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무기여연금 방식으로 도입되었는데,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매월 9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1960년 1월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시행), 군인연금(1963년 시행) 등인데,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재정적으로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사학연금도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 둘째,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므로 실제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3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함.
 - 203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은 60~7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개선방안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나.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첫째, 보장성(2008년 급여율이 56.6%)이 OECD 국가(평균 80%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재정수지에 연동되어 있음.
 - 둘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의 연도별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노인의료비 절감과 민영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민영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노후건강에 대한 자조노력이 필요함.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식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와 중증 대상자만이 혜택을 받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은 크게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임.
 - 동 질환자 수는 2002~07년간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에 달하고, 65세 이상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같은 기간 6.8%에서 10.8%로 증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급여 대상자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차상위 중증 대상자들에까지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라. 사회복지

-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이 높고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음.
 - 2008년 기준 노인인구의 31.3%가 절대빈곤층, 32.7%가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등 노인인구의 빈곤률이 매우 높음.
 -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령자는 2010년 46%에 불과하고, 연금수령자 가운데 85%는 50만 원 미만을 수령함.

-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박형수·전병목(2009)의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2009년 8.1%에서 2040년 17.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재정을 통한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조할 수밖에 없으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지출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거시경제위험 관리

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기본계획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였고, 2010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예정임.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227개의 과제를 구성함.

나. 성장잠재력 확충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보장 및 근로시간 제한, 육아휴직제도 운영, 여성고용 촉진시설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성 수준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도 1995년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추월하여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임.

- 서비스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가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를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함.
 - 첫째, 서비스업 중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김현정(2006)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 서비스 비중과 경제성장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
 - 저출산·고령화 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특히 낮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부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체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 등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업의 영세성 및 저수익성으로 인한 투자여력 악화,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투자 저조 등이 거론됨.
 -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와 시장확대를 유도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재정건전성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 IMF가 추정한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부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2% 수준임.

-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정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함.

- 첫째,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을 늘려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됨.
- 둘째,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 －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조세수입만으로 국가부채 상환이 어렵고 화폐화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함.
 - － 더욱이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가 높아질수록 실질가치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높은 물가상승을 용인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라. 금융인프라 구축

■ 금융이 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수위험과 장기자산 운용위험(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 첫째,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장기국채발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연동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셋째, 장기국채시장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채의 공급물량이 재정운영 기조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채공급 물량을 여러 종류의 만기로 분산시킬 경우 국채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 넷째, MBS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

VI.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1. 가계위험 관리

가. 사적연금

- OECD 주요국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으로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함.
 -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은 약 20% 정도에 불과함.
 - 표준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12.5%,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7.5%(월 20만 원 가입)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1975년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이 단지 17.4%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1985년 33.3%, 2000년 이후에는 50%를 상회함.
 - 영국의 경우 은퇴 후 연금시장은 1996년 이후 3배 이상 성장하여 2007년 140억 파운드 규모이며 성장추세가 지속됨.
 - 일본 역시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연금시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액연금보다 변액연금의 성장세가 뚜렷함.

- 둘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발생하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스왑(Longevity Swaps), DB 플랜 바이아웃(DB플랜 Buy-out)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개발함.
 - 우리나라도 DB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80%에 이르고 있고 머지않아 퇴직연금급부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됨.
 - 또한, DC형과 연계된 은퇴시점 수익보장형상품(예: Q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 대체율 증대)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이 필요함.
 - 특히 퇴직시점에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형 투자상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률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민영의료보험

-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90%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 상태임.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수는 2002~2007년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이었고 노인인구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2002년 6.8%에서 2007년 10.8%로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어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금융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함.

-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약관상 명시된 보장제외항목을 제외하고 임의비급여의료를 포함한 모두를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영의료보험이 임의비급여를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실손형 의료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역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임.
 - 그러나 노인인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장기간병보험

- 장기간병보험(LTC: Long-Term Care)은 이동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상장애 상태나, 기질성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돌봐야 하는 치매 상태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임.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민영장기요양보험의 잠재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사 협력방안,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둘째,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함.
 - 이것은 다양한 정액형 상품과 실손형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보험료 산정 시 안전 할증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셋째, ‘치매 상태’ 혹은 ‘일상생활장애 상태’, ‘활동불능 상태’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넷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함.
 - 다섯째,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음.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손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 보험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공적 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적 보험의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소득이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추가 또는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간병보험은 공적 보험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 치매에 집중되어 있는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확대해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라. 자산관리서비스

-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임.
 -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함.
 - 즉, 평균생활 유지 목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생활 수준 개선 목표를 위해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포함되는 한편, 기본 생활 보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상품이나 연금의 활용이 요구됨.
-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취급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MMI 2008)임.
 - 자산관리서비스는 한 계좌에서 단일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SMA부터 시작하여,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MDA를 거쳐,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 및 금융상품 유형을 수용하는 UMA로 진화함.

-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기 때문임.
 -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개별성을 제외하면 신탁과 집합투자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
 -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자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① 복합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 도입,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 인프라 개선, ③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신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신탁 도입이 요구됨.
 -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객의 소비 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판매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방형·판매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셋째, 적합성원칙에 기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의 활용이 요구됨.

2. 거시경제위험 관리

가. 금융중개기능 및 경쟁력 제고

- 금융중개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기능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측면에서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많이 공급하고 있음.
- 회사채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10% 내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됨.
- 보험의 경우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에 의한 신용대출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권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음.

- 첫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음.
- 둘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 및 주식의 단순중개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셋째,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relationship lending)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음.
- 넷째, 대출 시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계대출 대신 거래대출(transaction lending)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강종구(2005)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이 높거나 부실여신비율이 낮을수록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및 설비자금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개선을 통한 신인도를 제고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경우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임.
-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 금융부문은 고유의 기능(금융중개, 위험관리, 가격발견, 선별감시, 정보생산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할 경우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함.
 -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금융중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둘째,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임.
 - 금융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산업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달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나. 고령친화산업 지원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임.
 -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의의는 ① 동 산업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 ②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③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국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① 인식 부족, ② 시장성에 대한 불신, ③ 제도적 제약, ④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① 고령친화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시장성 제고, ③ 제도 개선, ④ 장기성장성 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초기에 정부 주도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단법인이나 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금융부문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이 제공 가능함.

VII. 결론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속도나 규모면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건강 등 가계위험을 유발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음.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1980년 이전부터 14세 이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총인구는 각각 2017년과 2019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출산율이 1.2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8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등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하락할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축률 하락과 투자율 하락은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 등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Groome et al.(2006)이 인용한 Standard and Poors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공적연금과 공적

건강보험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2040년경에 선진국 대부분 국가의 국채가 투자 비적격 등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는 자산수요 변화와 저축률 하락을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수요와 자산가격 변화는 저축률 하락과 함께 금융중개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기금 재원이 고갈되는 시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퇴직연금시장 성장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가 준비해야하는 노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을 개혁함¹⁾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 부담이 가계로 이전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자산구성이나 규모가 노후대비에 적절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계의 노후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의 기본적인 역할은 금융중개와 위험관리, 그리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금융중개, 위험관리, 부가가치 창출 등 모든 기능을 통해 금융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금융의 역할을 이보다 매우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의 역할이 중요

1) 2010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발생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도 지나치게 관대한 공적 연금제도 때문이며, 2010년 하반기 프랑스에 발생한 소요사태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하며, 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수적이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연구에서 금융의 역할을 이처럼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으로 범위를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도 저출산보다는 기대수명 연장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 연장보다는 저출산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금융의 역할은 보다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적응하고 대응해 가기에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해 볼 때 노후소득보장과 같이 가계위험 관리에 국한하기보다는 보다 시각을 한층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보다 넓은 시각이라고 해서 금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중개, 위험관리, 부가가치 창출 등 금융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고령화로 인해 저축과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자 하였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위험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보장과 노후건강보장이 어려워질 가계위험과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거시경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금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가계위험과 거시경제위험을 평가하는 한편, 이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저출산·고령화의 특징 및 영향, 그리고 공적부문의 역할 등도 같이 정리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금융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있어 관련이 높다고 생각된 부문만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베이비 붐 세대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거시경제위험을 평가하였다. IV장에서는 은퇴전후 가계의 소비 및 저축행태를 살펴보는 한편 가계의 노후준비 상태를 검토하여 가계위험을 평가하였다.

V장과 VI장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가계위험과 거시경제위험에 대해 각각 공공부문과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추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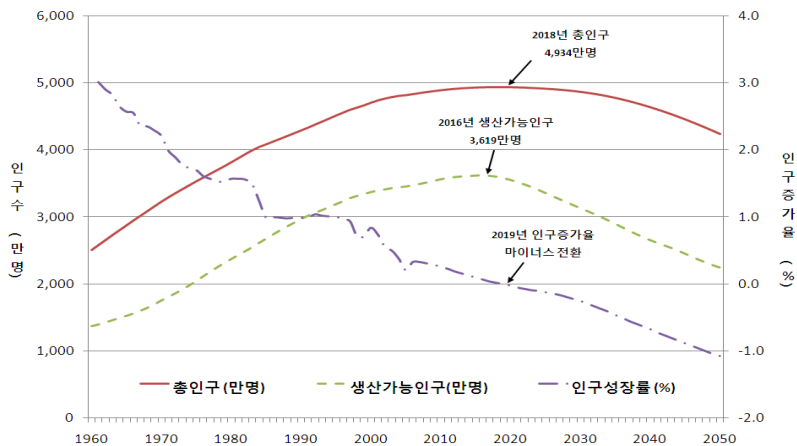
Ⅱ.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은퇴 시기가 도래한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과 노동시장의 특징(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과 가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그림 Ⅱ-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2006).

우리나라 총인구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4,23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²⁾.

또한 15세와 64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보다 2년 빠른 2016년 3,619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 명이 될 것이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15~6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2010년 72.9%에서 2050년 53%까지 낮아질 것이다. 1970년 총인구에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가 42.5%, 노인인구가 3.1%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동 비중은 각각 16.2%, 11.0%로 변동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50년에는 유소년인구가 8.9%, 노인인구가 38.2%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표 II-1〉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 명, %)

연령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1	7,907	6,118	5,525	3,76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2,424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6,156
0~14세	42.5	34.0	25.6	21.1	19.2	16.2	12.4	11.4	8.9
15~64세	54.4	62.2	69.3	71.7	71.7	72.9	72.0	64.4	53.0
65세 이상	3.1	3.8	5.1	7.2	9.1	11.0	15.6	24.3	38.2

자료: 통계청(2006).

2) 1970년 2.21%를 기록하였던 인구 증가율도 2010년에는 0.26%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나.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특징

1) 고령화 속도

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표 II-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 → 14%	14% → 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영국	n.a.	1975년	2028년	n.a.	53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한국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통계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전세계	2002년	2039년	n.a.	37년	n.a.

주: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일 경우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자료: UN(2005); 통계청(2006).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초고령사회로 이행중인 유럽의 주요 국가와 일본 등에 비해 아직까지 인구구조의 고령화 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8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은 프랑스 154년, 미국 89년, 이탈리아 80년, 캐나다 79년, 독일 76년, 일본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다³⁾. 따라서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⁴⁾와 노년부양비⁵⁾의 합)가 높아질 것이다. 총부양비는 2010년 37.2%를 기록하였고 2030년 55.4%, 2050년 88.8%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3〉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부양비	83.8	60.7	44.3	39.5	39.4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8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2.6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67.7	125.9	213.8	429.3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	-	13.5	9.9	-	6.6	4.6	2.7	-

자료: 통계청(2006).

3) 한편, UN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1950년에 8%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 14.4%로 높아졌으며, 2025년경에 20%를 넘어설 것이다. 이에 반해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느린 편으로 1950년에 4% 수준에서 2000년에 5%, 2030년 10% 수준에 도달하며, 2050년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 0~14세의 인구/15~64세의 인구

5) 65세 이상 인구/15~64세의 인구

유소년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나 노년부양비가 2010년 15.0%에서 2030년 37.7%, 2050년 72.0%로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령화지수⁶⁾는 2010년 67.7%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68명 정도이나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 100명당 214명, 2050년에는 42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총부양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2050년 89%에 달하게 되는데 동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 97%, 이탈리아 95%에 육박하며 선진국 평균인 71%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표 II-4〉 우리나라 및 주요국 총부양비

(단위: %)

국가	총부양비		
	2005년	2030년	2050년
전 세계	55	53	57
선진국	48	61	71
개도국	57	52	55
한국	39	55	89
일본	51	74	97
미국	49	60	61
이탈리아	51	69	95
프랑스	53	68	75
중국	41	50	65

자료: UN(2005).

6)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2. 저출산 · 고령화의 원인

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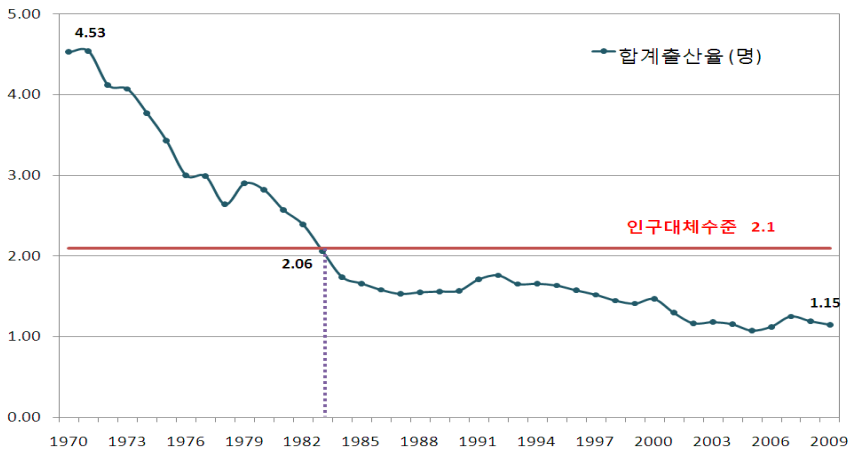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3년 2.08명으로 하락한 이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전통적인 가족 · 자녀관의 변화, 초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의 기회비용을 직 · 간접적으로 증가시켜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으로 직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이 줄어들어 따라 남아선호사상도 사라지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직장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신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자녀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2〉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셋째,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주택마련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져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이상호·이상현, 2010). 실제로 2000년 25~29세 여성 1,000명당 평균 121.8명을 출산하였는데, 동 출산아 수는 2010년 81.1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64.6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30~34세 여성의 경우 1,000명당 출산아 수가 2000년 80.4명에서 2010년 97.8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1.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증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교육 비중은 2.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노후대비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표 II-5〉 출산 관련 통계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합계출산율(명)	1.57	1.63	1.45	1.08	1.16	1.18	1.22	1.26
연령별 출산율 ²⁾	20~24	-	-	28.3	16.4	15.7	15.1	14.7
	25~29	-	-	121.8	90.4	81.1	71.0	64.6
	30~34	-	-	80.4	92.3	97.8	99.5	100.6
	35~39	-	-	17.5	22.3	30.6	40.3	49.6
20~39세 여성인구비중(%)	36.1	37.1	34.9	32.7	29.6	27.1	25.4	22.9
총출생아 수 ¹⁾ (천 명)	649	715	634	435	420	388	375	367

주: 1) 1990~2005년, 2009년 출생통계 결과; 2010~2025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2)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임.

자료: 통계청; 이상호·이상현(2010)을 재인용함.

나. 기대수명 연장

의학의 발전과 소득 수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10년 현재 79.6세(남성 76.1세, 여성 82.9세)로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서 2030년 83.1세, 2050년 86세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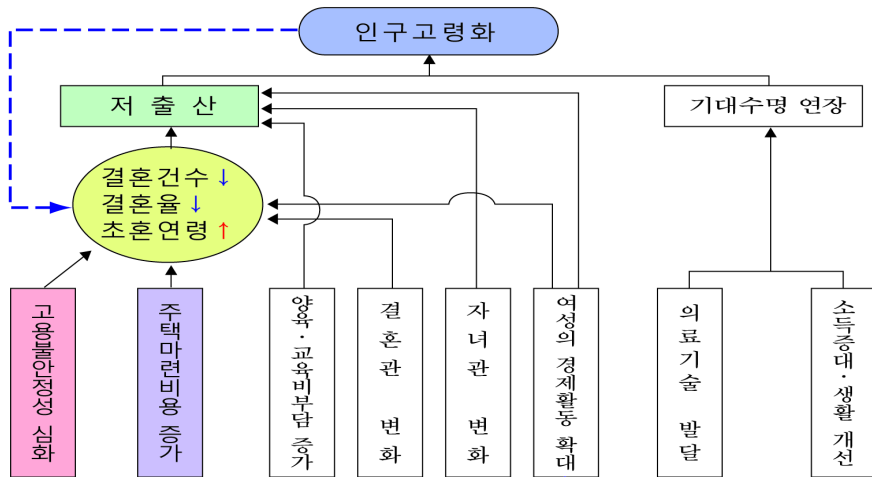
〈표 II-6〉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단위: 세)

기대수명	1971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평균	62.3	65.7	71.3	76.0	78.6	79.6	81.5	83.1	86.0
남자	59.0	61.8	67.3	72.3	75.1	76.1	78.0	79.8	82.9
여자	66.1	70.0	75.5	79.6	81.9	82.9	84.7	86.3	88.9

자료: 통계청.

〈그림 II-3〉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자료: 이상호·이상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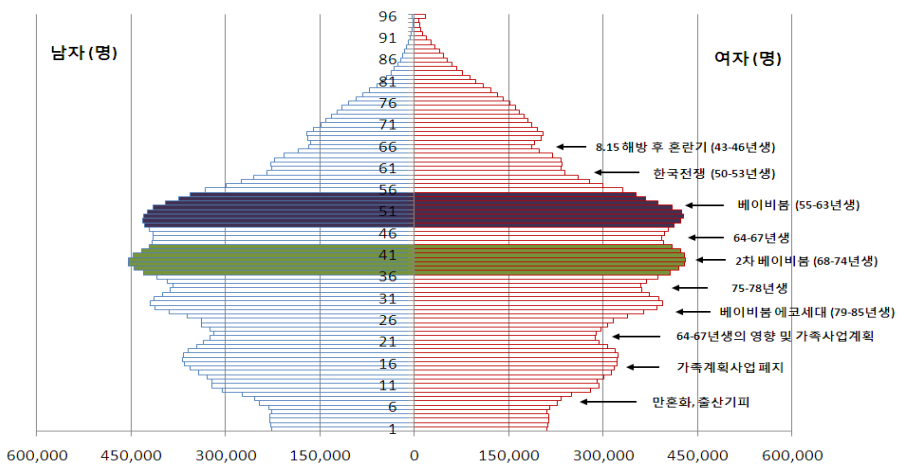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3. 베이비 붐 세대 충격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36~55세)는 1,3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베이비 붐 세대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과 1963년 사이 출생)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8년과 1974년 사이 출생)로 구분된다.

은퇴 시기(55세)가 도래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 712만 명이 며 인구 비중은 14.6%이다.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 603만 명이 며 인구 비중은 12.4%이다. 이들이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에 고령화지수나 노인부양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들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 2010년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베이비 붐 세대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의 출생자를 베이비 붐 세대라 칭하며 인구의 26.0%인 7,800만 명 정도이다. 일본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의 출생자가 베이비 붐 세대인데 678만 명으로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표 II-7〉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한국	미국	일본
출생시기	1955~1963년(1차) 1968~1974년(2차)	1946~1964년	1947~1949년
연령(2010년)	47~55세, 36~42세	46~64세	61~63세
인구규모	1,315만 명 (전체 인구 중 26.9%) 2010년 인구추계	7,798만 명 (전체 인구 중 26.0%) 2006년 인구추계	678만 명 (전체 인구 중 5.3%) 2005년 인구추계

자료: 박시내·심규호(2010)를 재구성함.

일본의 경우 인구의 5.5%인 베이비 붐 세대가 3년에 걸쳐 은퇴함에 따라 숙련 노동자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 베이비 붐 세대의 교육 수준

(단위: %)

학력	이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42~50세)	이후 세대	
	60세 이상	51~59세		30~41세	19~22세
초졸 이하	63.5	26.3	8.7	1.2	0.4
중학교	13.5	23.7	16.7	3.7	1.1
고등학교	14.3	33.5	46.1	46.7	27.0
대학교	7.6	14.0	24.6	43.3	68.8
대학원	1.0	2.6	3.9	5.1	2.7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조사; 박시내·심규호(2010)에서 재인용함.

박시내·심규호(2010)가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을 잘 정리하였는데 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으나 베이비 붐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낮다. 200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 63.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22.9%에 불과하다. 51~59세 연령층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50.1%, 베이비 붐 세대인 42~50세 연령층의 경우 74.6%에 달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도 28.5%에 이른다.

이러한 고학력 추세는 이후 세대에 더욱 심화되는데 2005년 기준으로 30~41세 연령층과 19~29세 연령층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각각 95.1%, 98.5%에 달하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도 각각 48.4%, 71.5%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적자본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셋째, 베이비 붐 세대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이후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농업,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후 세대는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문화 등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도 1차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비중이 더 높다. 이것은 1차 베이비 붐 세대보다는 이후 세대가 생산성이 높거나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가 요구되는 일부 서비스산업의 취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더라도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실업 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9〉 베이비 붐 세대의 산업별 취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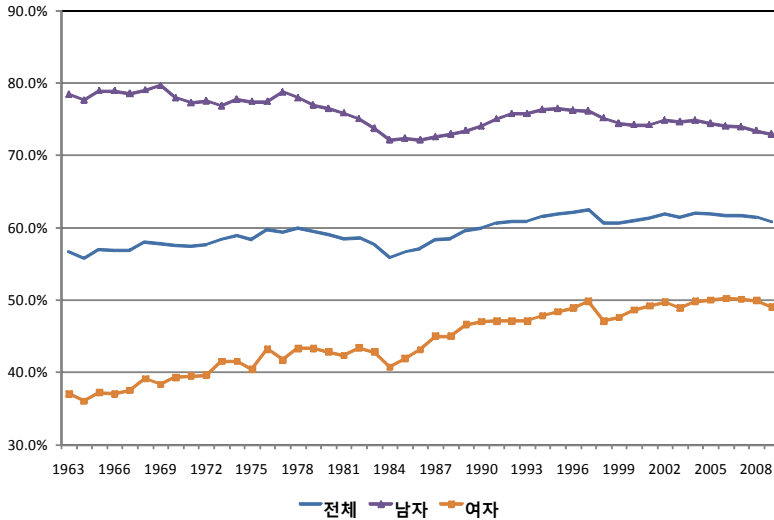
직업	전체	51세 이상	1차 (42~50세)	2차 (30~36세)	에코세대 (20~26세)
농림, 임업	10.36	33.09	6.79	1.93	1.01
어업	0.53	1.15	0.64	0.19	0.12
광업	0.11	0.15	0.14	0.07	0.04
제조업	19.73	11.18	20.88	22.18	23.47
전기가스, 수도	0.45	0.30	0.51	0.57	0.31
건설업	7.48	6.19	9.61	7.81	3.88
도매 및 소매업	15.03	11.80	15.27	16.28	16.80
숙박 및 음식업	7.74	7.10	10.47	5.78	6.88
운수업	4.63	5.60	5.80	3.85	2.41
통신업	1.17	0.46	1.15	1.65	1.43
금융 및 보험업	3.28	1.25	3.04	4.79	3.54
부동산 및 임대업	2.39	4.36	2.31	1.72	0.86
사업서비스업	5.82	3.71	4.08	8.35	8.17
공공행정업	3.85	2.74	4.17	4.75	3.13
교육서비스업	6.77	3.69	5.93	8.25	9.86
보건 및 사회복지	3.60	1.46	2.19	4.20	9.33
오락, 문화	2.04	1.09	1.62	2.51	3.79
공공, 개인서비스	4.39	3.94	4.68	4.66	4.32
가사서비스	0.27	0.50	0.41	0.08	0.02
국제, 외국기관	0.05	0.06	0.05	0.05	0.02
분류 불가능	0.31	0.18	0.27	0.34	0.62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조사; 박시내·심규호(2010)를 재편집함.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저출산·고령화

가.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II-5〉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2010b).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⁷⁾은 1980년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6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보다 월등히 높으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6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남성은 77%, 여성은 53%를 보이고 있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65세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성은 40%, 여성은 23%로 나타난다.

7) 경제활동 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총인구

〈표 II-10〉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64세	전체	64.4	64.8	65.6	65.4	66.1	66.3	66.2	66.2	66.0	65.4
	남성	77.1	77.1	77.9	78.0	78.3	78.2	77.7	77.6	77.3	76.9
	여성	52.0	52.8	53.5	52.9	54.1	54.5	54.8	54.8	54.7	53.9
65세 이상	전체	29.6	30.0	30.7	28.8	29.8	30.0	30.5	31.3	30.6	30.1
	남성	40.6	41.2	42.7	39.8	41.4	41.2	41.9	42.9	41.9	41.5
	여성	22.8	22.9	23.0	21.5	22.2	22.5	22.7	23.3	22.9	22.2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매우 낮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이며 영국, 캐나다와 독일은 70%를 상회하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1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1%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인구의 빈곤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표 II-11〉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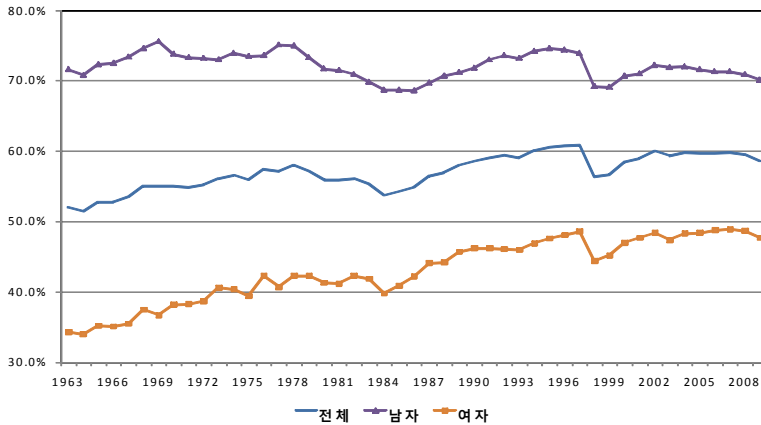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OECD	
15~64세	전체	73.9	74.6	76.6	78.1	76.4	70.6	62.4	65.4	70.6
	남성	84.8	80.4	83.2	81.8	82.2	75.1	73.7	76.9	79.9
	여성	62.9	69.0	70.2	74.4	70.4	66.2	51.1	53.9	61.5
65세 이상	전체	20.1	17.2	7.8	10.5	4.1	1.5	3.2	30.1	12.3
	남성	29.4	21.9	10.5	15.1	5.9	2.2	5.8	41.5	17.6
	여성	13.1	13.6	5.6	6.6	2.7	1.0	1.3	22.2	8.4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나. 연령별 · 성별 고용률

〈그림 II-6〉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0b).

우리나라 취업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990년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동참가율과 유사하게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1985년 이후 여성의 고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II-12〉 우리나라 연령별 ·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 ~ 64세	전체	61.5	62.1	63.3	63.0	63.6	63.7	63.8	63.9	63.8	62.9
	남성	73.1	73.5	74.9	75.0	75.2	75.0	74.6	74.7	74.4	73.6
	여성	50.0	50.9	52.0	51.1	52.2	52.5	53.1	53.2	53.2	52.2
65세 이상	전체	29.5	29.9	30.5	28.6	29.6	29.8	30.3	31.1	30.3	29.7
	남성	40.3	41.0	42.4	39.6	40.9	40.8	41.5	42.5	41.4	40.9
	여성	22.7	22.9	22.9	21.5	22.2	22.4	22.7	23.3	22.8	22.1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우리나라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남성은 7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보이고 있고, 남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은 40%, 여성은 2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보다 비교적 격차가 작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약 6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52.2%에 머물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남성과 여성 모두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산업별 취업 분표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노인인구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주요국 고용률

(단위: %)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OECD	
15~64세	전체	70.0	67.6	70.6	71.5	70.4	64.1	57.5	62.9	64.8
	남성	80.2	72.0	75.7	74.0	75.5	68.4	68.6	73.6	73.0
	여성	59.8	63.4	65.6	69.1	65.2	60.0	46.4	52.2	56.7
65세 이상	전체	19.5	16.1	7.6	10.1	4.0	1.4	3.1	29.7	11.9
	남성	28.4	20.5	10.1	14.5	5.8	2.0	5.7	40.9	16.9
	여성	12.9	12.8	5.5	6.4	2.7	0.9	1.2	22.1	8.1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5. 소결

고용불안, 사교육비 증가, 주택마련비용 증가 등에 따라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수도가 줄어드는 등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의학기술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은 유소년인구를 감소시키는 한편 노인인구를 증가시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불안, 주택마련비용 및 사교육비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Ⅲ.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재정 및 금융시장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조세수입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로 금융시장이 충격이 받을 수 있다. 본 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거시경제위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Malthus의 인구론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시대에 따라 그 관점이 변화하여 왔다(Bloom et al., 2001).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구 규모나 증가율 보다는 인구의 연령별 분포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청년기나 장년기에 소득 이하로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함으로써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이후 노년기에 축적된 자산을 소비함으로써 은퇴 이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자산을 소비하는 가계가 증가하여 가계 저축률이 저하됨에 따라 저축률이 낮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경우 조세수입 감소와 사회보장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정부의 재정 측면에서도 저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Feldstein-Horioka(1980)는 투자와 저축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축률이 떨어지면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자본 축적이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할 경우 투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국제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투자와 저축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어 부족한 저축을 해외로부터의 투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일본경제산업성, 2006). 이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하였다.

가. 해외 연구

저출산·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측면을 강조한 연구와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를 강조한 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공급측면을 강조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외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연구로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 Hviding and Merette(1998), Miles(1999) 등이 있다. 이들은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고령화는 주로 저축률 하락 및 노동공급 감소의 경로를 통하여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외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 입각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Fougere and Merette(1999), Sadahiro and Shimasawa(2002)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증가를 하락과 피부양인구 비율 증가가 저축률을 감소시키지만 교육투자 증대가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Cutler et al.(1990)은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설정하고 미국의 고령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Becker, Murphy and Tamura(1990) 등 내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자녀 수 감소에 따라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상승한다면 이러한 내생적인 동인에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급측면을 강조한 연구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본 축적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공급과 수요 모두를 강조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의 다양한 파급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더불어 세대 간 경제적 행태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Martins et al.(2005), 전 세계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Bloom et al.(2008) 등이 있다.

Martins et al.(2005)은 저출산·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부양비율 상승을 통하여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총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생산성 등 총 공급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전망하였다. 상술하면 직접적 효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노동공급 축소로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성장률이 둔화되며, 간접적 효과로는 노인부양비율 상승으로 저축(자본공급)이 감소하여 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1인당 자본비율 제고,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을 강조하였다⁸⁾.

8) 정부의 추가적인 개혁이 없는 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 국가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고령

한편, Bloom et al.(2008)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연령별 경제적 행태도 변화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성장보다는 후생수준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 고용, 저축 등에 대한 연령별 경제적 행태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연령별 상대적 인구 규모의 변화가 임금, 고용, 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연령별 구조가 변화함과 동시에 연령별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기대도 변화하기 때문에 연령별 경제행태 자체가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청년층은 이전 세대의 청년층에 비해 기대수명의 연장을 기대하여 이전 세대 보다 경제활동기간의 연장이나 저축 증대, 소비시기 지연 등의 다른 행태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 세대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존재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Bloom et al.(2008)은 이처럼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전통적인 경로인 노동공급과 자본축적 이외에 연령별 경제행태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경우 국가별 인구의 연령별·성별 구조나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연구에서도 생산성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및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노동의 양적

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2050년까지 1인당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0.3%p의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25% 수준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투입이 감소하고, 또한 자본축적도 저축률 하락에 의해 둔화될 것이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방식으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동석(2004), 동태적 성장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김원규(2004),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을 고려한 김기호(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김대일(2004), 신관호·황윤재(2005) 등은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경제성장 둔화 내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연금제도의 성숙이나 사회복지지출 등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소비 감소와 저축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 소비패턴은 보건의료비를 증가시키거나 교육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후생을 분석한 전영준·유일호(2004)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노후대비 예비적 동기를 약화시켜 저축을 감소시키고, 조기은퇴 형태로 노동공급 감소를 유발하는 한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 부담도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강희돈·소인환(2005) 또한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별, 계층별로 그 방향과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가구주의 은퇴 전후 소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안종범·전승훈(2004)은 가구주의 은퇴 전후 소비 수준은 변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비 수준 불변은 생애주기가설의 소비평탄화와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기(2009)는 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 및 대외 7개 부문을 연계한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노인부양비 증가에 대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화가 진전되어 노인부양비가 증가될 경우

총저축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 일본 연구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노동투입은 중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 인구는 1998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 후생노동성은 연령별·성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노동인구는 2030년까지 약 1,050만 명 줄어든다고 전망하였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짧은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1인당 노동시간이 축소하여 노동공급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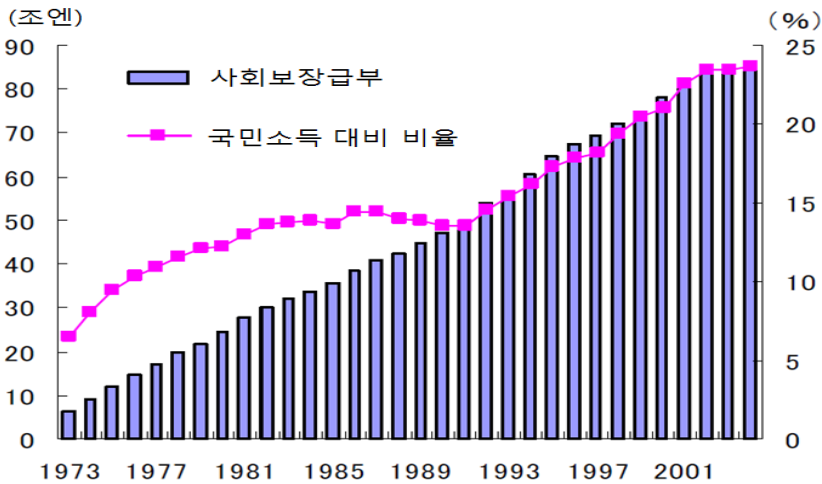
이러한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内閣府(2000)는 생산성이 연율 1.5%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연율)은 취업자 수의 감소에 따라 2010~20년 1.5%, 2020~35년 1.4%, 2035~50년 1.2%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자본축적이나 생산성, 특히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향상으로 상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일본 경제성장에는 노동 투입보다는 자본 투입이나 TFP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향후 감소할지라도 자본축적이나 생산성 향상에 의해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内閣

9) 즉,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p 상승하면 연간 노동시간이 36시간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노동투입은 200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1%, 2010년대 전반에는 -1.2%, 후반에는 -0.9%의 속도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府(2005)는 노동력 감소는 노동자 1인당 자본량(자본장비율)을 제고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력의 희소성이 높아져서 노동집약형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經濟産業省(2006)은 자본축적이나 지적자산의 활용, 기술개발 등을 통해 TFP가 향상되면 그 자체가 잠재성장력의 향상과 더불어 기대 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서 자본축적을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높이기 때문에 자본소득, 기술진보, 인적자본 등 인구 이외에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인구감소 혹은 노동력 감소가 노동의 질적 저하나 제품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 자본축적이나 TFP 향상이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牧野, 2006; 吉川, 2006).

〈그림 Ⅲ-1〉 일본의 사회보장급부 추세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

한편, 사회보장재정의 악화에 따른 국민부담 증대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급부비(연금·의료·복지 및 기타를 합한 금액)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소득 대비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 비율(국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나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면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의 고용이나 가계의 노동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이윤율을 저하(가치분소득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저축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가 가계 저축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축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가계 저축률의 급격한 저하에는 경기침체에 의한 가치분소득의 감소도 작용하고 있어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 없지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생애주기가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인구고령화는 저축률 저하를 초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經濟産業省(2005, 2006)도 퇴직한 노인인구의 저축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생애주기가설의 성립여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ホリカワ(1996)는 증여나 유산이 반드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가설이 현실에 타당한가는 전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이 저하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저축률 저하의 원인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저하된다는 견해는 국내저축의 감소가 국내투자를 억제하고 자본스톡 축적을 둔화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소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는 노동의 양적·질적 공급, 자본스톡 형성, 생산성, 국민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이 상에서 살펴본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대체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저축률을 하락시키고, 저축률 하락이 투자 둔화와 자본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OECD(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10~11년 4.0%에서 2012~25년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세연구원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2009년 4% 중반 대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III-1〉 OECD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

국가	2010~11	2012~25	국가	2010~11	2012~25
한국	4.0	2.4	프랑스	1.2	1.5
터키	3.6	3.4	독일	1.3	1.3
호주	3.2	2.9	유로존	0.8	1.5
멕시코	1.9	2.2	일본	0.8	0.9
뉴질랜드	1.6	2.4	이탈리아	0.3	1.5
캐나다	1.6	1.6	그리스	0.3	1.4
미국	1.4	2.3	스페인	-0.2	2.0
영국	1.2	1.8	OECD 평균	1.2	1.9

자료: OECD(2010).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모

든 연구에서 총요소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할 경우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교육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다행히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 비중 및 IT와 결합한 인적자본 수준이 최상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출산을 저하 과정에서 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찬영, 2009). 즉,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 개혁 등 교육 시스템과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외충격에 취약하며 수출의 고용유발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장 양육 및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제2차 기본계획¹⁰⁾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의적절해 보인다.

10) 이에 대해서 IV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이 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변화를 조세수입과 재정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수입 및 세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근로소득자가 감소할 경우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은퇴인구의 소득 및 소비성향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절은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 및 세입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표 Ⅲ-2〉 세목별 조세수입 국제비교(2006년 기준)

(단위: %)

국가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
	개인	근로자					
호주	59.8	36.7	-	-	26.6	8.9	4.7
캐나다	49.8	37.4	14.4	5.8	23.6	9.9	2.3
프랑스	23.9	17.0	37.1	9.3	24.7	8.1	6.2
독일	31.2	25.1	36.6	16.1	29.3	2.5	0.4
이탈리아	33.7	25.6	30.0	5.3	25.2	4.9	6.2
일본	36.4	19.6	36.4	15.9	18.0	9.0	0.2
한국	31.8	16.7	20.8	11.6	31.3	12.8	3.3
멕시코	27.7	-	15.3	-	53.1	1.7	2.2
스페인	33.2	19.8	32.6	4.9	25.5	8.0	0.7
터키	23.7	17.0	21.7	8.8	47.7	3.8	3.1
영국	39.5	30.1	18.4	7.5	29.2	3.8	3.1
미국	49.0	38.1	23.4	10.3	16.6	11.0	0.0

자료: OECD(2009c); 전승훈(2009)을 재인용함.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개인소득과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반면 소비과세 비중이 높다. <표 Ⅲ-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영국의 경우 30% 이상에 달하고,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각각 17%와 19.6%이다. 그리고 소비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1.3%인데 이는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소비세 비중은 23~29%, 미국과 일본의 소비세 비중은 각각 16.6%와 18%이다.

2007년 기준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 이상이고, 영국 및 프랑스는 동 비중이 21% 이상이다.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로 여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도 낮다.

<표 Ⅲ-3> 60세 이상 인구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2007	18.3	18.6	21.6	25.3	25.7	28.1	14.2	8.7	21.9	21.0	17.2
2040	20.5	31.5	31.6	39.0	39.9	43.3	38.6	22.3	37.9	27.9	25.4

자료: Jackson et al. (2010).

소득과세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늘릴 여지가 있지만 세제가 현행을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을 통한 조세수입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과 자산보유이득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근로소득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근로소득은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하락하는 속도는 은퇴가구의 증가 속도보다 낮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저출산 기조가 유지될 경우 1인당 교육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인적자본 축적이 심화될 수 있다. 자본장비율이 상승하여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지만 1인당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근로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근로소득세 하락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보유이득 가운데 은퇴가계와 관련된 항목은 연금저축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제는 기여단계와 운용단계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수급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동 과세체제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 1월에 도입되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 및 도입 사업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Ⅲ-4>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퇴직금 적립액은 2005년 163억 원에서 2010년 12월에 약 29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가입사업장 수도 2005년에는 미미하였는데 2010년 12월에 9,400여 개로 증가하였다. 현재 노동시장에 잔존한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저축 추이가 지속될 경우 향후 동 세대가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르면 연금에 대한 조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Ⅲ-4> 퇴직연금 적립금 및 도입 사업장 수 추이

(단위: 억 원, 개)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적립금	163	7,568	27,550	66,122	140,248	291,472
사업장 수	-	16,87	30,882	50,462	70,503	94,455

자료: 금융감독원(2010).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지연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동 부분에서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들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퇴 후 생활에 대비하여 연금저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와 함께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로 근로소득세 하락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1인당 근로소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1

인당 보유하는 금융자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한 세대가 은퇴와 동시에 금융자산을 일괄 매각하지 않는다¹¹⁾면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이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과세 이외의 조세수입 항목은 소비과세와 재산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 소비과세의 경우 은퇴가구의 소비행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계가 은퇴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 소비세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수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로 변동을 보여 왔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추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¹²⁾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재산과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재정규모 및 세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우선 노인인구의 소비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하면서 교육, 복지 등의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본 절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와 세출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2006년 기준)는 GDP 대비 30.2%이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36.7%와 44.3%,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52.7%와 49.9%에 달한

11) 금융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근로가구에 부과되는 자본보유 이득세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은퇴하면서 자산을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 금융자본보유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표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등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험한 나라의 경우 은퇴와 동시에 자산의 일괄 매각이 관찰되지 않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가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12) 최준욱 외(2005); 현대경제연구원(2005).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데 반해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75.5%와 64.1%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개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사업에 지출되는 비중이 높다.

〈표 Ⅲ-5〉 분야별 재정지출 국제비교(2006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국가	일반행정	경제사업	사회개발			합계	
			사회보장	보건	교육		
캐나다	9.9 (25.3)	3.4 (8.7)	25.9 (66.1)	9.2	7.3	7.2	39.2 (100)
프랑스	10.0 (19.0)	2.9 (5.5)	39.8 (75.5)	22.3	7.2	6.0	52.7 (100)
독일	8.7 (19.2)	3.3 (7.3)	33.4 (73.6)	21.2	6.2	4.0	45.4 (100)
이탈리아	12.0 (24.0)	5.9 (11.8)	32.0 (64.1)	18.2	7.0	4.5	49.9 (100)
일본	7.3 (20.2)	3.6 (10.0)	25.2 (69.8)	12.2	7.1	3.8	36.1 (100)
한국	8.2 (27.2)	6.4 (21.2)	15.6 (51.7)	3.7	4.1	4.7	30.2 (100)
스페인	7.5 (19.5)	5.0 (13.0)	26.0 (67.5)	12.8	5.6	4.3	38.5 (100)
영국	10.0 (22.6)	2.8 (6.3)	31.5 (71.1)	15.9	7.1	5.8	44.3 (100)
미국	11.2 (30.5)	3.7 (10.1)	21.8 (59.4)	7.0	7.7	6.2	36.7 (100)

자료: OECD(2009a).

우리나라와 일본 및 유럽국가의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항목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의 경우 2007년 기준 노인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각각 17.2%와 18.6%로 고령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이 GDP의 3.7%인데, 일본 및 유럽국가의 경우 12~23%에 달한다.

〈표 Ⅲ-6〉 OECD 사회복지 항목별 지출 추계 비교(2005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국가	1.노령	2.유족	3. 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7.실업	8.주거	9.기타	합계
캐나다	3.7	0.4	0.9	6.8	1.0	0.3	0.6	0.4	2.2	16.5
프랑스	10.9	1.8	1.9	7.8	3.0	0.9	1.7	0.8	0.4	29.2
독일	11.2	0.4	1.9	7.7	2.2	1.0	1.7	0.6	0.2	26.7
이탈리아	11.6	2.5	1.7	6.8	1.3	0.6	0.5	0.0	0.0	25.0
일본	8.6	1.3	0.7	6.3	0.8	0.3	0.3	-	0.3	18.6
영국	6.1	0.2	2.4	7.0	3.2	0.5	0.3	1.4	0.2	21.3
미국	5.3	0.8	1.3	7.0	0.6	0.1	0.3	(a)	0.6	15.9
G-7평균	8.2	1.1	1.5	7.1	1.7	0.5	0.8	0.6	0.6	21.9
OECD평균	7.0	0.7	2.3	6.2	2.0	0.6	1.0	0.4	0.7	20.5
한국(2005)	1.5	0.2	0.6	3.2	0.3	0.1	0.2	-	0.7	6.9
한국(2030)	5.6		0.8	5.1	0.5	0.4	0.4	-	1.0	14.4
한국(2050)	10.2		1.3	6.5	0.4	0.4	0.4	-	1.2	20.8

주: 포르투갈은 2004년 자료임.

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OECD에서 발표하는 9개 기준에 따라 분류¹³⁾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동 결과에서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은 노령 및 보건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21%를 넘어서는 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소득보장과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매우 높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는 보건 및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출이 주요국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2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인구의 보건 및 소득보장을

13) 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 통계기준은 9개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노령·유족은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포함하고, 근로무능력은 산재보험 및 보훈(보상) 지급액을 포함한다. 보건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보험 및 보건의료 등이 해당하고, 가족은 여성, 보육 및 보훈복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고용보험, 기타항목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일반 항목이 해당한다. 주택분야 지출은 OECD 기준 사회보장비 통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한 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부양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다. 두 부분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 반면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라 운용수익이 발생하지만 재정적자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적립기금 적자가 누적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박형수·전병목(2009)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상되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규모와 그에 따른 국고부담을 추계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Ⅲ-7>에 인용하였다. 2009년 기준 공적연금 재정적자로 인한 국고부담은 GDP 대비 0.3%인데 2030년에 이르면 국고부담 비중은 GDP 대비 1.22%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1.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Ⅲ-7> 공적연금 재정추계

(단위: GDP 대비 %)

연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총지출	국고부담
2009년	0.83	1.01	1.84	0.30
2010년	0.86	1.04	1.90	0.32
2030년	2.46	2.11	4.57	1.22
2050년	5.48	2.91	8.39	1.64

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개인소득에 근거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수입보험료는 축소될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지출 측면에서 수진자가 늘어나고 진료단가가 상승하여 진료비가 증가할 것이다¹⁴⁾. 이

14) 노인인구의 평균 진료비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평균진료비는 약 230만 원이고 이는 33~54세 연령 평균진료비 약 67만 원의 3.5배, 55~64세 연령 평균진료비 140만 원의 1.7배이다. 그리고 2008년 기준 건강보험 등록인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33~54세이고 이들 연령층의 인구는 15세 미만 인구의 약 2배에 달한다. 33~54세 연령층이 은퇴하기 시작할 때 보험료 수입

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박형수·전병목(2009)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국고부담을 추계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Ⅲ-8>에 인용하였다. 건강보험은 공적 연금과 달리 매년 국고지원을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누적되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8> 건강보험 재정추계

(단위: GDP 대비 %)

연도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2009년	2.72	0.41	2.03	0.28
2010년	2.77	0.41	2.03	0.33
2030년	4.08	0.41	2.03	1.65
2050년	5.12	0.40	2.01	2.71

자료: 박형수·전병목(2009).

다. 소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조세수입 감소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을 100% 재정지출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재정수지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사회복지 지출 축소 이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은 감소하는 한편 이들의 진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스템이 재정지출에 의존(tax-based system)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비즈니스 모형을 응용한 민간 투자시스템에 의하여 운영(individual investment system)¹⁵⁾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수요자의 자활과 사회복지시스템이 민간투자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령 미소금융과 금융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 투자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전환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유인체계가 요구된다.

3.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시장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감소하여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자산 수요 변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5) Feldstein and Ranguelova(2001), Feldstein(2010)은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로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 건강보험(Medicare, Medicaid) 등의 사회복지시스템을 가능한 민간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individual investment based)이다.

가. 저축률 하락

인구구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가계는 일생에 걸쳐 소비를 평활화하기 때문에 은퇴 직전까지 자산을 축적하고 축적한 자산을 이용하여 은퇴 전과 유사한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은퇴가구의 경우 소비수준을 줄이는 것이 관찰되었고, 축적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하는 속도는 생애주기가설이 예측하는 것처럼 빠르지 않았다¹⁶⁾. 그리고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소득이 은퇴 직전에 비해 약 57%로 감소하고 평균 저축은 양(+)¹⁷⁾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연령별 월평균소득·평균지출 차이¹⁾

(단위: 천 원)

연령집단 ²⁾	평균소득 (A)	평균지출 (B)	평균 저축 (A-B)	55세 이상 가구대비	
				소득차	지출차
20~24세	2,249	1,760	489	896	545
25~29세	2,389	1,911	478	1,037	697
30~34세	2,510	2,020	491	1,158	805
35~39세	2,563	2,091	472	1,210	876
40~44세	2,536	2,076	460	1,184	862
45~49세	2,346	1,932	415	994	717
50~54세	2,000	1,667	333	647	452
55세 이상	1,353	1,215	138	-	-

주: 1) 1987~2007년 기간평균임.

2) 1986년 당시 연령기준, 즉 55세 이상 연령층은 1932년 이전 출생자임.

자료: 통계개발원(2008).

16) Hamermesh(1984); Banks et al.(1998); Bernheim et al.(2001).

17)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상당수가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여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애주기가설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은퇴가구가 소득을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저축하는 이유는 잔존 기대여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가계저축률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이 저하되거나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소득원이 불안정해지면서 저축률 하락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런데 잔존여명 및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 또는 자산증여 동기를 추가하여 생애주기이론을 확장한 경우에도 은퇴가구의 저축률 증가 또는 하락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¹⁹⁾.

나. 자산수요 및 자산시장의 변화

저출산 · 고령화는 실물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세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 고령화로 위험회피성향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반영하여 가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비중(80%)이 가장 높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가계는 이보다 낮은 자산의 40~60%를 부동산으로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동안 주거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높고 또한 투자리스크 분산 등에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⁰⁾.

18) 정후식(2007).

19) Carroll(1997, 2001); Munnell and Sunden(2003); Hurd(1989); Bernheim(1991); Kotlikoff and Summers(1981).

20) IMF(2005)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안전자산(예금) 대비 비안전자산(가치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의 투자변동성을 계산하였는데, 부동산을 비안전자산에 포함하게 되면 비안전자산의 투자변동성은 크게 하락하였다.

〈표 Ⅲ-10〉 한국·일본·미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단위: %)

자산 종류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금융자산	20	57	43	42	48	62
비금융자산	80	43	57	58	52	38

주: 한국은 2006년, 다른 나라는 2003년 자료임.

자료: 이상호(2010); IMF(2005).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인구의 비중이 큰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²¹⁾. 일본의 경우 부동산 보유비중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크고 안전한 자산(예·적금)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연금 및 보험)의 비중이 늘어났다.

〈표 Ⅲ-11〉 일본가계의 자산구성 추이

(단위: %)

자산 종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3년
비금융자산	66	65	61	44
금융자산				
• 주식·채권	10	10	12	10
• 예·적금	21	21	17	27
• 연금·보험	3	4	10	19

자료: IMF(2005).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도 부동산 비중은 줄고, 채권과 연금 및 보험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의 경우 은퇴인구가 필요로 하는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 필요한 유동자산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크다. 연금 및 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득공제 등에 힘입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대다

21) IMF(2005) 자료에서 일본 가계 자산구성비 응답자 가운데 30~49세 및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각각 31%, 63%이다.

수가 아직까지 노후를 대비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금 및 보험의 비중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2〉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단위: 조 원, %)

구분	2002 4/4	2005 2/4	2008 2/4	2010 2/4
통화·예금	589 (54)	644 (49)	763 (44)	956 (47)
연금·보험	232 (21)	289 (22)	409 (23)	498 (24)
주식·채권	247 (22)	357 (27)	560 (32)	584 (29)
채권	91 (8)	121 (9)	204 (12)	200 (10)
주식	156 (14)	236 (18)	356 (20)	384 (19)
금융자산	1,084 (100)	1,306 (100)	1,745 (100)	2,054 (100)

주: ()는 각 금융자산의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4분기 22%에서 2010년 2/4분기 29%로 증가하였다. 가계는 금융시장 활황기를 경험한 이후에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에서도 1990년대 주식시장 활황기를 지나면서 가계가 예·적금 보유비중을 줄이고 주식 및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²²⁾.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를 앞둔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주식시장 참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주식 보유 비중은 현재 은퇴인구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권의 경우 장기보유 또는 만기보유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표)이 창출되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은퇴가구에게 유용한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채권 유통시장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 진행²³⁾중이기 때문에 가계가 채권을 보유할 유인은 증가할 것이다.

22) IMF(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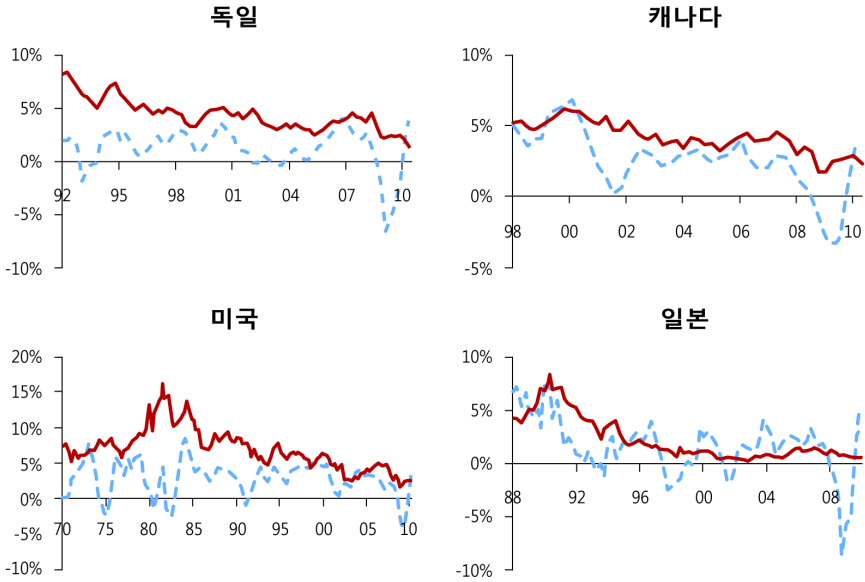
23) 2010년 3월 채권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여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 및 매매호가 등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자산가격 및 수익률 변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산가격과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결과는 없다. 예를 들면, Mankiw and Weil(1989)은 미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1990년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Abel(2000)도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자산수요 감소로 주식 및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택은 내국인에 의해 수요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Poterba(2001, 2004)는 저출산·고령화로 주택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공필·남재현(2005)은 자산가격 변화에 따라 자산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연구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주택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질기준으로 볼 때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산수익률이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림 Ⅲ-2>는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이자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양자가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면 실질이자율도 같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2〉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이자율 추이



주: 실선은 실질이자율을, 점선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Bloomberg.

라. 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중개기능이다. 구체적으로는 흑자경제주체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적자경제주체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강종구, 2005).

금융중개기능은 기본적으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면 가계대출이나 담보대출, 그리고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및 신용대출이 증가하여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Berger and Udell, 1996; Gorton and Winton, 2002)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선별되어 기술혁신도 촉진된다(King and Levine, 1993).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이 제고되면 증권 인수 및 증개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증개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 배분을 의미하는 금융증개기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증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증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저축률 하락으로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 수요와 주식 수요가 고령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점도 금융증개기능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금융이 자산수요 변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증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마. 소결

저출산·고령화 진전은 무엇보다도 저축률 하락과 자산수요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것이나 안정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노후보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시장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성숙되어 있지 않다. 금융은 이러한 노후보장수단을 제공하여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자산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할 경우 대량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되어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것이라

는 우려도 있으나 기존연구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주택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분석이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자산수요가 변화하여 자산가격이 변화할 때 자산공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공급이 일정하다면 자산가격이 수요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자산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산공급이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변한다는 것은 금융시스템이 성숙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나타날 자산수요 변화에 대해 적절한 금융상품 공급으로 금융이 대응한다면 자산가격에 미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역모기지 등 주택연금이 활성화된다면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도 주택가격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이 자산수요 변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즉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일부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기 유발, 쏠림 현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이 적절한 노후보장수단을 제공할 경우 자산가격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금융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저축률의 하락으로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예금 수요와 주식 수요가 고령화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점도 금융중개기능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금융이 자산수요 변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IV.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본 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과정 및 이해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계의 미시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는 저출산·고령화를 가져오는 동인(출산을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이자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경제·사회 현상에 대해 가계가 미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가계위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소비

가. 가계의 소비행태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기대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경로를 선택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는 생애 전체의 부(Lifetime Wealth)를 생존기간에 걸쳐 평탄하게 소비하므로 합리적 가계는 구성원이 은퇴를 하더라도 소비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불확실성, 예비적 동기의 저축, 여가 선택, 유증 동기 등을 가지고 기본 생애주기가설을 확장한 모형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모형들의 예측은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생애주기에 걸쳐 그들의 생활수준을 평탄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기본 모형과 유사하다²⁴⁾.

24)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서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불

그러나 실제로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정형화된 현상들은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는 다른데, 첫째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부를 계속 축적해 가거나, 은퇴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부가 감소하지만 그 감소 속도는 생애주기가설에서 예측하는 속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둘째,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은퇴 시점에 급격한 소비수준 하락이 관찰되며, 기대된 은퇴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은퇴·소비 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이라고 알려져 있다(Hamermesh, 1984; Banks et al., 1998; Bernheim et al., 2001).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에도 은퇴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비은퇴가구의 소비지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1>은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여주는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의 소비지출은 140만 원 수준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

<표 IV-1>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2009년 기준)

(단위: 명, 세, 원)

구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평균
가구원 수	3.5	3.7	3.2	2.6	3.3
가구주 연령	34.4	44.5	53.7	68.0	47.8
가계지출	2,794,335	3,233,383	2,920,976	1,779,523	2,782,841
소비지출	2,180,049	2,527,540	2,192,953	1,397,227	2,156,133
비소비지출	614,286	705,843	728,023	382,296	626,708

주: 소비지출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여,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 단체로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을 이룸.

자료: 통계청, 가구주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확실성을 들 수 있다.

25) 이러한 현상은 저축 퍼즐(Saving Puzzle)이라고 불리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V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나. 은퇴 전후의 소비행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시사점

가계가 은퇴 이후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크게 부(자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설명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의 축적, 행동경제학적 설명 등이 있다.

미국 RHS(Retirement History Survey)를 사용한 Hamermesh(1984)는 소비와 생애 부(자산)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연구는 은퇴 초기에 있는 가구들의 평균 소비가 소득을 약 14% 정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구는 은퇴 후 짧은 기간 내에 소비를 급감시켜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초기에 누렸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은퇴자들의 부(자산)가 부족하며,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질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Bank et al.(1998)은 영국의 가구지출 조사자료(FES: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여 코호트들의 은퇴 전후 소득과 지출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가계가 은퇴를 대비하여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는 가구주의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소비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 내 인구구조 변화와 사망위험을 고려한 소비평탄모형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직무 관련 비용, 사망위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소비 변화와 그 밖의 가계가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모형을 통해 예측된 소비하락률은 약 2%였던 것에 반해, 은퇴기에 실제 소비하락률은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대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에 의한 소비감소라고 결론지었다.

Bernheim et al.(2001)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1978년에서 1990년 사이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430개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패턴을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은퇴시기에 평균 14%의 소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²⁶⁾. 이들은 은퇴 시기의 급속한 소비감소 행태를 가구들

26) 한편 생애주기가설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가계들이 서로 다른 저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간선호, 위험기피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 노년기

이 은퇴 직후에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점검하고 노후대비가 예상한 것보다 적음을 발견한 후 취한 행태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저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뉴스이고, 가계는 이러한 부정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은퇴가구의 소비행태를 건강위험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의료비 지출은 은퇴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계는 추가적인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Palumbo(1999)는 불확실한 의료비용의 효과를 고려하는 고령가구의 소비결정에 대한 동태적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Palumbo(1999)는 미국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에 나타난 은퇴가구들의 실제 소비수준과 건강 불확실성 모형에 의해 예측되는 소비 수준이 가장 비슷해지는 값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상대위험기피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을 도입한 모형의 설명력이 생애주기모형보다 실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완벽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아울러 Aguiar and Hurst(2005)는 미국 가구들의 식료품 소비에 대한 자료인 CSFII(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 of Individuals)를 사용하여 은퇴가구의 식료품 소비를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은퇴 후 식료품에 대한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데, Aguiar and Hurst(2005)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 시간과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크게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퇴 여부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았고, 실업가구는 실직이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미친 영향에 상응하여 식료품 지출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저자들은 경제주체들이 지출을 시간과 대체함으로써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가에 대한 상대적 선호, 소득대체율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PSID와 CEX(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위와 같은 요소들에 따라 소비패턴이 달라진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심리적인 요소에 의한 설명이 분석결과와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실증연구들은 많은 경우 생애주기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은퇴가 가계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안종범·전승훈, 2005; 석상훈·장선구, 2009),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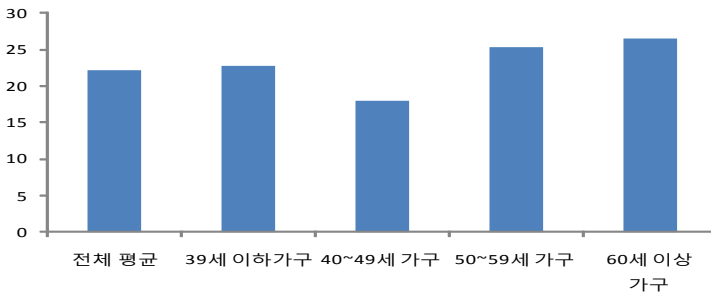
2.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

가. 가계의 저축행태 및 자산구성

1) 가계의 저축행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 저축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 가구주 가계가 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음(-)의 저축이 기대되는 60대 등 고령자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은 26.5%로 오히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통상적인 이론 예측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IV-1〉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주: 1) 2009년 기준임.

2) 저축률=흑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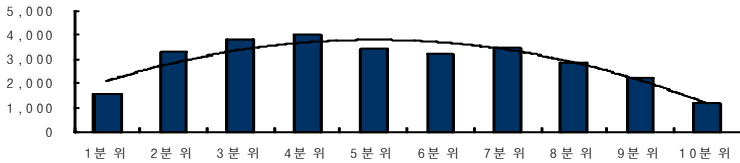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a).

27) 윤재호·김현정(2010)은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약 9%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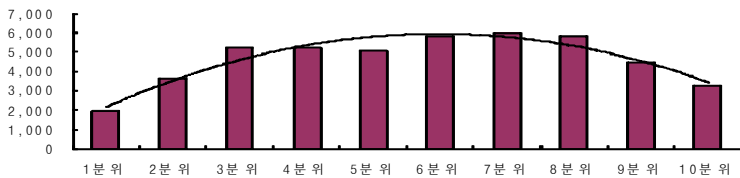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가계자산과 부채 축적은 역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축적 패턴을 비교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축적의 최고점 시기가 상이하다.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계의 연령대별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채도 높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은 은퇴 직전 내지 은퇴시점(49~54세)에 가장 높다.

<그림 IV-2> 연령대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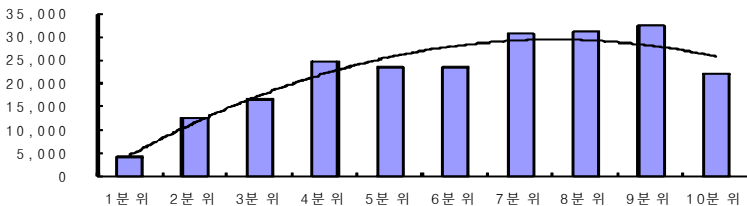
1) 생애주기별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 패턴



2) 생애주기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패턴



3) 생애주기별 가계의 부동산자산 보유 패턴



주: 1) 각 분위별 중위연령은 1분위(28세), 2분위(35세), 3분위(40세), 4분위(43세), 5분위 (46세), 6분위(49세), 7분위(54세), 8분위(59세), 9분위(65세), 10분위(74세)임.

2) 원 자료는 통계청(2007).

자료: 유경원·이혜은(2010).

2) 가계의 자산구성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실물자산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표 IV-2〉 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년	2010년 2/4	2009년	2008년
실물자산	78.6	35.1	54.8	41.3
금융자산	21.4	64.9	45.2	58.7

자료: 1)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금융투자협회(2011), 주요국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함.

2)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실제로 이러한 실물자산 집중 현상은 중·고령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²⁸⁾가계는 주택 등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3〉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자산 종류	2006년	2008년
금융자산	20	18
비금융자산	80	82

주: 1) 1, 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비금융자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전체 시가 및 업체 및 농장의현재자산 가치, 운송수단, 기타 비금융자산가치를 포함함.

28) 중·고령자 가계는 만 45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특히 노인 인구는 건강 악화에 따른 경제적 위협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기 자산배분에 있어서 실물자산 집중 현상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V-4〉는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여준다. 이 중 노후대비와 관련이 높은 보험 및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24%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30%, 일본은 27%, 영국은 54%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각국의 금융시장 성격, 제도적 특징 그리고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는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 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 배)

자산 종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현금·예금	46.6	14.7	28.0	55.8
보험·연금	24.2	29.5	54.4	27.2
금융투자상품	28.4	52.0	13.9	12.9
기타	0.7	3.7	3.6	4.0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6.0	4.6	3.6	2.6

주: 1) 원 자료는 한국 통계청, 미 FRB, 영국 통계청, 일본은행.

2) 영국(2010. 1/4)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0. 2/4분기 기준임.

3) 20~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기준(OECD 추계).

자료: 1) 금융투자협회(2011).

한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 직전 세대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9,633만 원으로 경제적 은퇴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⁹⁾.

29) 조선일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복지재단이 전국 베이비 붐 세대 4,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5〉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구성

(단위: 만 원)

구분	자산 금액
금융자산	4,499
부동산자산	27,500
기타	1,041
총자산	33,040
부채	3,407
순자산	29,633

주: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자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2010).

이상에서 살펴 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가계저축과 자산구성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이후에도 저축률은 높다. 둘째,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채 규모도 높으며, 자산은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시점에 가장 많다. 셋째, 자산구성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았으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보험, 연금 비중이 낮아 은퇴 이후 안정된 소득흐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⁰⁾.

나. 은퇴 전후의 저축행태 및 자산구성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시사점

개인 또는 가구주의 연령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역시 Modigliani and Brumberg(1954)의 생애주기가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연령과 저축간의 관계를 인구 전체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전체의 총 저축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본장 V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관련 소비이론³¹⁾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축의 총량뿐만 아니라 구성 측면에서도 위험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산간 상대적 수익률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생애주기모형에 추가적으로 미래소득 및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유동성 제약, 유증 동기 등을 반영하는 경우 저축에 대한 고령화의 영향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Carroll, 1997, 2001; Kotlikoff and Summers, 1981; Munnell and Sunden, 2003; Hurd, 1989; Bernheim, 1991 등). 이들의 연구 결과는 유증 동기로 인해 은퇴 이후 부와 소비의 시간 패턴이 보다 평활하게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예상보다는 음(-)의 저축이 완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예측은 기본적인 생애주기모형에 현실에 부합되는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수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들은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모형 및 가정, 분석기간, 선정된 변수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수요 및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결과(Mankiw and Weil, 1989; Bergantino, 1998; Brooks, 1998; Davis and Li, 2003 등)가 있는 반면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Poterba, 2001, 2004; Yoo, 1994)이 혼재해 있다³²⁾.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Browning and Lusardi(1996)에 기술되어 있다.

32) 특히 Poterba(2001, 2004)는 미국에서 1945-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인 2020-2050년 기간이 도래하여도 자산수요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산시장붕괴(asset market meltdown)'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산시장붕괴 가설은 미국에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 소비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금융자산(특히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2020년 또는 2030년을 전후하여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자산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가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들은 Sterling and Waite(1998), Dent(1998) 등으로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시장전문가들(market analysts)이었다.

이 중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금융자산 선택 및 이의 장기경로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는 Poterba(2001)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효과를 감안한 연령별 주식보유, 순금융자산, 순자산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령층의 위험자산 보유가 급격히 줄지 않는 이유로 의료비 지출 등을 위한 예비적 동기와 유산동기를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가계의 자산선택 분석에 주택 등 부동산을 포함한 연구들도 존재한다(Grossman and Laroque, 1990; Flavin and Yamashita, 2002; Cocco, 2005). 이 중 Cocco(2005)는 통상적인 모형과는 달리 주택 소유를 감안할 경우 주식투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국내 가계의 자산구성에 대한 연구는 미시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임경묵(2002)은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박창균(2003)은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박창균(2003)은 앞서 현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층의 자산보유 수준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연령효과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개인의 자산보유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고령화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3. 가계의 노후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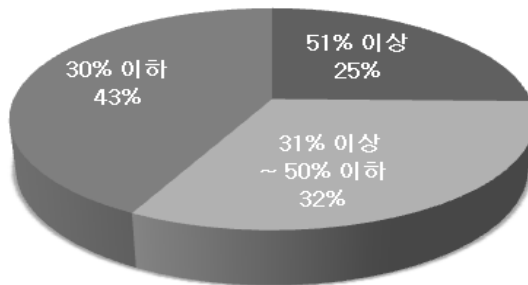
가. 은퇴준비기간 및 은퇴기간

1) 은퇴준비기간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³³⁾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대부분 소득 감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53.6%)과 의료비,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41.3%)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노후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의 평균은 현재 소득의 58.9% 수준이었다.

〈그림 IV-3〉 향후 마련 가능한 노후소득

(N=1,200 / 단위: %)



자료: 보험연구원(2010).

33) 본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퇴직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약 40%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미흡하였다. 안중범·전승훈(2006)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전체 가구의 65%가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과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³⁴⁾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이 금융자산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2.7%,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4.5%, 부동산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2%였다. 한편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6.3%인데 반하여, 은퇴 후 생활비 충당 방법이 자녀로부터의 보조라고 응답한 비중은 8.4%에 그쳤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자신들은 부모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상태 질문에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5.2%,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는 응답이 29.7%, 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응답이 15%로 조사되었다.

2) 고령자의 노후생활 현황 실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09년을 기준으로 344만 원인데 반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8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59만 원으로 전체소득에서 32.3%, 사업소득은 46만 원으로 24.9%, 이전소득은 61만 원으로 56.9%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주 소득원은 친지로부터의 용돈 등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이다.

34) 조선일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메트라이프복지재단이 전국 베이비 붐 세대 4,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6〉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단위: 명, 세, 천 원)

구분	노인가구	전국가구
가구원 수	2.5	3.3
가구주 평균연령	71.2	47.8
소득	1,826.4	3,442.8
경상소득	1,687.1	3,302.9
근로소득	590.6	2,244.0
사업소득	455.0	750.6
재산소득	36.5	-
이전소득	605.1	293.1
가계지출	1,552.7	2,782.8
소비지출	1,228.2	2,156.1

주: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09a).

〈표 IV-7〉은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로 하여 51.9%가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37.6%는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전체로 하여 생활비 마련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9.7%는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27.3%는 연금 및 퇴직금으로, 15.9%는 재산소득으로, 7.1%는 예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및 친척 지원에 의한 생활비 마련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표 IV-7〉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연령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소계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65세 이상	100.0	51.9	100.0	49.7	15.9	27.3	7.1	37.6	10.4	0.0
65~69세	100.0	67.9	100.0	58.0	14.0	22.0	6.0	25.5	6.6	0.0
70~79세	100.0	48.0	100.0	44.2	17.6	30.1	8.1	40.4	11.5	0.1
80세 이상	100.0	23.8	100.0	27.8	18.0	46.2	7.9	59.5	16.7	-
(독거노인)	100.0	33.6	100.0	42.9	15.7	32.2	9.2	43.5	22.9	0.0

자료: 통계청(2009b).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및 미국 등에 비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문제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전문직, 정규직이 아닌 단순 일용직 중심의 비정규직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30.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20.1%, 미국은 17.2%, 영국은 7.8%, OECD 평균은 12.3%의 노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이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 평균
남자	41.5	21.9	10.5	29.4	17.6
여자	22.2	13.6	5.6	13.1	8.4
전체	30.1	17.2	7.8	20.1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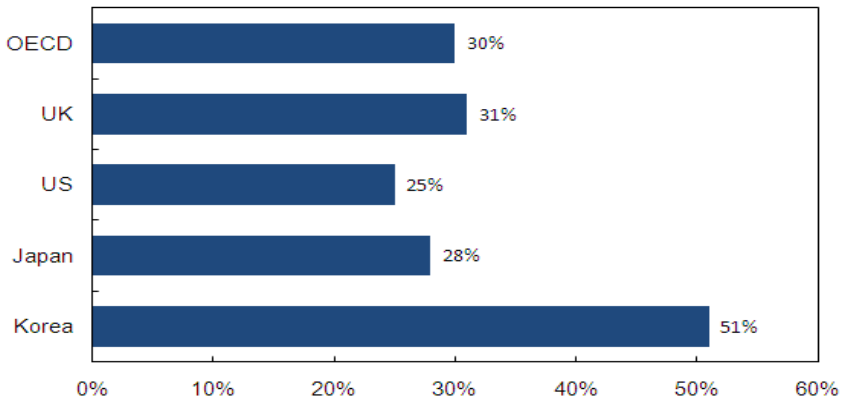
주: 1) 2009년 기준임.

2)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임.

자료: OECD(2010b).

한편, OECD(2008)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5년 현재 각국의 인구를 소득에 따라 총 5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별 구성원을 연령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우리의 관심 대상인 66세 이상 인구에 주목하여 노인인구 중 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의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인구는 51%를 차지하여 OECD 평균 30%와 일본의 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



자료: OECD(2008).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에도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후소득의 적정성

은퇴대비 자산의 적정성 또는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가계의 자산 규모와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을 추정한 후 이들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Duncan, Mitchell and Morgan(1984), Burns and Widdows(1988) 등과 같은 연구들은 은퇴 후 소비에 필요한 순자산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여 대표가구 자산의 기대분포를 추정하거나 분포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별 자산축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Hubbard, Skinner and Zeldes, 1995; Engen, Gale and Uccello, 2000; Scholz and Seshardri, 2006).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한 국내 연구의 경우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은퇴 후 소득 수준이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9)과 같이 은퇴자산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 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예상되는 소비의 약 6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가구주의 연령이 20~59세인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 피델리티자산운용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자산은 8억 4천만 원인데 반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상되는 자산은 5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노후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CSIS에서 발표하는 GAP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적정성지수 순위는 조사대상 20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국가재정지속가능지수(Fiscal Sustainability Index)와 소득적정성지수(Income Adequac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³⁵⁾.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적정성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세 가지 범주인 총소득 범주, 소득취약성 범주,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범주 중 중산층 노령인구에 대한 소득 적정성과 노인빈곤의 정도를 포함하는 소득취약성 범주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물론 GSIS의 GAP지수는 절대적 노후대비 정도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조사대

35) Jackson et al.(2010).

상 국가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나,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적정성 측면의 노후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가계행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퇴 이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축률도 생애주기가설을 토대로 한 예상과는 달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하면서 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소비를 줄이거나 건강위험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가계자산 구성 측면에서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박창균(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택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중이 타 국가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계 금융자산 중 노후대비 자산 성격을 지닌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 가계가 노후대비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노인인구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직전의 베이비 붐 세대들 또한 자신들의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신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CSIS에서 개발한 고령화 대비 지수의 국가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계의 노후대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 가계에 대해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가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데에는 노후대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능력과 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저출산·고령화와 공공부문의 역할

Ⅲ장과 Ⅳ장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어떠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거시경제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시장도 가계의 자산구성이 빠르게 변화될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저축률 하락과 함께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가계는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가계의 자산구성이 부동산 위주이며 금융자산도 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자산의 비중이 낮은 등 노후대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축적된 자산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으며 빈곤율도 높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양(+)¹⁾의 저축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가계 및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공공부문이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부문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역할 분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1. 가계위험 관리

가. 가계의 노후소득보장: 공적 연금

1) 현황

공적연금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 하에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각 제도별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³⁶⁾되었는데, 원칙적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 1,041만 명, 도시지역가입자 672만 명, 농촌지역가입자 195만 명, 임의가입자 9만 명, 임의계속가입자 5만 명으로 총 1,923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³⁷⁾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적립방식의 장점과 부과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지 20년 동안 두 차례의 모수적 개혁³⁸⁾을 통해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의 보장수준을

36) 도입과 관련한 자세한 역사는 보험미래포럼(2010), 국민연금공단(1998) 등을 참조한다.

37) 연금의 재정연금은 완전적립방식, 부과방식, 수정적립방식 등이 있다. 완전적립방식은 가입자들로부터 걷은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연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부과방식은 기금을 적립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지급할 연금액만큼 현 근로세대로부터 각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수정적립방식은 완전적립방식처럼 연금액 100%를 적립하는 게 아니라 후세대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급할 연금액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다.

38) 1998년 말과 2007년 7월에 국민연금법 개혁이 이루어졌다.

70%에서 40%³⁹⁾로 크게 낮추었다. 이는 도입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극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장수준을 높게 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을 낮춘 것으로 제도의 유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보장수준은 저하되었다. 이렇게 보장수준이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고, 보험료가 적절히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오른 후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을 넘긴 현 상황에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 말 현재 약 5만 7천명에 이르고 월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 정도이다. 물론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이외에도 특례노령연금 162만 명, 감액노령연금 40만 명, 조기노령연금 21만 명, 분할노령연금 4천 6백 명에 이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2008년부터 무기여연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 방식의 보충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2008년에는 1인당 8만 4천 원, 2009년에는 8만 8천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 4월부터는 9만 원으로 인상되었다⁴⁰⁾.

나) 특수지역연금

먼저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3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⁴¹⁾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사립학교교직

39) 1998년 법 개정으로 60%로 낮추어진 보장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춘 후, 다시 이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는 것이다.

40) 부부기준으로는 2008년 13만 4천 원, 2009년 14만 8백 원, 2010년 14만 4천 원이다.

41) 2000년 1월 12일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었다.

원을 대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시작되었으며⁴²⁾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적용된다⁴³⁾. 가입자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104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⁴⁴⁾.

이들 세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모두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⁴⁵⁾, 군인 연금의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2000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2010년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적자 상태에 있다⁴⁶⁾. 사학 연금은 아직은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2021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⁷⁾.

급여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이외에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⁴⁸⁾가 지급되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성격과 산재보험의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기여금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가입자인 교원과 사무직원의 경우 각각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을 부담하고, 법인은 교원과 사무직원분에 대하여 각각 7,000분의 4,117과 7,000분의 7,000을 부담하며, 국가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원분의 7,000분의 2,883을 부담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부담하며 국가가 군인이 부담

42) 그 이전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43) 군인연금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병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4)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는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45) 특수지역연금은 본래 적립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적자 등이 발생하면서 연금채무 전액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46)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군인연금은 1973년에 재정적자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47) 사학연금공단(http://www.ktpf.or.kr:8088/hp/pension/pension_02_04.jsp?lpgbn=pension_02_01).

48) 재해보조금과 사망조위금으로 구성되는데, 군인연금에서는 재해보상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9만 3,096명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 중 26만 910명이 퇴직연금, 2만 9,489명이 유족연금, 2,697명이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부양률은 연금 수급이 개시된 이래 가장 높은 27.7%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 1만 5,098명 중 1만 3,816명이 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선택률은 91.5%⁴⁹⁾에 이르고 있다.

군인연금은 2007년 현재 68,044명이 수급하고 있는데, 이 중 52,124명은 퇴직연금, 14,831명은 유족연금, 1,089명은 상이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2007년에 20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운 전역자 2,550명 중 2,430명이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어 퇴직연금선택률은 95.3%로 역대 가장 높았다.

2) 문제점

가) 재정적자의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지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적자 상태에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1년에, 국민연금은 2044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수입과 급여가 일치하지 않아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1988년 도입 당시 본래 예정된 보험료율 9%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1992년까지는 3%, 1997년까지는 6%를 적용하고, 1998년부터 9%로 인상하여 적용한 후에 요율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율 인상이 어려워지자 소득대체율을 1999년에 70%에서 60%로 낮춘 후 다시 2007년 개혁을 통해 2008년에 50%로 낮추고 다시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함으로써 재정적자가 도래하는 시기는 늦추어졌다. 즉, 본래는 1998년 개혁으로 2033년

49) 연금선택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5년으로 94.6%이다.

에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7년 개혁으로 2046년으로 13년을 늦춘 것이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연금수익비가 1을 넘는다는 것은 기금운용수익률이 탁월하지 않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크을 의미하므로 결국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요율을 인상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수준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감⁵⁰⁾이 커서 보험요율 인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V-1〉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가입연도 \ 소득 수준	50만 원	159만 원	360만 원
1988년	4.4	2.4	1.7
1999년	4.0	1.9	1.4
2008년	3.7	1.8	1.3
2028년	3.6	1.7	1.2

주: 2005년 평균소득임.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또한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앞으로 계속하여 줄어드는 데 반해 연금수급자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연금산식을 보면 그 자체에서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수의 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요율 인상을 하지 않고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⁵¹⁾.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요율 인상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50)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감은 기금고갈로 국민연금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낮은 기금운용수익률, 자금활용의 경직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연유되고 있다.

51) 요율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시 교사 등 많은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표 V-2〉 참조). 그러나 그 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정설계 시 보험료 수준에 비해 급여 수준을 너무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금이 아닌 연금 선택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진 데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0년부터 기여율이 인상되었지만⁵²⁾ 급여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안정은 도모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재정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0년에 걸친 장기수지는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표 V-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연도	2001년	2005년	2009년	2010년
적자규모	599	6,096	19,931	24,037

주: 2010년은 추정치임.
 자료: 행정안전부(2010).

1973년부터 시작된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재정설계 시 보험료 수준에 비해 급여 수준을 너무 높인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아직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학연금도 재정설계 시 보험료 수준에 비해 급여 수준을 너무 높게 하여서 2021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나)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저하

재정적자 심화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각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개혁으로 인해 생애평균소득 기준으로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다시

52) 기준에 5.525%이던 공무원의 기여금 및 정부부담률이 2010년에 6.3%, 2011년에는 6.7%, 2012년에 7.0%로 인상되었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므로 실제로는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라 3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3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별로 예상연금수령액을 비교하면 기준 소득이 50만 원일 경우 2018년에 수급하면 50만 원, 2038년에 수급하면 37만 원이 된다.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노후소득금액 수준은 퇴직전 소득의 60~70%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은 기준을 충족할지 모르나, 2009년 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83만 6천원의 59.8~44.3%에 지나지 않아 두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V-3〉 30년 가입 시 연금액 비교

(단위: 만 원)

기준 소득	기존 20년 향후 10년 (‘18년 수급자)	기존 15년 향후 15년 (‘23년 수급자)	기존 10년 향후 20년 (‘28년 수급자)	기존 5년 향후 25년 (‘33년 수급자)	향후 30년 (‘38년 수급자)
360	117	110	101	94	88
300	105	98	90	84	78
250	94	88	81	75	70
200	84	78	71	66	61
180	80	74	68	63	58
150	73	68	62	57	53
100	63	58	53	49	45
50	50	48	43	40	37

주: 1) 개정 시점은 2008년이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함.

2)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산식에 의해 단순 계산함.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국제비교를 통해 이러한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2.1%로 OECD 평균 59.0%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저소득계층⁵³⁾의 경우에도 64.1%로 OECD 평균 71.9%에 비해 낮

53)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자 군을 말한다.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령소득빈곤률(old-age income poverty rates)은 45.1%로 OECD 평균 13.3%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OECD, 2008).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기존 공무원은 직전 퇴직소득의 70%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았으나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은 연금산식의 개정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재직기간 1년 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2.1%를 적용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1.9%를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출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퇴직 전 최종 3년의 보수월액(기본급 + 정근수당)⁵⁴⁾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했으나, 전재직기간에 걸친 기준소득월액⁵⁵⁾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고액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높이기도 하였다. 이에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들은 25% 정도의 연금액 삭감이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고액연금수급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 효과는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서 급여를 낮추는 방식의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각 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물론 군인연금의 소득보장 수준도 낮아질 것이다.

3) 사각지대의 발생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제도 중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제가입시켜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징수권 소멸

54) 과세소득의 65% 수준이다.

55) 과세소득, 단,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은 평균액을 반영한다.

로 견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조 3,381억 원, 2007년 1조 6,409억 원, 2008년 2조 1,031억 원, 2009년 2조 3,15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납부능력이 충분치 않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결국 개인의 자구능력이 떨어져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010년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⁵⁶⁾는 60세 이상 인구대비 28% 정도 인데 203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60~70%에 불과하여 전체 노인의 30~40%는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금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연금혜택이 적거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⁵⁷⁾. 이 제도의 도입으로 2008년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 명에게 매달 8~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했으며, 2009년에는 70%인 약 360만 명에게 제공하였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가 없이 이 금액만 받는 경우에는 노후소득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급여가 너무 낮아 사회적 보호 대상이 될 경우 결국 정부가 조세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게 될 것이므로 이중의 제도가 병립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56) 60세 이상인 수급자 산출을 위해 전체 수급자 중에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수급자만 포함하였다.

57)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에게, 그리고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4) 해외사례

가) 모수적 연금개혁

모수적 연금개혁이란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보험료율, 수급연령 등 기술적 계수만 조정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개혁방법을 말한다. 이는 부과방식을 채택한 국가든 적립방식을 채택한 국가든 어느 경우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일찍이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온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이렇게 부과방식을 택하게 된 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전후 복구를 위한 투자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에게 과도기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었고 제도 도입에 대한 마찰도 적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제1차 석유파동이 생기고 국가별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금제도는 그 운영의 전제가 된 고도 경제성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인구고령화의 시작과 함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즉, 인구구조가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기술적 접근방법을 채택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급부의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방법은 각각 사용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복수로 채택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연금제도 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9년, 2001년, 2004년 등 최근 들어 세 번에 걸쳐 연금을 개혁하였다. 이는 1992년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먼저 1999년에는 제도

의 틀은 변화시키지 않고 연금실질가치유지액 및 기수급연금액의 인상기준을 가치분소득상승률에서 평균수명의 변화율만큼 감한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수준을 장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장치를 도입하였다⁵⁸⁾. 그러나 1998년 가을에 기민당 정부에서 사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개혁안은 재검토되었는데, 그 결과 인구고령화 상쇄계수 도입 대신에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감축에 따른 보장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연금보장제⁶⁰⁾와 신개인연금⁶¹⁾을 도입하였다.

2001년에 도입된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는 평균수명의 증가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가 장래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연방정부가 이를 재검토한 결과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기재정안정장치로서 지속성계수(Nachhaltigkeitsfaktor)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2004년에 단행하였다.

58) 이를 통해 가치분소득 대비 연금수준을 현행 70%에서 장기적으로 64%(2030년)로 6%p 인하한다는 것이다.

59) 이 세대 간 형평성 조정계수는 203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인하시키다고 하는 점에서는 인구고령화 상쇄계수와 같지만, 그 도입 시기를 늦추어 2011년으로 하고 처음에는 가치분소득의 0.3%를 인하한 다음, 그 후 매년 0.3%씩 인하율을 상향조정하여 20년간 6%를 인하하는 등 그 조정방식을 구체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45년 가입자의 기준 평균연금액은 종전의 70%에서 2030년에는 64%로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면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 약간 상승하기는 하지만, 2030년에도 보험료율이 2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자료: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

60) 최저연금보장제는 연금액이 공적부조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다.

61) 개인연금은 2001년부터 연소득의 0.5%, 2008년부터는 연소득의 4%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 및 자녀가 있는 자 등의 적립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국고보조(약 200억 마르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국고보조의 대상자는 연금보험 피보험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조세 측면에서의 우대조치가 강구된다. 이러한 개인적립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한다. 추계에 따르면, 2030년 경 현행 공적제도의 연금급여수준은 약 4,400마르크로서 순임금의 64.15%가 되고, 개인적립연금의 급여수준은 약 580마르크로서 이 두 가치를 합산한 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치분소득의 72.6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자료: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

종전의 가치분소득은 연금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타 사회보험료 및 세금의 부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규정되었으나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담만 뺀 소득을 가치분소득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의 가치분소득상승률에서 지속성계수(= 평균수명증가율 + 근로인구감소율 + 신개인연금부담의 상승률)를 감액한 만큼 연금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연금제도를 전환하였다. 즉, 가치분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근로인구(가입자인구)가 감소하면 신규수급자와 기수급자의 연금수준이 감소하게 되어 재정안정이 도모된다. 지속성계수를 적용할 경우 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수정 가치분소득 대비)은 2020년에 46%, 2030년에 43%가 되며 보험료율은 2020년 20%, 2030년 22%가 될 전망이다. 지속성 계수의 도입은 종전의 인구고령화 상쇄계수 또는 세대간 형평성 조정계수를 적용할 때에 비해 사실상 더 강한 급여수준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개혁으로 독일의 연금제도는 사실상 상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전까지 일정한 급여수준의 보장이 전통적으로 독일 연금정책의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의 유지'가 연금정책의 일차 목표가 되었고 일정급여수준의 보장은 이차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랫동안 독일의 자랑거리였던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축소되고 그 대신 적립방식의 개인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본래 사회보험방식으로 이층의 연금제도를 운영해왔는데, 부분적인 민영화와 지속적인 연금 삭감으로 재정안정화라는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2006년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개혁했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새로운 저축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기여형 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적용 제외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준비의 충분 여부를 염려한 영국정부는 2008년에 연금법을 개정하여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 불리는 개인계좌(Personal Accounts) 제도를 만들어 2012년부

터 2017년에 걸쳐 해당 자격⁶²⁾이 있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이 개인계좌 제도는 고용주가 최소 3% 이상을 기여해야 하며⁶³⁾, 직장이동시 이동성이 보장되고, 저렴한 비용⁶⁴⁾으로 제공되도록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그동안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저소득층의 근로자들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국 모형을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금제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탄하게 운영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1980년대 중반에 연금재정이 이슈로 등장하였고 1993년 개혁을 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2003년에도 개혁을 하였다. 1993년의 개혁에서는 일반사회세로 충당되는 노령연대기금의 설립을 통해 사회보험과 비기여급여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40년, 기준소득 산정기간을 최고소득 2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일반제도에만 반영하고 10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다⁶⁵⁾.

나) 완전민영화

연금의 완전민영화는 부과방식의 연금을 완전하게 사전적립식 재정방식의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칠레는 일찍이 1981년에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개인적립방식의 연금제도로 전환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연금제도 자체의 위기와 함께 강력한 정치권력이 있었다. 연금제도의 민영화는 항시 분배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 틀 내에 존재하는 연금제도가 이

62) 개인계좌 연금은 영국 국내에서 일하는 22세에서 공적 연금수령연령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연소득이 5,035 파운드(2006/7년 기준) 이상 33,540파운드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3) 정부가 1%를 조세감면(tax relief)을 통해 기여하며, 개인이 4%를 기여하여 총 8%를 기여하게 된다. 다만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3,600파운드(2005년 기준)이다.

64) NEST의 설립 비용은 각 기여금의 2%, 연간 운영수수료는 적립금의 0.3%일 정도로 저렴하다.

65) 국민연금연구원(<http://institute.nps.or.kr>)을 참조하였다.

미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 틀을 바꾸어 새로운 분배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금제도로부터 수혜를 받는 계층은 연금 완전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게 되는데, 국민적 차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지가 가능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칠레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연금을 민영화할 경우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반대했으나, 많은 국민들은 민영화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의 풀을 형성하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했던 것이 민영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금민영화는 중남미와 동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중남미에서는 칠레의 민영화 모델이 볼리비아(1997), 멕시코(1997), 엘살바도르(1998), 니카라과(2001) 등 주변의 남미 국가들에 확산되었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지원과 함께 이들 국가의 정치체제가 작용하였다. 동유럽과 중앙유럽에서는 카자흐스탄(1998), 코소보(2001) 등이 완전민영화 방식의 대체형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칠레방식의 연금개혁을 채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⁶⁶⁾. 첫째, 경제적 조건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방식으로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의 정치환경상 민영화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주변국의 경험과 세계은행과 같은 외국기관의 역할 때문이다.

반면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공적연금이 민영화되지 못한 것은 강력한 노조 세력이 존재했고,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 부분민영화

칠레의 연금제도 완전민영화는 연금개혁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완전민영화 모델로 연금을 개혁하였다면,

66)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Orenstein(2008)을 참조한다. 저자는 연금민영화를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친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적 행위자(actor)에 주목한다.

페루(1993), 아르헨티나(1994), 콜롬비아(1994), 우루과이(1996) 등은 민간의 개인계정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 민영화 방식의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헝가리(1998), 폴란드(1998), 라트비아(2001), 불가리아(2002), 크로아티아(2002), 마케도니아(2002), 러시아(2002), 슬로바키아(2003), 루마니아(2004), 우즈베크(2004) 등에서는 사회보장 부분은 줄이고 그것을 개인계정의 연금으로 보완하는 혼합방식의 부분 민영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서유럽은 완전민영화 모델을 채택하는 대신에 부분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일찍이 영국에서 기업연금을 가입하면 강제 적용되는 2층의 적립식 연금의 가입을 적용 제외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도 시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분하여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서는 개인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된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또는 Non-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은 개인계정이 도입된 점에서 달랐다⁶⁷⁾.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의 경우 NDC방식의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방식은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 기록이 퇴직 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형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는 적립식 개인계정제도를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민영화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이 도입되었다.

67) NDC방식 개혁의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사례를 알고자 하면 Holzmann and Palmer(2006)를 참조한다.

4) 개선방안

가) 중장기 로드맵 설정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전과 제도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장기적 유지 가능성이 높지 않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향후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더 거두거나 아니면 민간 부문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어떠한 방향을 택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수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많은 대안이 검토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주장하는 견해, 근본적 개혁(paradigm reform)을 통한 재정건전성 및 보장수준 제고를 주장하는 견해, 민영화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고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먼저 국민연금의 모수적 개혁론으로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윤석명·김대철·신화연(2005), 김순옥(2007) 등이 대표적이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을 이루기까지 2000년대 전체에 걸쳐 나온 국민연금의 모수적 개혁안은 대부분 급여수준을 낮춤과 더불어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적용하고 모수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000 등)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2008년에 모수적 개혁을 한 공무원연금은 당분간 개혁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동일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 개혁(paradigm reform)을 통한 재정건전성 및 보장수준 제고를 주장하는 견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연금 도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의 개혁

(OECD, 2001; 한나라당, 2004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방안은 연금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중복가입을 피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소득비례부분을 적용 제외하여 퇴직연금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주장한 연구(오영수·이경희, 1998; 장동한, 2005; 방하남, 2005; 김원섭 외, 2006; 김원섭, 2009; 류진식·이창우·김동겸, 2009 등)도 있다.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합하여 전체 연금시스템의 개혁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더 나아가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민간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또한 스웨덴 등이 도입한 NDC방식의 연금개혁 방안을 적용하여 공적연금을 개혁할 것을 제안한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윤석명(2000)은 가입자 개인의 계정을 부여함으로써 기여율의 상향조정 또는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시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양재진(2007)은 NDC소득비례연금과 기초보장연금이 다른 연금개혁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초)고령사회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사회보장원칙과 경제친화성, 그리고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과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이원화하고,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영수·이경희, 1998; 최재식, 2004; 배준호·김상호, 2005; 장동한, 2005; 한국개발연구원, 2006; 김재경·최재식, 2007; 문형표 외, 2007 등)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기존의 공무원연금이 아닌 공무원 수준의 국민연금, 민간퇴직금 수준의 퇴직금, 그리고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적용하는 3층 구조 제안(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007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고 선택의 자유를 확

대시켜야 한다는 견해⁶⁸⁾가 있다. 이 주장은 칠레 등에서 공적 연금을 민영화 한 사례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를 주장(박양균, 2009 등)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줄이고, 시장원리가 작동하여 가입자들은 보다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계약의 자유와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혁을 위한 선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2008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는 국민연금 개혁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⁶⁹⁾. 만약 근본적 개혁방안에 입각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혁방안이 학술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차기 정부에서 채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연금개혁이 정치적 성격을 띠지만 가능한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서 향후 중심이 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관련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에 앞서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사정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은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시작되었지만 개혁이

68) 이는 큰 범주에서 보면 근본적 개혁의 범주에 속할 것이나 공적연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였다.

69) 여기에서 대통령선거가 연금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연금개혁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재정 안정과 같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향후 신규로 입직하는 가입자들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⁷⁰⁾.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재정적 안정성을 이루도록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여 연금 제도의 이행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직업의 특성에 따라 연금제도가 다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여 신규 진입자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연금제도로써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앞서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 제도를 소득비례연금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울러 기초수준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개혁은 이미 우리나라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또한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역할에서 벗어나 소득비례국민연금제도로써 자리잡도록 한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소득비례국민연금 모두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기초노령연금은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성을 반영하는 차원에

70) 기존에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도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직장의 안정성은 물론 소득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편입시킴으로써 국민적 연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 조세방식으로, 소득비례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모두 적립방식으로 한다⁷¹⁾.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저축기능을 어떠한 수준에서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부부로 구성된 세대의 최소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대체율의 범위는 일반적 근로자를 기준으로 25~45%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은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퇴직전 소득의 25%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균등 급여수준을 정하고, 소득비례국민연금은 퇴직전 소득의 20%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노후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국민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⁷²⁾.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공적 제도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소득비례국민연금은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에 비례하게 연금 급여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적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복잡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 등에 재직중인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적용은 의무화되지만 운영은 효율성, 수익성 등을 기초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아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통합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1)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간에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기준으로 소득 증가율에 노동력 증가율을 더한 값과 이자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즉, 소득 증가율에 노동력 증가율을 더한 값이 이자율보다 클 경우에는 부과방식이 모든 세대에게 유리한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적립방식이 유리하다. 그런데 실증자료를 통해 검토해볼 때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소득증가율을 약 2~3%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2~3%보다 작다면 적립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World Bank(1994), p. 88 참조).

72) 기초노령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종합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4〉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국제비교

층: 기능 공급 주체 유형	1층 ¹ : 보편적 보장, 재분배			2층 ² : 의무가입, 보험	
	공공			공공	민간
	특정계층 ³	기초 ⁴	최소 ⁵	유형	유형
호주	✓				DC
오스트리아	✓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덴마크	✓	✓		DB + DC	DC
핀란드	✓			DB	
프랑스	✓		✓	DB + Points ⁶⁾	
독일	✓			Points	
그리스	✓		✓	DB	
아이슬란드	✓				DB
아일랜드	✓	✓			
이태리	✓			notional accs. ⁷⁾	
일본		✓		DB	
한국		✓		DB	
룩셈부르크	✓	✓	✓	DB	
네덜란드	✓	✓			DB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Points	
포르투갈	✓		✓	DB	
스페인			✓	DB	
스웨덴	✓			notional accs.	DB + DC
스위스	✓		✓	DB	defined credit ⁸⁾
영국	✓	✓	✓	DB	
미국	✓			DB	

- 주: 1) 절대적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함.
 2) 은퇴 시 목표 표준생활수준을 달성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금소득, 포괄적 소득, 자산 중의 하나를 조사하여 낮은 수준의 연금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제공하나 부유한 은퇴자에 대해서는 연금급여를 삭감함.
 4) 모든 은퇴자에게 정책의 연금 또는 근로연수에 따른 연금이 제공됨.
 5)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기여를 해야 함.
 6)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개인별 소득에 기초하여 점수를 쌓은 후 은퇴 후에 그를 기초로 환산된 연금급여를 받음.
 7) 명목계정(notional accounts)은 개별계정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를 기록하고 계정의 수익률을 적용한 후에 은퇴 시 산식에 의거하여 연금급여를 산출함.
 8) DC와 유사하나, 정부가 동 제도가 지불해야 할 최소수익률과 의무연금화률(mandatory annuity rate)을 정함.

자료: Whitehouse(2007), p. 6.

이렇게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정부에 의한 보장과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노후준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연금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소결

대부분의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이 우선시 되면서 국민 전체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후소득의 충분성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과 다양한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0층의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과 1층의 소득비례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체계화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각각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직업유형, 소득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제도에 대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공적연금 전문가는 물론 민영연금 전문가와 정부당국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가계의 노후건강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강검진정책의 시행 등 건강증진 정책을 병행하여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보장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재정수지에 연동되어 있다. 셋째, 국민들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을 적절히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넷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보장성 정책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최근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의 출범부터 적자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의약분업에 의한 약제비 급여증가와 수가인상⁷³⁾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1년에는 적자규모가 2조 1,775억 원에 달하였다.

〈표 V-5〉 국민건강보험 재정추이

(단위: 백억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수입	1,193	1,431	1,747	1,941	2,109	2,326	2,605	2,979
총지출	1,411	1,480	1,597	1,733	1,998	2,282	2,589	2,827
당기차액	-218	-49	149	208	111	45	16	151
보장성	약화	-	-	-	강화	강화	유지	약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73)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1년간 4차례의 수가인상이 있었다.

2002년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의 대폭 증가와 급여비 지출의 둔화로 적자폭이 감소하여 2004년 2조 78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으로 흑자폭이 2007년 1,613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흑자폭이 증가하여 1조 5,138억 원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정성을 보임에 따라 보장성도 강화와 약화가 반복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MRI 보험급여(2005년 1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2005년 9월, 입원진료비의 10% 본인부담),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2006년 6월, 본인부담률은 20%),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법정본인부담금 폐지(2006년 1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재정수지 흑자폭이 급감하자 2008년 1월부터 입원식대에 대해 다시 5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에 대해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보장성 약화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재정 흑자폭은 다시 급증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최근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보장성정책이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평가되기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의 식대 건강보험 적용(2006년 6월, 본인부담률은 20%),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법정본인부담금 폐지(2006년 1월) 등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듬해에 재정수지 흑자폭이 급감하자 원인을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보장성을 다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2) 보장성 현황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허가의료와 미허가의료(임의비급여의료)로 구분하고 다시 허가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의료인 보험적용의료가 있고 부합되지 않는 의료

인 법정비급여의료가 있다. 보험적용의료는 다시 ① 건강보험급여의료, ② 일부 본인부담의료(법정보인부담금)⁷⁴⁾ 와 ③ 전액본인부담의료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대상은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⁷⁵⁾이며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⁷⁶⁾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이다⁷⁷⁾.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정의되지만 행위당수가제로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요소에 비급여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허순임 외, 2007). 또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각 서비스의 상대적 점수와 필요성, 보장성 개선효과 등을 논의하여 합의를 이끄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V-1〉 국민건강보험 의료서비스 분류체계

미허가의료	허가의료		
입의비급여의료 (친의료기술)	법정 비급여 의료	법 정 본 인 부 담 금	건강보험급여의료
		전액본인부담의료	

일부분인부담의료(법정보인부담금)는 주로 정률제를 적용하여 입원의 경우 100분의 20(2005년 9월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100분의 10), 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기관의 등급과 소재지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 약국의

7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함)를 본인이 부담한다.

75)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76)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77)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경우 100분의 30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는 21%,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차 진료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가 적용된다. 일부본인부담의료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후생손실(Arrow, 1963; Pauly, 1968)을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이 이론이 적합하지 않고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Evans, 1974)를 고려하면 그 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소득효과(후생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후생손실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Nyman, 1999). 따라서 일부본인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액본인부담의료는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⁷⁸⁾.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로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적용대상자의 진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규나 고시로 규정되는 법정비급여의료⁷⁹⁾는 전액본인부담이며 선택진료료(24.5%), 병실차액(15.4%), 식대(0.4%), 주사료(9.3%), 처치 및 수술료(4.8%), 검사료(8.9%), 치료재료대(8.1%), MRI(6.6%), 초음파(11.2%), 기타(10.8%)가 있으며 대상은 다음 기준⁸⁰⁾에 의한다.

- 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②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7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 제 3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규정함으로써 100분의 100 본인부담의 법적근거를 제공한다.

79)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2007).

8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④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⁸¹⁾
- ⑤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나 대체 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경우⁸²⁾
-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한 비급여대상 규정
- ⑦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⁸³⁾

위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할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법령이나 고시로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는 임의비급여로 분류된다.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한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진료수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주로 의약품에 해당), 심사삭감에 따른 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는 허가 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의료비 보장의 확대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연도별로는 지속적으로 급여율이 상승하여 2000년에 45.6% 수준이었다가 약제의 보험급여화가 단행된 2000년 7월의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1년 53.7%로 대폭 상승하였고, 특히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의 상

81)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보험급여 이외의 보장구(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친자확인진단, 치과 보철, 선택진료 등(허순임 외 3인, 2009)이 있다.

82) 다시 말하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를 말한다.

83) 예를 들어 한방 물리요법, 한방생약제제 등이 있다.

승이 두드러져 2007년에는 56.1%를 기록하였다. 의료보장제도는 보장성, 운영 비용 효율성, 진료 대기시간,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운영비용 효율성, 진료 대기 시간, 의료접근성 등의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V-6〉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추이 (단위: 10억 원,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0,057 (100.0)	24,819 (100.0)	26,605 (100.0)	29,333 (100.0)	31,995 (100.0)	35,222 (100.0)	39,068 (100.0)	43,571 (100.0)	46,511 (100.0)
보험자부담 (실효급여율)	8,989 (44.8)	13,109 (52.8)	13,611 (51.2)	14,969 (51.0)	16,377 (51.2)	18,295 (51.9)	21,355 (54.7)	24,463 (56.1)	26,330 (56.6)
본인부담 (소계)	11,068 (55.2)	11,710 (47.2)	12,994 (48.8)	14,364 (49.0)	15,618 (48.8)	16,927 (48.1)	17,713 (45.3)	19,108 (43.9)	20,181 (43.4)
법정	4,063 (20.3)	4,861 (19.6)	5,375 (20.2)	5,961 (20.3)	6,341 (19.8)	6,820 (19.4)	7,430 (19.0)	8,369 (19.2)	9,121 (19.6)
비급여	7,005 (34.9)	6,848 (27.6)	7,619 (28.6)	8,403 (28.6)	9,277 (29.0)	10,108 (28.7)	10,284 (26.3)	10,739 (24.6)	11,061 (23.8)

주: 1) 정형선(2010)은 정형선(2008)을 수정하였음.

2) 의료비 추계는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을 포함하는 전체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함.

3) 보험자부담(급여비)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포함함.

자료: 정형선(2010).

전체요양기관(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을 포함할 경우를 기준⁸⁴⁾으로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및 의약품비별로 구분해서 본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은 2007년의 경우 입원의료비 65.5%, 외래의료비 52.2%, 의약품비 51.7%이었다. 입원의 보장률이 외래나 의약품 보장률보다 높게 나타

84) 정형선(2008)은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7년에 보장률은 63.6%, 한방 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소를 포함할 경우는 55.8%로 추정하고 있다.

나고 있어 중증질환의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2008년 평균 보장률이 8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⁵⁾.

〈표 V-7〉 200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율 및 본인부담률(기능별)
(단위: 조 원)

구분	전체		입원		외래		의약품 등	
계	43.5	100.0%	12.4	100.0%	17.2	100.0%	13.8	100.0%
건강보험급여(율)	24.3	55.8%	8.1	65.5%	9.0	52.2%	7.2	51.7%
본인부담(률)	19.2	44.2%	4.3	34.5%	8.2	47.8%	6.7	48.3%
법정	8.0	18.3%	1.7	13.4%	3.5	20.2%	2.8	20.5%
비급여	11.2	25.8%	2.6	21.1%	4.8	27.7%	3.8	27.8%

주: 의료비 추계는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을 포함하는 전체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형선(2008).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대한 급여율(보험자부담률)은 2002년 53.3%에서 2008년 5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해 온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은 충분하지 않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한 급여비(보험자부담)는 2조 7,153억 원이었고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8조 1,02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2008년 65세 이상 전체 의료비의 57.5%에 해당한다. 2008년 전

200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율 및 본인부담률(공급자별)
(단위: 조 원, %)

구분	전체요양기관 ¹⁾	일반요양기관 ²⁾	일반요양기관 ³⁾
계	43.5(100.0)	24.6(100.0)	35.2(100.0)
국민건강보험급여(율)	24.3(55.8)	16.0(65.0)	22.4(63.6)
본인부담(률)	19.2(44.2)	8.6(35.0)	12.8(36.4)
• 법정	8.0(18.3)	4.8(19.7)	7.3(20.7)
• 비급여	11.2(25.8)	3.7(15.3)	5.5(15.7)

주: 1)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 2) 병의원, 3) 병의원 및 약국

85)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토대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정우, 2005; 이규식, 2002).

체 적용인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56.6%와 비교해 보면 불과 0.9% 상회하는 보장률이다.

〈표 V-8〉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급여율 추이
(단위: 천 명, 10억 원,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5,092.0 (100%)	6,163.5 (100%)	7,234.4 (100%)	8,517.6 (100%)	9,973.4 (100%)	12,094.1 (100%)	14,090.7 (100%)
보험자부담 (급여비)	2,715.3 (53.3)	3,275.7 (53.1)	3,841.1 (53.1)	4,557.6 (53.5)	5,598.9 (56.1)	6,953.7 (57.5)	8,102.1 (57.5)
본인부담 (소계)	2,376.6 (46.7)	2,887.8 (46.9)	3,393.3 (46.9)	3,960.1 (46.5)	4,374.5 (43.9)	5,140.4 (42.5)	5,988.6 (42.5)
법정	920.3 (18.1)	1,125.0 (18.3)	1,295.3 (17.9)	1,515.5 (17.8)	1,751.5 (17.6)	2,165.3 (17.9)	2,635.0 (18.7)
비급여	1,456.3 (28.6)	1,762.8 (28.6)	2,098.0 (29.0)	2,444.6 (28.7)	2,623.0 (26.3)	2,975.2 (24.6)	3,353.6 (23.8)

주: 1) 정형선(2010)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이용하여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산출함.

2) 보험자부담액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포함함.

자료: 1) 정형선(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3) 고령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

65세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연도별 지출 추이를 보면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보험자부담)의 연도별 증가 속도는 전체연령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체연령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1.7%인 반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20.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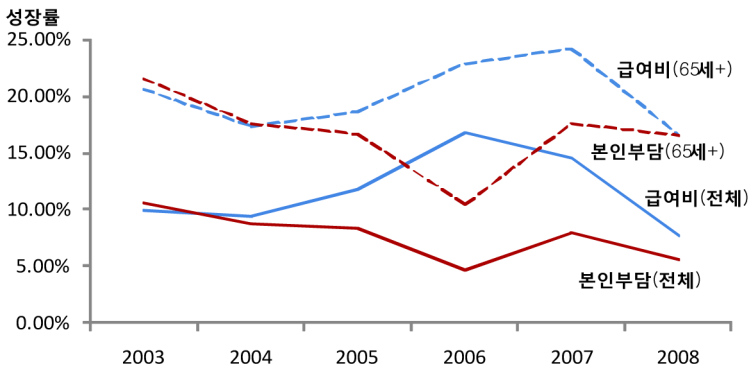
〈표 V-9〉 연도별 급여비와 본인부담의 증가율 추이

(단위: 10억 원, %)

연도	연령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전체 연령	26,605 (-)	29,333 (10.25)	31,995 (9.08)	35,222 (10.09)	39,068 (10.92)	43,571 (11.53)	46,511 (6.75)
	65세 이상	5,092.0 (-)	6,163.5 (21.04)	7,234.4 (17.37)	8,517.6 (17.74)	9,973.4 (17.09)	12,094.1 (21.26)	14,090.7 (16.51)
보험자부담 (급여비)	전체 연령	13,611 (-)	14,969 (9.98)	16,377 (9.41)	18,295 (11.71)	21,355 (16.73)	24,463 (14.55)	26,330 (7.63)
	65세 이상	2,715.3 (-)	3,275.7 (20.64)	3,841.1 (17.26)	4,557.6 (18.65)	5,598.9 (22.85)	6,953.7 (24.20)	8,102.1 (16.51)
본인부담 (소계)	전체 연령	12,994 (-)	14,364 (10.54)	15,618 (8.73)	16,927 (8.38)	17,713 (4.64)	19,108 (7.88)	20,181 (5.62)
	65세 이상	2,376.6 (-)	2,887.8 (21.51)	3,393.3 (17.50)	3,960.1 (16.70)	4,374.5 (10.46)	5,140.4 (17.51)	5,988.6 (16.50)

〈그림 V-2〉을 보면 65세 이상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 곡선이 전체연령에 대한 곡선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65세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V-2〉 연도별 급여비와 본인부담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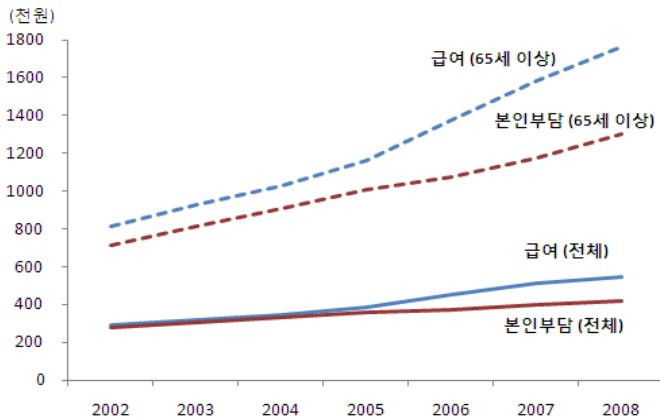


이러한 거시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65세 미만보다 질병이나 상해가 많이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 하에 서 위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65세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65세 이상의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가치분 소득수준 증대, 혹은 65세 이상을 위한 의료기술 발달 등이 의료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가치분 소득수준 증대, 혹은 의료기술 발달 등이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균등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65세 이상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3〉 1인당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추이



65세 이상은 65세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한다는 가정이 현실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고령화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1인당 의료비로 접근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2008년 전체연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1인당 급여비는 54만 6,000원이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76만 1,000원을 지급하였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무려 3.22배에 달하는 금액을

더 지급한 것이다. 동 비율은 2002년 2.78배이었던 것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3.22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4) 고령화와 개인의 본인부담 문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개인들의 본인부담(법정+비급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체연령의 1인당 본인부담금은 41만 9,000원이었고 65세 이상은 130만 2,000원이었다. 65세 이상은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무려 3.11배에 달하는 금액을 더 지급한 것이다. 더욱이 급여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표 V-10〉 전체 연령과 65세 이상의 1인당 급여비 및 본인 부담 비교
(단위: 천 명, 천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적용인구	전체 연령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65세 이상	3,345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계 (보험자+ 본인부담)	전체 연령(A)	570.2	622.8	675.4	743.2	824.0	911.2	965.7
	65세 이상(B)	1522.4	1740.5	1930.3	2173.2	2448.6	2756.8	3063.5
	B/A	2.67	2.79	2.86	2.92	2.97	3.03	3.17
보험자부담 (급여비)	전체 연령(C)	291.7	317.8	345.7	386.0	450.4	511.6	546.7
	65세 이상(D)	811.8	925.0	1,024.9	1,162.8	1,374.6	1,585.1	1,761.5
	D/C	2.78	2.91	2.96	3.01	3.05	3.09	3.22
본인부담	전체 연령(E)	278.5	305.0	329.7	357.2	373.6	399.6	419.0
	65세 이상(F)	710.6	815.5	905.4	1,010.4	1,074.0	1,171.7	1,302.0
	F/E	2.55	2.67	2.75	2.83	2.87	2.93	3.11

주: 1) 정형선(2010)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을 이용하여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산출함.

2) 의료비 추계는 병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조산소, 보건소, 약국을 포함하는 전체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함.

3)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대상으로 함.

4) 보험자부담액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포함함.

자료: 1) 정형선(2010).

2)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5)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재정상태에 따른 보장성 조정정책의 정교함 부족에 기인한 면이 있다. 재정의 흑자규모가 크면 법정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면 다시 보장성 약화 정책을 펼쳐왔다. 보장성 조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재정상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 작업을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의료기술은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후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미허가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급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은 대체가능한 경우도 많아 급여의료화는 정교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조정이 입원에 치중되고 있으나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입원의료비의 결정에는 요양기관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입원의 보장성을 조정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편적인 대응일 수 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장성 조정정책의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속도로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재정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65세 이상자의 과잉의료이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에 대한 노인의료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의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홍보하여 소비자와 문제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6) 소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에 대한 보장률은 전체 연령에 대한 보장률과 차이가 없어서 65세 이상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보험자부담)의 연도별 증가 속도는 총량적으로 그리고 1인당 의료비로 접근할 경우 전체 연령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고령자를 위해 추가적 보장성 강화는 어려운 것이다.

65세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65세 이상의 본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본인부담이 전체연령보다 총량적으로는 2배 이상, 1인당으로는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물론 65세 이상 개인의 본인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 대책이 요구되고 소비자 개인들은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자조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 가계의 노후건강위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서비스 분류와 우리나라 제도현황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정책을 수립하

는 정책 수립자에게도 공통의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이운경, 2009).

제공 주체에 따라서는 공식적 서비스(formal care)와 비공식적 서비스(informal care)로 구분될 수 있다. 공식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되거나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말한다(Kane, Kane and Ladd, 1988). 최근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점차적으로 공식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비공식적인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노인 수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 수발자도 서비스 수요자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또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비공식적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Kane, Kane and Ladd, 1988).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금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 현금 급여를 통해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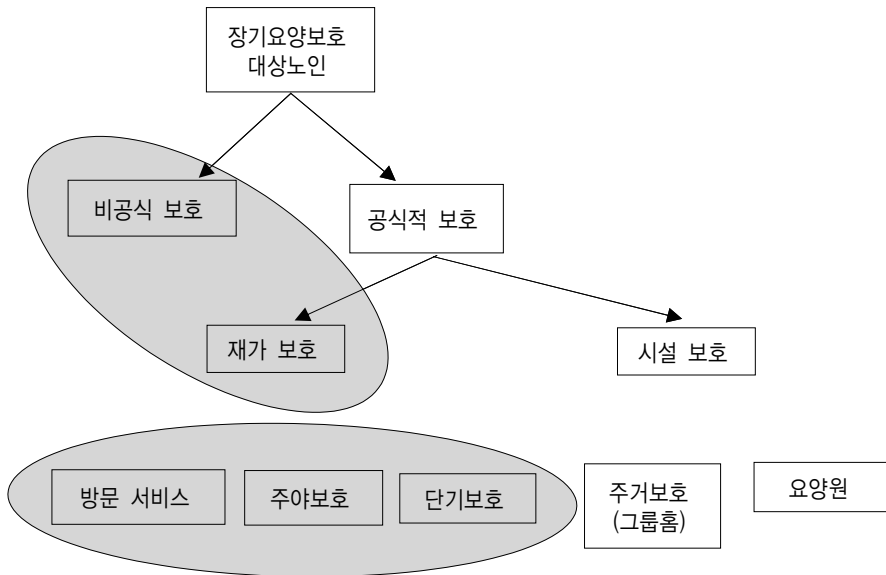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시설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재가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시설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재가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재가 보호를 유인하고 있다⁸⁶⁾.

86)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① 식사 재료비,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③ 이·미용비, ④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의료적 특성의 장기요양서비스(medically-oriented care)와 사회적 특성의 장기요양서비스(socially-oriented care)이다(최은영 외, 2005). 이러한 구분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의료적 특성 정도에 의한 서비스의 구분으로 급성 케어(acute care)와 유사한 의료관련 인력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의료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에 의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들은 사회적 특성의 장기요양서비스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의료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V-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태별 분류



자료: 이윤경(2009).

2) 노인장기요양 대상 현황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와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동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이다.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대상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등급(장기요양 1~3등급, 2010년 이후는 4등급 포함)으로 판정을 받은 자이다.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요양욕구 영역별 100점 득점변환점수를 8개 서비스 군별로 수형분석(decision tree analysis)하여 산출한다.

〈표 V-11〉 장기요양 8개 서비스 군

신체 수발	청결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 청결관련 서비스
	배설	이동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기저귀 교환, 기타 배설관련 서비스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 준비, 기타 식사관련 서비스
	기능 보조	일어나 앉기·서 있기 연습 도움, 기구사용 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기능보조
	간접 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 및 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린넨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물품, 장보기, 산책, 외출 시 동행, 기타 가사지원서비스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결행동, 폭언·폭행 등 행동변화에 대한 대처, 그 밖의 행동변화에 대응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기타 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	

〈표 V-12〉 장기요양등급

등급	요양 인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상태
장기요양 2등급	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상태
장기요양 3등급	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상태

주: 55점 미만은 등급외자임(4등급~등급 외).

2007년 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의료수급권자를 합한 4,967만 명이고, 장기요양인정신청대상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487만 명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수 38.3만 명을 합한 525.3만 명 수준이다.

〈표 V-1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위: 만 명)

구분	적용대상자 2007	장기요양인정신청대상자 2007	급여대상자	
			2008	2010
대상자 수	4,967	525.3	17.0 (3.3%)	23.3 (4.4%)

주: 괄호 안은 전체 65세 이상 대비 비중임.
자료: 박종연 외(2008).

급여대상자는 2008년 17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3.3%이다. 급여 대상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3) 노인 건강수준 및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은 크게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을 주진단명으로 가진 자의 수는 2002~07년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이었다. 65세 이상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2002년 6.8%에서 2007년 10.8%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에 의한 의료 이용량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로 살펴 보면, 2002년 2,405억 원이었던 것이 2007년 8,994억 원으로 3.7배가량 증가하였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급여비의 증가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증대될 것이다.

〈표 V-14〉 노인성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단위: 천 명, 천만 원)

연도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진료실인원		총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			
	진료실 인원	65세 이상 대비 비중		급여	실인원 1인당 (만 원)	법정	비급여	소계	실인원 1인당 (만 원)
2002년	259	6.8%	30,954	24,052	92.9	6,902	11,449	18,351	70.9
2005년	396	9.1%	64,704	51,207	129.3	13,497	23,329	36,826	93.0
2007년	526	10.8%	113,853	89,947	171.0	23,906	39,381	63,287	120.3

주: 1) 진료실인원에 약국진료는 제외함.

2) 의료이용량은 약국진료를 포함함.

3)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정형선(2008)의 비급여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박종연 외(2008)를 재구성하고 본인부담금을 추정함.

한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이 2002년에 1,835억 원이었고, 2007년에 6,329억 원이었다. 6년 사이에 본인 부담액이 3.4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진료실인원 1인당 본인부담액은 2007년에 120만 원으로 6년 전에 비해 69.7%가 증가하였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에 대한 인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은 87.5%이고, 재활 등 급여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은 89.3%로, 대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의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42.8%, 반대하는 의견은 49.5%여서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급여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표 V-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도

(단위: %)

구분	대상자 확대 (경중자, 장애인 등)	급여서비스 종류 확대 (재활, 식사 등)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인상
찬성	87.5	89.3	42.8
반대	12.5	10.7	49.5
모름/무응답	-	-	7.7

주: 응답자 수는 1,500명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충분한 보장성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인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5) 소결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대상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중증의 대상자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급여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상위 중증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에 의한 의료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은 재정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차상위 계층의 중증 대상자들까지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의 특성상 요양은 장기간 지속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더라도 시설급여 비용의 20%,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설보호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용을 기피할 수 있는 것이다.

급여 대상자 확대, 본인 부담률 조정 등은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더욱이 사회보험 형태로 노후 의료비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국가는 일정 부분 개인 스스로 노후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민영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활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개인은 정부재정 상황 등을 볼 때 정부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상태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도 사전적이고 충분한 노후 대비를 스스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2009년 8.06%에서 2040년 17.1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OECD가 분류한 사회복지항목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부문은 노인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노인빈곤과 아동빈곤 문제에 한정하여 현황 및 공공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1) 현황

가) 노인가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빈곤률이 높고 연금보다는 자녀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확보를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표 V-16〉 노인 빈곤률¹⁾ 추이

(단위: %)

노인 빈곤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절대빈곤률 ²⁾	30.3	26.6	28.3	28.9	30.0	31.3
상대빈곤률 40% 기준	32.6	30.4	30.6	31.5	32.7	32.7
상대빈곤률 50% 기준	40.6	38.5	38.1	40.6	40.9	40.8

주: 1) 1인 가구 및 농어가 가구는 제외함.

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0).

2005년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가계의 45.6%가 노인인구에 해당하고, 2008년 기준 노인인구의 31.3%가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다. 노인인구의 32.7%는 소득수준이 하위 40% 보다 낮은 상대 빈곤층에 해당한다. 더욱이 2004년부터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40%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⁸⁷⁾. 이처럼 노인빈곤률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것은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도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령자는 2010년 현재 46%에 불과하고 연금수령자 가운데 85%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이고, 1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노인도 수령자 가운데 45%에 달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 가운데 여성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18만 원으로 남성 수령액의 1/3에 불과하고 또한 1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표 V-17〉 고령인구 연금수령 여부

(단위: 천 명, %)

구분	55~79세 인구	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	월평균 연금수령액				평균 수령액 (만 원)
				10만 원 미만	1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10. 5	9,481 (100.0)	5,133 (54.1)	4,348 (45.9) (100.0)	1,982 (45.6)	1,717 (39.5)	244 (5.6)	403 (9.3)	35
남자	4,388	2,142	2,246	610	1,082	213	342	51
여자	5,092	2,990	2,102	1,372	636	31	62	18
2009. 5	9,111 (100.0)	5,133 (56.3)	3,978 (44.7) (100.0)	1,774 (44.6)	1,601 (40.2)	208 (5.2)	394 (9.9)	34
2008. 5	8,841 (100.0)	6,193 (70.0)	2,648 (29.9) (100.0)	847 (32.0)	1,304 (49.2)	148 (5.6)	349 (13.2)	-

주: ()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87) 2004년 노인인구의 38.5%가 소득수준이 50%보다 낮았고, 동 비율은 2008년 40.8%로 상승하였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공적연금의 역할이 크게 취약하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총소득의 4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일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국, 독일 및 프랑스보다 높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일본보다도 참여율이 높다. 65~69세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자 55.4%, 여자 32.3%에 이르는데, 일본은 남자 47.6%, 여자 25.1%이다.

〈표 V-18〉 주요국 노동시장 참가율 비교(55세 이상)

(단위: %)

연령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5~59세	79.9	49.7	93.2	60.3	77.7	66.7	82.0	65.6	62.5	53.4
60~64세	68.5	43.8	70.9	40.2	58.6	47.0	42.3	24.4	15.4	13.4
65~69세	55.4	32.3	47.6	25.1	34.4	24.2	8.5	5.0	3.4	2.6
70~74세	39.5	26.7	29.4	15.6	21.6	13.1	4.2	2.0	1.7	0.9
75세 이상	23.5	10.4	14.6	5.3	9.5	4.4	1.6	0.5	0.4	0.1

자료: 원종학 외(2008).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미국, 일본 등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V-19〉 주요국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동기 비교

(단위: %)

국가	소득 확보	일하는 즐거움	사회적 동기	건강에 도움
우리나라	64	16	0.4	20
일본	41	20	6	29
미국	28	45	3	18
스웨덴	41	48	2	9

자료: 일본내각부; 최준욱 외(2005) 재인용함.

주요 국가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를 비교한 <표 V-19>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우 64%가 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과 스웨덴도 노인인구의 약 41%가 소득 확보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건강 또는 일하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응답자도 약 50%를 차지한다.

나) 아동빈곤가구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베이비부머를 부양해야 할 아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세대가 현재 아동인구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를 위해, 특히 빈곤아동에 대해 교육, 의료 및 영양서비스를 포함하여 부모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은 교육,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취약하게 하여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취약계층 청소년은 정서적 소외 또는 좌절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 과정을 겪게 되면서 진학과 취업을 포기하는 등 사회에서 중도탈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빈곤 문제는 빈곤 악순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빈곤 문제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V-20> 아동빈곤률¹⁾ 추이

(단위: %)

아동빈곤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절대빈곤률 ²⁾	10.6	10.3	11.1	10.1	9.6	9.3
상대빈곤률 40% 기준	8.9	9.2	9.4	8.8	8.5	7.9
상대빈곤률 50% 기준	13.6	14.1	13.9	13.4	13.4	12.5

주: 1) 1인 가구 및 농어가 가구는 제외함.

2)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 기준임.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0).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실행한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인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아동이 9.3%이고, 소득 수준이 하위 40%(50%) 미만에 포함되는 가계의 아동은 7.9%(12.5%)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아동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빈곤률을 추계하면 수치는 다소 높아질 것이다⁸⁸⁾.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는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고 복지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도 직면한 공통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선진국의 중위권에 해당한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빈곤률은 10.7%인데 이는 일본(13.7%), 영국(17%) 및 미국(21.9%)보다 낮고, 프랑스(7.9%) 또는 독일(9.0%)보다 높다. 김태완(2010)은 EU국가의 아동빈곤 추이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탈리아 및 덴마크의 경우 1995년 이후 10년 동안 아동빈곤률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주요국 아동빈곤률 비교(상대빈곤률)

(단위: %)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아동 빈곤률	14.9	15.5	7.9	9.0	16.6	13.7	10.7	26.9	16.0	17.0	21.9

주: 호주(2001년)와 영국(1999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자료는 2000년 기준임.
 자료: LIS data base, SOCX 2003, 보건복지가족부(2010) 재인용함.

아동가구가 빈곤층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불안정한 수입이다(김미숙·배화옥, 2007; 김태완, 2010). 김미숙·배화옥(2007)은 부모의 취업 형태에 따라 아동이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과 비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을 비교하였다. 부모가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비빈곤 가구에 속할 확률보다 18배 높고, 부모가 모두 임시직 또는 일용직

88)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청소년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아동빈곤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대빈곤률의 경우 농어촌(17.3%), 중소도시(13.1%), 대도시(8.8%)의 순서로 빈곤률이 높다.

에 종사할 경우 비빈곤 가구에 속할 확률은 6배 높다. 그리고 부만 취업한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데 반하여 모만 취업한 경우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8.7배 높다.

부모 교육수준의 경우 부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감소한다. 부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전문대 이상인 경우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은 3배 높고,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6배 높다. 취업형태가 교육수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빈곤 악순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된다.

〈표 V-22〉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

사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체학대	364 (9.4)	423 (9.1)	439 (8.4)	473 (8.5)	422 (7.6)
정서학대	350 (9.0)	512 (11.1)	604 (11.6)	589 (10.6)	683 (12.2)
방임	1,367 (35.1)	1,635 (35.3)	2,035 (39.1)	2,107 (37.7)	2,372 (40.1)
중복학대	125 (38.8)	1,710 (36.9)	1,799 (34.6)	2,087 (37.4)	1,895 (34.0)
기타	302 (7.7)	353 (7.6)	325 (6.3)	325 (5.8)	341 (6.1)
계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주: 중복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이고, 기타는 성학대와 유기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d).

빈곤아동의 경우 교육 또는 영양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은 방임(40%)이고 여러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34%)가 그 뒤를 잇는다. 방임 또는 유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경제적 스

트레스 및 고립감'인데 이는 빈곤가구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을 방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⁸⁹⁾.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또는 입양에 보내지는 아동이 매년 약 1만 명씩 발생한다. 그 가운데 약 60%(2008년 기준)은 빈곤·실직·학대가 주된 원인이다. 빈곤아동가구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 또는 영양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대·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복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2) 문제점

가) 노인가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높고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통한 노인인구의 소득보조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증가는 향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노인인구의 재정복지에 대한 의존도와 공공지출을 축소하였을 때 빈곤층에 새로이 귀속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다.

CSIS(2010)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공공지출이 우리나라 노인인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이고 동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 34.4%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노인인구 소득 가운데 공공지출 비중은 유럽 또는 일본 등의 비교 대상국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는데 이는 앞 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금제도의 성숙단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또는 멕시코의 경우 사적연금이 발달하였거나 공적연금의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공적지

89) 보건복지부(2010)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원인분석을 발표하였는데, 학대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중독, 질환, 성격 및 기질문제가 뒤를 잇는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85%), 조부모 및 친인척(10%)이다.

출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공공지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하여 유럽 또는 일본의 경우 공공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공공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과거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연금개혁을 단행하였고, 유럽국가 일부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지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공공지출을 축소하게 되면 상대빈곤층으로 포함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 또는 호주의 경우 2007년 노인빈곤률이 15~21%로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인데, 공공지출을 10% 감축하게 되면 빈곤층에 포함되는 노인인구 비중이 약 6%p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긴축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가 심화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노인빈곤률은 2007년 8.1%이나 공공지출 소득의존도가 약 60%로 매우 높아 공공지출을 10% 축소하게 되면 노인빈곤률은 약 3%p 증가한다.

(표 V-23) 고령인구 수입 중 공공지출¹⁾ 비중 추이

(단위: %, %p)

국가	2007년	2020년	2030년	2040년	'40-'07
호주	34.4	29.2	29.0	29.3	-5.1
캐나다	30.8	30.0	30.2	28.9	-2.1
프랑스	59.4	56.7	55.8	55.7	-3.7
독일	47.0	39.2	36.1	37.1	-9.9
이탈리아	55.4	51.9	48.7	48.1	-7.3
일본	38.7	34.7	31.2	31.5	-7.2
한국	21.1	30.4	32.8	34.4	12.3
멕시코	19.0	17.4	14.9	13.9	-5.1
스페인	57.1	56.9	55.8	56.9	-0.2
영국	41.6	41.5	40.3	41.9	0.3
미국	22.2	22.7	22.9	22.4	0.2

주: 연금 등을 포함한 OECD 사회복지 항목 포함, 건강보험은 제외(2007년 기준)함.
자료: CSIS(2010).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공공지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노인빈곤 인구 비중은 0.7%p로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36.2%로 멕시코 또는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가 높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동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표 V-24〉 공공지출(10%) 감축과 노인빈곤률¹⁾ 증가

(단위: %)

구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빈곤률 증가 ²⁾	5.9	5.3	2.8	6.2	3.3	2.9	0.7	0.6	4.1	5.8	3.0
노인 빈곤률	20.9	8.9	8.1	9.8	10.7	22.0	36.2	25.5	22.6	15.4	22.4

주: 1) 상대빈곤률(50% 기준), 건강보험은 제외함.

2) 공공지출 10% 감축으로 인하여 빈곤층에 포함되는 노인인구 비중임.

자료: CSIS(2010).

나) 아동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복지는 종합적인 부모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가 최저극빈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표 V-25〉 빈곤 및 결식아동 추계 및 급식서비스 지원현황(2007)

(단위: 천 명)

절대빈곤	상대빈곤	결식아동	기초수급	급식지원
917	1,438	437~771	419	271

자료: 김미숙 외(2009)를 인용함.

대표적인 현금지원서비스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은 절대빈곤 아동의 45.7%에 불과하다(김미숙 외, 2009). 빈곤아동의 일부일 것이라 추정되는 결식아동은 최소 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급식이 지원되는 아동은 최소인원의 65%에 불과하다.

또한 빈곤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시점에 학자금, 창업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계좌의 경우에도 빈곤가구 아동 91만 7천 명(2007년, 절대빈곤계층기준)의 극히 일부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표 V-26〉 디딤씨앗통장(CDA) 저축 현황

구분	시설 보호	가정 위탁	소년소녀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시설	가정 복귀	총계
통장유지(명)	16,925	13,440	1,543	1,228	2,457	876	36,469
저축률(%)	98	96	96	96	99	98	97
1인당 입금액(원)	28,772	33,033	33,053	31,694	20,962	20,170	29,870

주: 1)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디딤씨앗통장은 17세 이하 빈곤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하여 향후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또는 취업자금을 사용하도록 용도 제한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c).

아동복지서비스의 한계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영양, 교육, 문화, 가족 등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아동은 아동발달, 정신적 건강 및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복지는 가족단위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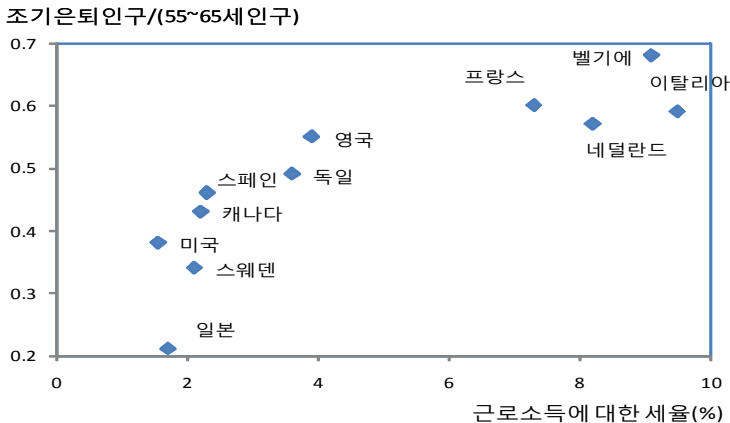
3) 개선방안

다) 노인가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높고 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은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유인을 떨어뜨린다.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공적연금은 이를 감안하여 연금급여를 감액한다. 연금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연금급여의 감소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노인인구에 대한 근로소득 세율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기은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기은퇴를 55~65세 연령집단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림 V-5>에서와 같이 근로소득 세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조기은퇴자의 비중도 높다.

<그림 V-5> 조기은퇴와 고령인구 근로소득세율



주: 근로소득세율은 노인인구가 69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경우 발생하는 노동소득 대비 연금

지급 감소액 비율(%), 즉, $\sum_{t=55세}^{69세} (\Delta \text{연금소득감소액}_t \div \text{근로소득}_t)$

자료: Gruber et al. (2005)를 인용함.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의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소득 감소효과를 노인인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세율이 높고 일본과 미국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지출 의존도가 60%로 높은데, 이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 것 또한 이유이지만 높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도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 공공지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가 야기할 수 있는 조기은퇴 등에 따라 소실되는 잠재 노동력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노인인구의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야기하는 노동시장 구축효과 등의 잠재 손실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을 논의로 하더라도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해결은 한계가 있다.

〈표 V-27〉 노인인구 취업자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55~79세 인구	전문·기술 ·행정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
2010. 5	4,780 (100.0)	409 (8.6)	159 (3.3)	866 (1.8)	1,075 (22.5)	877 (18.3)	1,395 (29.2)
55~64세	3,156	331	138	672	437	743	834
65~79세	1,624	78	22	193	638	133	560
2009. 5	4,457 (100.0)	378 (8.5)	158 (3.5)	842 (18.9)	1,125 (25.2)	737 (16.5)	1,217 (27.3)
2008. 5	4,411 (100.0)	396 (9.0)	124 (2.8)	851 (19.3)	1,176 (26.7)	722 (16.4)	1,143 (25.9)

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2010a).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지만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2010년 5월 기준 52%

이다. 농림어업 또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연령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고령인구 취업자 비중은 1.8%이고 소비자 또는 고용주의 선호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지출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은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인구가 보유한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노동시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근로가능 기간에 금융자산 등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구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나) 아동빈곤가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동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공공지출에 의하여 제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는 수요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또한 아동이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은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자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가구에 대하여 금융교육이 제공되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미소금융을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노인가구와 아동빈곤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가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 그리고 빈곤가구의 자활에는 미소금융 및 금융교육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2. 거시경제위험 관리

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부대책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그림 V-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비교

	1차 계획		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50세 이상 등 베이비 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자료: 보건복지부(2010c).

먼저 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대상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 서비스의 이용률이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⁹⁰⁾.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지 않아 저출산 극복효과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1차 기본계획으로 저출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⁹¹⁾.

이에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④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227개의 과제를 구성하였다⁹²⁾.

특히, 2010년 10월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은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이다. 셋째,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은 잠재인력활용 기반

90) 현행 보육료지원대상은 장애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00%까지로 한정되고 있다.

91) 유해미(2009).

92)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한다.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 제고는 교육·홍보 강화, 효과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표 V-28〉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방향 비교

분야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친화·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대응 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미래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인력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교육·홍보 실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책연계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홍보 강화 효과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나. 성장잠재력 확충

1)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노동공급 확충

해외 주요 선진국의 여성고용정책은 크게 북유럽형 모형과 영·미형 모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혜원·김정희·이주희·최은영, 2007) 먼저 북유럽형

모형은 영유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육아휴직 후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긴 육아휴직으로 인해 남성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으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이 낮아 육아휴직 이후 기존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임금 손실이 매우 적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미형 모형의 경우 영유아 자녀양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낮은 상황에서도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영·미형에서는 취직 및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이 많이 해소되었고, 능력과 생산성에 맞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가피한 사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도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외부노동시장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또한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 주요 정책으로는 산전후휴가 보장 및 근로시간 제한, 육아휴직제도 운영, 여성고용 촉진시설 지원 등이 있다.

첫째, 임신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1년 11월부터 60일에서 총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며,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요건을 조정함에 따라 임신 근로여성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종전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시간 외 근로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에서는 육

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 연령을 1세에서 3세로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1년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제도 활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시설비용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은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목표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윤종웅·정상훈, 2009). 육아·보육지원의 본질적인 목표는 아동발달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 및 목표를 모든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지원, 근로여성의 육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제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⁹³⁾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경제의 서비스화)을 보인다⁹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3) Schettkat and Yocarini(2005)는 서비스산업을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통서비스는 도소매, 운수보관, 둘째, 생산자서비스는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계장비 임대,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셋째,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의료보건, 위생서비스, 사회복지, 넷째, 개인서비스는 음식숙박, 영화 및 연예, 기타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대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가사서비스이다. 한편, OECD가 분류한 지식기반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중 지식집약도가 높은 일부 업종을 지칭한다.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비교대상 2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1위, 농림수산업 비중이 10위, 서비스업 비중이 25위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나, 제조업 비중은 2000년 28.6%에서 2008년 28.4%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같은 기간 57.0%에서 60.0%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그리고 선진국과는 달리 생산성 수준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가 자영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V-29〉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¹⁾ 추이

(단위: 만 원,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²⁾
전산업	1,619	2,040	2,430	2,818	2,921	3,029	3.8
제조업(A)	1,416	2,144	3,423	4,929	5,433	5,852	8.7
서비스산업(B)	1,891	2,062	2,158	2,269	2,304	2,362	1.3
B/A(%)	133.6	96.2	61.2	46.0	42.4	40.4	-

주: 1)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임.

2) 199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2009).

〈표 V-29〉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는

94)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되었다. 첫째, 재화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으나 서비스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기 때문이다(Fisher, 1935; Clark, 1940). 둘째, 제조업이 서비스산업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 제조업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경상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aumol, 1967). 셋째, 경제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제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서비스 활동을 시장에서 공급(Raa and Wolff, 1996; Fixler and Siegel, 1999)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 활동이 시장에서 공급(Fuchs, 1980; Inman, 1985)되기 때문이다. 넷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Wood, 1995; Freeman, 1995).

1990년 서비스산업이 1,891만 원으로 제조업 1,416만 원보다 높았으나 1995년 역전되었고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7년 현재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재부, 2009). 현재 정부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가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김현정, 2006). 또한 Wolf(2003)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서비스를 전문화된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전문화된 시장이 확대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한편,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신규진입이 늘어나게 되어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등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서비스산업 중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높은 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2006)의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서비스산업의 세부업종 중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 비중과 경제성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데⁹⁶⁾ 국제비교를 해보면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5~10%p 정도 낮다(김현정, 2006). 이들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산자서비스 가운데 가

95) 우리나라의 경우만을 분석할 경우 개인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의 비중이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2006)은 이에 대해 유통서비스에 낙후된 전통소매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96) 제조업의 중간투입구조를 보더라도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1980년 2.8%에서 1990년 6.2%, 2000년 7.3% 등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적인 산업이 금융 및 보험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거시경제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금융과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특히 낮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은 인적자본 축적과 연관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흡수력도 높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공공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김현정, 2006).

둘째,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 IT기술의 활용, ② R&D 활동 촉진, ③ 인적자원 확충, ④ 규제완화 및 친경쟁환경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1월에 걸쳐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III)’을 발표하였다. 1단계 방안으로는 외국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조기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2단계 방안은 방송·통신 등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고용지원 등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대외개방 등에 대비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추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3단계 방안의 경우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 강화, 서비스산업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등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육 등 인적자원 확충과 R&D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이나 사교육비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나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확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적자본이 축적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⁹⁷⁾.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97)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인적자본 1%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74%p로 나타났다.

에 대한 인력공급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2011)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1999년 0.2%에서 2007년 0.2%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의 R&D의 투자비중은 1999년 1.3%에서 2007년 2.2%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적 자원 확충과 R&D 투자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영세성 및 저수익성으로 인한 투자여력 약화,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투자 저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찬영, 2011).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및 시장확대를 유도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재정건전성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 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표 V-30>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8년 70.6%에서 2009년 83.2%로 증가하였다. 일본, 영국 및 유로지역도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각각 약 19%p, 14%p, 9%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재정수지가 GDP 대비 3.3% 흑자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 1.8%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8년에 30% 정도였으나 2009년 33.8%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30〉 주요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
한국	재정수지	4.7	3.3	-1.8	0.4	1.1	n.a
	국가채무	30.7	30.1	33.8	36.1	37.6	n.a
미국	재정수지	-2.7	-6.6	-12.5	-11	-8.2	-6.5
	국가채무	62.1	70.6	83.2	92.6	97.4	109.7
일본	재정수지	-2.4	-4.2	-10.3	-9.8	-9.1	-7.3
	국가부채	187.7	198.8	217.6	227.3	234.1	248.8
영국	재정수지	-2.7	-4.8	-10.9	-11.4	-9.4	-4.3
	국가채무	44.1	52	68.2	78.2	84.9	90.6
유로지역	재정수지	-0.6	-2	-6.3	-6.8	-6.1	-4
	국가채무	65.7	69.1	78.3	84.1	88.1	9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⁹⁸; IMF(2010).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일본 및 유로지역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사회복지,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IMF(2009)에 따르면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부담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15%이다. 일본,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재정부담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재정부담의 2% 수준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1%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보다 낮지만 2030년 24.3%, 2050년에 38.2%로 상승하며 선진국 25.9%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98)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2010. 4); 2010회계연도 예산; 국가채무관리계획(2009. 11).

〈표 V-31〉 인구고령화와 금융위기의 재정부담 비교

(단위: GDP 대비 비율, %)

국가	금융위기(A)	인구고령화(B)	A / (A+B)
호주	26	482	5.1
캐나다	14	726	1.9
프랑스	21	276	7.1
독일	16	280	4.9
이탈리아	28	169	14.2
일본	28	158	15.1
한국	14	683	2.0
멕시코	6	261	2.2
스페인	35	652	5.1
터키	12	204	5.6
영국	29	335	7.9
미국	34	495	6.4

자료: IMF(2009. 3).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가계의 노후대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는 재정건전성과 더불어 재정경직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재정지출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하였을 때 의무지출은 사회보장급여 및 이지지출 등과 같이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축소할 수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렵게 되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표 V-32〉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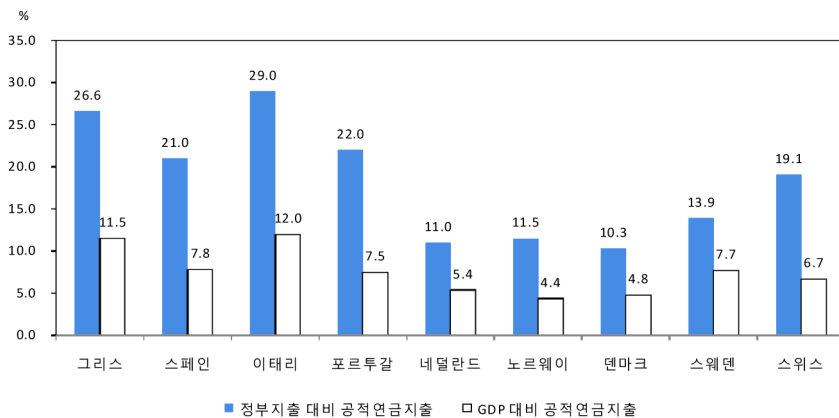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지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지출	규모	292.8	306.6	322.0	335.3
	(증가율)	(-)	(4.8)	(5.0)	(4.1)
의무지출	규모	145.9	157.5	170.6	182.9
	(증가율)	(-)	(7.9)	(8.4)	(7.2)
재량지출	규모	146.9	149.3	151.5	152.4
	(증가율)	(-)	(1.6)	(1.5)	(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b).

국회예산처에서 작성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계를 〈표 V-32〉에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총 재정지출은 2013년까지 약 4~5%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재정지출의 증가는 대부분 의무지출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은 2013년까지 연평균 약 7~8%씩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2% 미만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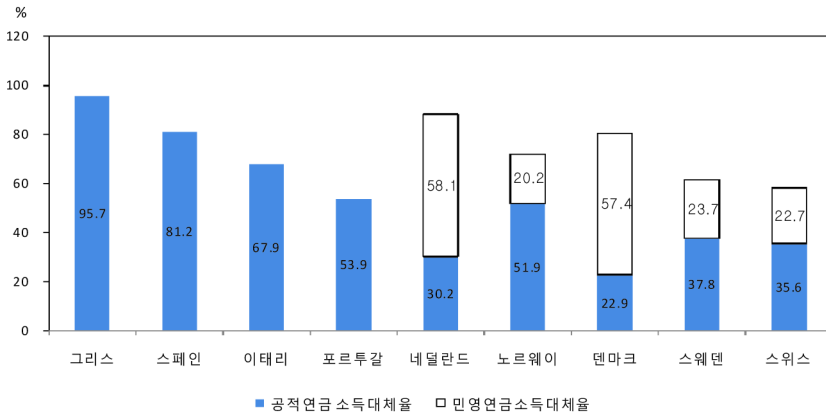
〈그림 V-7〉 공적연금 지출 비중



주: 정부 지출과 GDP는 각각 2005년, 2006년 기준임.
 자료: Eurostat 및 OECD.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공적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확대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남유럽 4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정부 지출에서 공적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정부 지출에서 공적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유럽 4개국의 경우 21~29%에 달하는 데 비해 나머지 유럽 국가는 10.3~19.1% 수준이다. 특히, 동 비중은 이태리가 30%로 가장 높고 덴마크는 10.3%로 가장 낮다.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도 남유럽 4개국은 7.5~12%인데 반해 노르웨이, 덴마크는 5% 미만이다.

〈그림 V-8〉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자료: OECD(2009b).

또한 이들 남유럽 4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 4개국의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53.9~95.7%인데⁹⁹⁾, 거의 대부분이

99)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남유럽 4개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이처럼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이 늦어져서 최근까지 관대한 공적연금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며 민영연금을 통한 소득 확보는 매우 부진하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58.3~88.3%로 남유럽 4개국과 유사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2.9~51.9%에 불과하며 민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58.1%에 달해 공적연금의 부담을 상당 수준 경감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덴마크는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이 80.3%에 달하는데 57.4%가 민영연금 소득대체율이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2.9%에 불과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은 61.5%인데 민영연금 소득대체율 23.7%,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7.8%이다.

남유럽 4개국의 경우처럼 의무지출이 크게 확대될 경우 재정경직성이 심화되어 재정이 외부충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즉, 재정지출이 한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재정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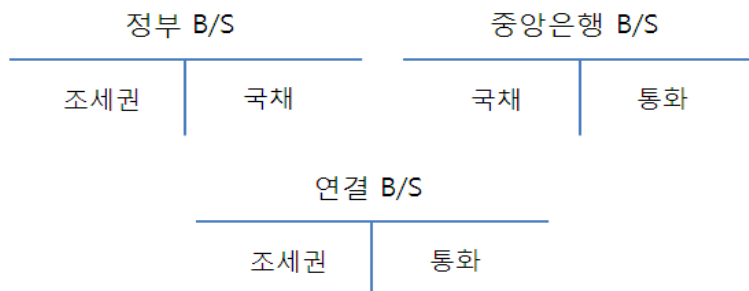
둘째,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부채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화폐화(monetization)로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¹⁰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부채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B/S)를 통해 통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국채발행을 통해 발생하며, 국채는 궁극적으로 조세수입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 B/S의 차변은 조세권, 대변은 국채로 표시 가능하며 국채의 등급은 조세수입으로 국가부채 상환이 가능한가, 즉 재정 건전성 및 국가부채 규모에

100) 2010년 12월 7일 니시무라 일본은행 부총재는 미국 덴버에서 열린 전미 사회과학 연합회(ASSA: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 패널 토론에서 “일본은행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화폐화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채금리가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경기회복과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의존한다. 중앙은행은 부채인 통화를 발행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 B/S와 중앙은행 B/S를 연결시키면 양 B/S 상의 국채가 상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가치는 정부의 조세권으로 지지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조세수입만으로 국가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경우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더욱이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가 높아질수록 실질가치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높은 물가상승을 용인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통화발행(화폐화)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될 경우 금리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 심각해지기 때문에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이 기본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를 앞둔 세대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이 은퇴한 이후 인구고령화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연금 등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대다수 은퇴가구는 노후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V-8〉 국가부채와 통화가치간의 관계



라. 금융인프라 구축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연금 및 종신연금 등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Mankiw and Weil, 1989; 최공필·남재현, 2005; 이상호, 2010).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자산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Ⅲ장과 VI장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이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에 따른 위험 때문에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회사는 장수위험을, 예를 들면 생명보험과 종신연금의 결합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헤지할 수는 있지만 동 위험을 전부 헤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취약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금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수위험 및 장기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장기저축시장 기반 등 금융인프라가 구축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야 한다. 금융만으로 이러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채권이 기본적으로 장기국채일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신용위험을 고려할 때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이 규모면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채의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국채시장의 역할이 부진하다. 2009년 3월 현재 주요국의 국채 비중을 보면 일본 84.6%, 멕시코 67.2%, 캐나다 60.7%, 미국 50.6%, 브라질 42.7%, 독일 25.5%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8.0%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이 건전하고 재정기조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점도 이에 대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흑자재정을 유지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¹⁰¹⁾의 국채 규모가 각각 66.7%, 63.2%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채발행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장기국채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30년에서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년 만기 국채를 국고채 발행량의 10% 범위 내에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장기저축시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만기의 장기국채가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33〉 주요국 국채규모 비중

(단위: 십 억 달러, %)

국가	채권(A)	국채(B)	B/A	국가	채권(A)	국채(B)	B/A
호주	382.4	21.8	5.7	이탈리아	502.5	480.0	95.5
브라질	573.0	244.5	42.7	일본	2,785.6	2,329.2	84.6
캐나다	290.5	176.3	60.7	멕시코	87.9	59.1	67.2
중국	851.7	723.6	85.0	싱가포르	44.5	29.7	66.7
덴마크	110.1	9.6	8.7	태국	59.6	56.5	94.8
홍콩	34.5	21.8	63.2	영국	483.6	94.1	19.5
프랑스	1,076.8	372.0	34.5	미국	6,574.8	3,326.4	50.5
독일	1,272.6	324.3	25.5	한국	350.9	63.1	18.0

주: 2009년 3월, 잔여만기 1년 기준임.

자료: BIS Quarterly Review(2009. 9); 기획예산처(2009) 부분을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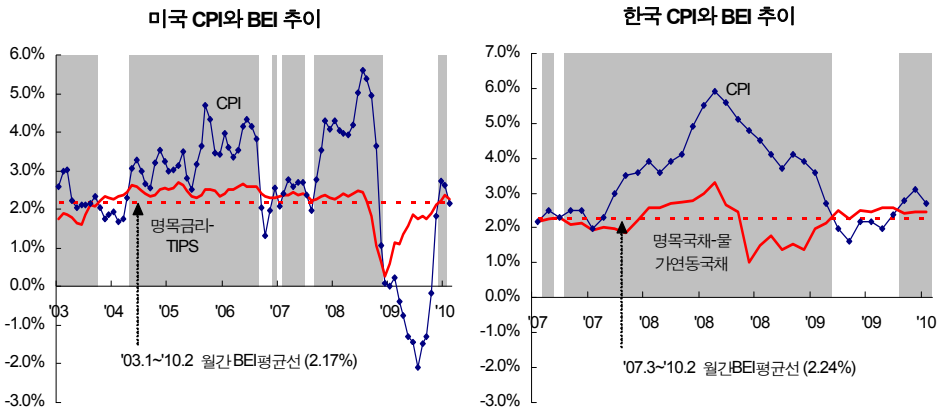
둘째,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연동채권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가연동국채란 국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채권의 실질구매력(purchasing power)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동 채권은 현재 20여개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10년 만기, 물가연동방식으로 발행¹⁰²⁾된 바 있다. 일반명목국채가 실질이자율에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명목이자율로 발행

101) 최공필·남재현(2005).

102) 이표금리는 발행 시 결정되고 원금은 매월 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되는 반면, 물가연동국채는 실질이자율로 발행된다. 물가연동국채 발행으로 발행자는 이자비용 절감을,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행자(정부)는 사후적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 보다 낮을 경우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명목국채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¹⁰³⁾하다. 투자자(연기금 등)는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명목국채 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 수익률의 차이인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며 실제(사후) 물가상승률이 BEI보다 높다면 물가연동국채는 명목국채에 비해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⁴⁾ 실제로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물가(CPI)상승률과 BEI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회색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 월간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BEI보다 높은 기간을 의미한다¹⁰⁵⁾.

〈그림 V-10〉 CPI와 BEI 추이



주: TIPS,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y.

103) 물가연동국채 발행 시 명목 국고채에 비해 적어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만큼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104) 예를 들어, 현재 BEI가 2.47%이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3%이라면 투자자는 물가연동채권의 만기보유 투자전략을 통해 명목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105) 이경아(2010).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물가연동채권은 인플레이션 헤지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우려와 만기보유 부담에 의한 수요부진으로 인해 물가연동국채는 2008년 발행이 중단되었다¹⁰⁶⁾. 그러나 물가연동국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각종 유동성 제고 방안 및 거래개선 방안 등을 시행하였고¹⁰⁷⁾ 2010년 국고채 발행 방안에서 물가연동국채의 재발행을 발표하였다.

물가연동국채의 재발행은 물가상승 압력과 정부의 장기채권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의지에 기인하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저조하였던 물가연동국채의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측면에서, 물가연동국채처럼 장기저축상품의 이자율 위협 헤지가 가능한 인플레이션 관련 상품이 확산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채시장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국의 재정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조세수입이 줄어들 경우 재정건정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용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물가연동채권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기저축시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국채시장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박창균·임경목, 2004; 국회예산정책처, 2009). 국채의 공급물량이 재정운영 기초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채공

106) 2007년 1.9조 원(동년 국채발행액의 3.9%), 2008년 0.8조 원(동년 국채발행액의 3.9%) 이 발행되었으며, 2008년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1.1조 원이 조기 상환되었다.

107) 첫째, 물가연동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시가평가 시 채권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기보유증권 회계처리 허용하였고, 둘째, 총발행물량 증가와 지표물¹⁾ 거래기간 연장을 위해 시장 활성화 이전까지 신규발행에 대한 통합발행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시장수요 안정, 투자자심리 개선을 통해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자 경과물(2007년 3월~2008년 7월 발행분)에 대한 조기상환 실시하였다.

급 물량을 여러 종류의 만기로 분산시킬 경우 국채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창균·임경목, 2004). 한국주택공사가 발행한 MBS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발행된 물량 중 66.4%가 만기가 10년 이하이고 20년 이상 물량은 24.8%에 그치고 있다. MBS가 지금보다 장기채권 위주로 발행되고 국채수준의 신용등급을 얻을 경우 장기저축시장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정부가 모기지론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주택대출시장의 금리와 만기구조는 보다 장기화함으로써 MBS의 신용위험을 낮추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V-34〉 MBS 발행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4 (총7차)	2005 (총9차)	2006 (총5차)	2007 (총6차)	2008 (총7차)	2009 (총10차)	계	비율
1년	100	1,820	1,824	2,251	1,863	2,374	10,232	5.0
2년	320	2,590	2,200	3,260	2,800	3,000	14,170	7.0
3년	4,840	4,900	2,200	2,950	3,250	4,500	22,640	11.1
5년	5,900	7,300	3,550	4,700	5,300	5,000	31,750	15.6
7년	6,400	7,550	3,200	3,800	5,350	3,900	30,200	14.8
10년	6,000	7,050	2,400	2,900	4,550	3,250	26,150	12.9
12년	500	-	-	-	-	-	500	0.3
15년	4,400	5,650	1,750	1,450	2,650	1,700	17,600	8.7
20년	1,700	1,750	400	550	700	500	5,600	2.8
21년 초과	-	-	-	-	-	44,732	44,732	22.0
선순위계	30,160	38,610	17,524	21,860	26,463	68,956	203,574	100
후순위계	1	1	7	23	17	69	118	-
합계	30,161	38,611	17,531	21,884	26,480	69,025	203,69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넷째, MBS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역모기지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가 9억 원 이하)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최

근 저금리 지속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역모기지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과는 달리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대출기간도 확정되어 있으며 만기에 주택처분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이어서 매력적이지가 못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모기지제도라고 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주택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에 판매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신속히 유동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Ⅲ장과 Ⅳ장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어떠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V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가계 및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협을 공공부문이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부문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역할 분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본장에서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금융이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기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가계위험에 대해서는 가계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가계위험 관리

가. 노후소득보장: 사적연금

1) 현황 및 문제점

장수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기초 하에서 연금제도의 운용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 주제는 향후 우리나라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OECD 주요국

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현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될 경우 이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은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제고가 고령화리스크 대응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 대와는 실제 많은 괴리가 있다.

〈그림 VI-1〉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예상)소득대체율

3층 개인연금	10 ~ 20%	<table border="1"> <tbody> <tr> <td>개인연금</td> <td>7.5%</td> </tr> <tr> <td>퇴직연금</td> <td>12.5%</td> </tr> <tr> <td>국민연금</td> <td>35%</td> </tr> </tbody> </table>	개인연금	7.5%	퇴직연금	12.5%	국민연금	35%
개인연금	7.5%							
퇴직연금	12.5%							
국민연금	35%							
2층 퇴직연금	30%							
1층 공적연금	30%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60 ~ 70% (공적 + 퇴직)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55%

- 주: 1)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제도에 의해 시현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2) 실질 소득대체율은 35년 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불입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

즉, 표준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12.5%,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7.5%(월 20만 원 가입)인 것으로 분석되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의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GDP에서 차지하는 사적연기금의 비중이 5.52%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GDP 대비 세제적격 개인연금자산과 퇴직연금자산의 비중은 각각 4.92%, 0.6%에 불과하고,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2008년 기준) 중 민영연금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선진국의 30% 보다 낮은 25.3%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표 VI-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연도	명목GDP(천억 원)	개인연금자산/GDP(%)	퇴직연금자산/GDP(%)
2001년	6,514	3.51	-
2002년	7,205	3.61	-
2003년	7,671	3.72	-
2004년	8,269	3.75	-
2005년	8,652	3.91	-
2006년	9,087	4.02	0.1
2007년	9,750	4.42	0.3
2008년	10,239	4.92	0.6

주: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규모의 합을 의미함.

2)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다 제고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등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체계를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하여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함으로써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VI-2〉 노후소득보장의 국제비교(2008년)

국가	제도형태	퇴직연금 기능
미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적용제외
일본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적용제외
독일	DB형	공적연금 보완
스웨덴	DB형(DC형 전환)	공적연금 보완
프랑스	DB형(명목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DB형	공적연금 보완
네덜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DC형	공적연금 보완

주: 제도의 형태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의미함.
자료: 류건식(2008).

둘째, 퇴직연금의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가입을 일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의 강제 가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 아이슬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청년 노동자 및 신규 시장 가입자에 한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

고 있어 근로자의 45~60% 가량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호주, 칠레, 홍콩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완전대체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표 VI-3〉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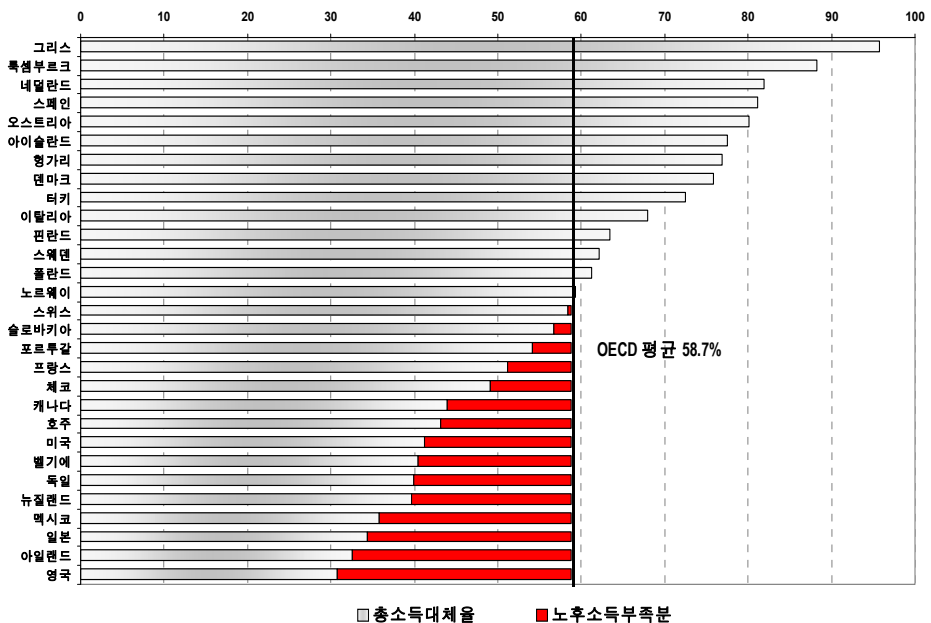
국가	제도형태	가입률	보험요율
호주	MO/P	> 90%	9%
덴마크	MP	> 90%	1%
헝가리	MP	58%	8%
아이슬랜드	MO	> 90%	10%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 90%	-
노르웨이	MO	> 90%	2%
폴란드	MP	49%	7.3%
슬로바키아	MP	45%	9%
스웨덴	MP	> 90%	2.5%
스위스	MO	> 90%	7~18%
영국	VO	43%	9%
미국	VO	47%	9%
캐나다	VO	39%	8.5%

주: M=강제가입, V=임의가입, QM=반강제가입, O=기업, P=개인.
 자료: 류건식(2008).

특징적인 것은 이들 국가 모두 연금개혁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확정기여형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을 대체(부분대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연금금이 대부분 산업별로 설치된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법정퇴직연금으로 각 산

업별로 관리한다. 더욱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므로 가입률이 100%일지라도 축적된 기금액은 미미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담당하며 임의가입이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발달은 미미한 편이다.

〈그림 VI-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



주: 노후소득부족분은 각국 공적연금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소득대체율과의 차이임.
 자료: OECD(200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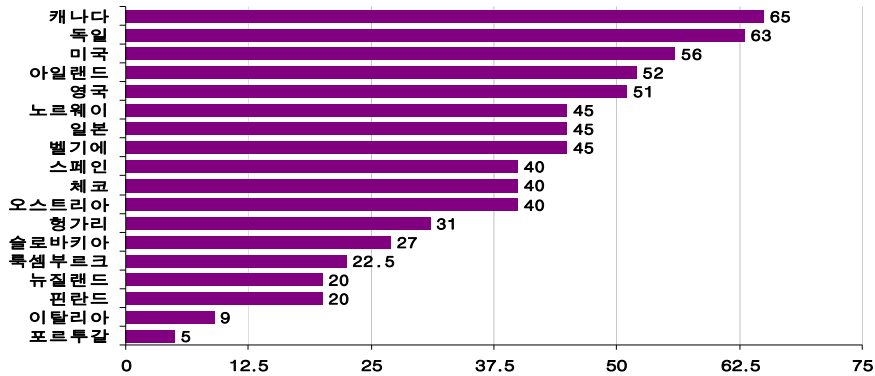
셋째, 영국 등처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부족분은 개인 또는 퇴직연금에 의해 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임의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대체로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

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적연금 가입률 여부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VI-3〉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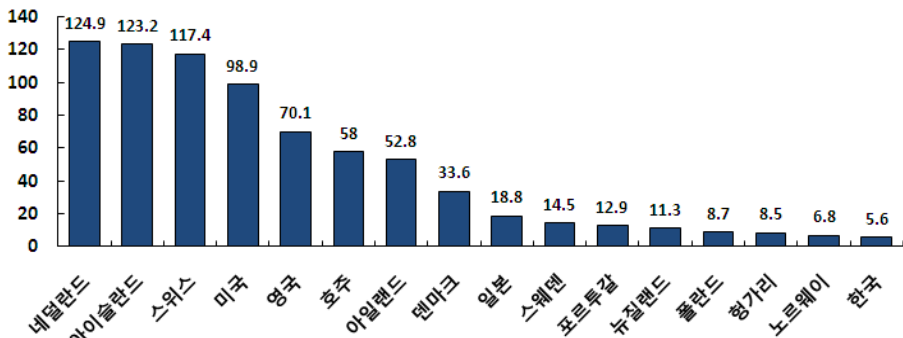
(단위: %)



주: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임.

이상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변화 등에 힘입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사적 연금금이 GDP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사적 연금금이 GDP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VI-4〉 GDP 대비 사적 연금 자산비율



주: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임.

자료: OECD(2009b).

이와 같은 사적 연기금의 역할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의 높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 등 금융의 장수리스크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제고가 가능하였다 할 수 있다.

<표 VI-4> 연금제도의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단위: %)

보장구분		WB 권고수준	미국	영국	일본
1층	국민연금(a)	30	41	31	34
2층	퇴직연금(b)	30	38	39	26
3층	개인연금(c)	10~20	10(가정**)		
합계(a+b+c)		70~80	89	80	70

자료: OECD; KDI; 보험연구원.

3) 개선방안¹⁰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가 등으로 장수리스크(노후소득보장) 관리를 위한 관리자로서 금융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의 역할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립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의 역할로는 ①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리스크 인수자로서 역할, ② 다양한 연금리스크 헤지 상품 도입·개발 등으로 적절히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108) 여기에서는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책당국측면에서의 역할보다는 보험회사 역할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개자로서의 역할, ③ 연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노후소득보장수준)이 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통제자(리스크의 분산)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중심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이 단지 17.4%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1985년 33.3%, 2000년 이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금시장의 성장 속에서 변액연금, 고연령 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ies) 등이 고령화의 주력 연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VI-5〉 401(k)형 은퇴시점 수익보장 연금상품 (예: 미국)

구분	Q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
운용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의 지정된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보장 기준 금액 보장 가입자는 최소한 5년간 이 상품을 유지했을 경우 59.5세부터 연간 5%씩 보장기준금액을 인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의 푸르덴셜이 직접 운용하는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보장기준금액의 연간 최소 이율 5%를 보장 가입자는 최소한 5년간 이 상품을 유지했을 경우 65세부터 연간 5%씩 보장기준금액을 인출가능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35% 운용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1.01 ~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95% 운용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55 ~ 0.8%
운용사례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	Prudential

또한 영국의 경우 은퇴 후 연금시장은 1996년 이후 3배 이상 성장하여 2007년에는 140억 파운드 규모이며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시장의 성

장은 특히 소득인출(Income Drawdown)연금인 무보장연금(USP: Unsecured Pension)¹⁰⁹⁾, 종신연금, 즉시연금, 표준하체연금(Enhanced and Impaired Annuities)인 강화형 연금의 성과에 기인한 바 크다. 일본 역시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연금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액연금보다 변액연금의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에 일찍이 진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상품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조합된 새로운 연금상품 도입 및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기반 마련과 더불어 DC형 상해보험 도입, 개인퇴직계좌(IRA)형 연금보험개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연금상품 개발, 일시납 즉시연금 활성화, 강화형 연금상품, 자산연계형 연금개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은 노후소득보장상품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고령화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리스크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발생하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스왑(Longevity Swaps¹¹⁰⁾, DB플랜 바이아웃(DB Plan Buy-Out¹¹¹⁾)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경

109) 영국의 경우 DB형의 경우 대부분 종신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DC형의 경우 급여의 일부에 대해서만 일시금 수령을 허용(급여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일시금 수령 허용)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이 연금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0) 장수스왑: 연금부채를 전부 매입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지급금(고정지급금: 기대수명에 기초하여 확정)과 장수와 관련된 지급금(실제수명에 연계된 지급금)을 교환한다.

111) 영국에서는 DB플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Buy-Out(DB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회사들은 보험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퇴직연금부채를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IFRS제도가 정착화되는 2010년대 중반이후 DB채택기

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부족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특히 영국 등은 퇴직연금에 장수스왑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국 보험회사는 장수스왑 등 퇴직연금 연계 파생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재 영국에서 장수스왑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장수스왑계약의 담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보험회사와 투자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수리스크 헤지에 대한 금융기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Lucida, Paternoster,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Rothesay Life 등 보험회사이다.

〈표 VI-6〉 장수스왑 제공 금융회사(예: 영국)

금융회사명	장수스왑	바이아웃	업종
Lucida	○	○	보험사
Paternoster	○	○	보험사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	○	보험사
Goldman Sachs(Rothesay Life)	○	○	투자은행 보험자회사
Credit Suisse	○	×	투자은행
Deutsche Bank	○	×	투자은행 보험자회사
JP Morgan	○	×	투자은행
UBS	○	×	투자은행
Swiss Re	○	×	재보험회사
AEGON	×	○	보험사
AIG	×	○	보험사
Aviva	×	○	보험사
Legal & General	×	○	보험사
MetLife	×	○	보험사
Prudential	×	○	보험사

자료: Lane Clark & Peacock, Pension Buyouts 2009,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

업들 중 퇴직연금채무가 부담이 되는 회사들이 서서히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DB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80%에 이르고 있고 퇴직연금시장이 성숙기로 진입하여 머지않아 퇴직연금급부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DB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처럼 퇴직급여제도 단일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의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장수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첫째, 장수리스크 관리시장의 규모를 예측하여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관련 상품개발 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수리스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 설계 및 데이터 축적, 장수리스크 관련 지수(Longevity Index)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DC형과 연계된 은퇴시점 수입보증형 상품(예: G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¹¹²⁾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DB형 퇴직연금이 감소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저축단계인 퇴직 전 적립단계에서 수입보증형 상품의 시장 잠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¹¹³⁾. 이에 따라 적립기간 동안 수입보증옵션을 부가하는 등 DC형 퇴직연금 내 수입보증형 상품의 설계가 장수리스크의 헤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기간 동안 수입보증옵션을 부가하는 형태 또는 퇴직 후 체계적인 연금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제도 내 상품개발(Hybrid 401(k) Plan, In-Plan Annuity 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대체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리스크 통제자(리스크의 분산)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35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자수익률이 1.54%에서 3%p 증가하는

112)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105개의 설문조사 대상회사 중 13%의 회사가 관심을 나타내어 2007년에 비해 1.6%p 증가하였으며, Prudential의 Income Flex 상품은 2009년 4월 말 현재 약 130개 회사의 직원들이 가입하여 약 1억 6천만 달러의 적립금을 기록하였다.

113) 일반 수입보증형 상품으로는 근로자 퇴직시점에 적립액으로 연금, 뮤추얼 펀드, 생존보험가입, 일시납 즉시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경우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2.5%에서 29.3%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VI-7〉 투자수익률에 따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투자수익률	연금가입기간		
	25년	30년	35년
1.54%	9.4%	11.0%	12.5%
2.54%	12.0%	14.3%	16.5%
3.54%	15.1%	18.5%	22.0%
4.54%	19.1%	24.0%	29.3%

주: 1) 투자수익률 1.54%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시 사용한 초기수익률 데이터임.
2)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제도에 의해 시현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이러한 점에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금자산 배분전략(연금 ALM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시점에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형 투자상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률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¹¹⁴⁾. 미국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401K¹¹⁵⁾의 가입자 중 라이프사이클 펀드로 운영하는 가입자 비율이 31% 이상이며¹¹⁶⁾ 2009년 말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자산액은 전년대비 45.3% 증가한 약 2,55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¹⁷⁾.

114)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자산의 배분을 기간별로 세밀하게 조정하는 장기투자상품으로 ① 다양한 투자자산의 배분, ② 극단적인 자산배분 회피, ③ 자동재투자, ④ 위험변화에 대한 자동적인 투자 조정 등의 특징이 있다. 사전에 결정된 날짜와 위험등급에 따라 보수적, 보통, 공격적 자산배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기간 경과 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재분배하게 된다. 또한, 퇴직시기를 결정하고 기간에 따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자산배분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산배분에 대한 이해와 자산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115) DC형 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종업원이 자신의 계좌로 소득 중 일부를 각출하면, 기업주가 나머지 반을 퇴직장려금으로 각출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종업원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는 연금제도로써 1980년대 말까지 주로 생명보험 회사의 개인연금이나 은행의 신탁상품에 운용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뮤추얼펀드로 투자되는 자금이 급성장하였다.

116) Deloitte Consulting LLP, Annual 401(k) Benchmarking Survey: 2005/2006 Edition.

또한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규제환경의 변화로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감소되어 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우려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변동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 ·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자산 투자 시 자산위주의 운용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등이 요구된다.

〈표 VI-8〉 전통적 운용과 부채 중심 운용과의 차이

구분	전통적 운용	부채중심 자산배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운용 고수익 • 모든 기간 동안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며, 비용의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를 행하여 적립잉여 및 적립 부족을 통제
리스크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익률을 해당부문의 지수 또는 S&P500과 같은 대표지수와 연계하는 등 자산의 변동성만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지수와 연계하지 않고, 연금계리사가 평가한 연금펀드의 부채와 연계하는 등 연금채무 변화에 대응한 펀딩비율의 변동성을 고려
무위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즉 자산과 부채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비율의 변동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초과부담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채 중심 배분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어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융은 장수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장수리스크의 인수자 · 전가자 · 통제자)과 기능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정책당국 역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선과 더불어 공사연금 간의 역할 분담체계와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고령화 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

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선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부체계의 개선, 연금세제체계의 개선, 적립금 운용체계의 개선,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적립금 운용형태의 개선 등이,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과 저소득계층 연금가입에 대해 실질 수익률이 향상되도록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적 개선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지역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걱정 및 실질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에 기초한 역할분담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리스크관리자로서의 금융의 역할과 리스크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질 때 사적연금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보다 제고될 것이다.

나. 노후건강보장: 민영의료보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은 예측지 못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¹¹⁸⁾자 수는 2002~07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였다(박종연 et al., 2008).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전체 인구보다 높고, 고령자의 본인 부담금 증가세는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적보험의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은 제한적이어서 예측지 못한 노후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은 의료비지출의 위험에 노출된다. 2008년 고령자의 개인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한 비율을 추정해 본 결과 2007년과 동일 수준인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V장 참조). 고령자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령자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이 2007년에 10.8%로 조사되고 있으나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

118) 노인성질환은 크게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여대상자는 고령자의 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은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공적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서비스 미충족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해외 자료를 보면 보험가입자는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미가입자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KCMU, 2008; KFF, 2007; Center on an Aging Society, 2000; Joseph J. Sudano Jr, PhD, and David W. Baker, MD, MPH, 2003; Baker et al., 2001). 보험 산업은 민영의료보험이 예측치 못한 의료비지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를 검토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노인건강상태와 의료비부담 현황

우리나라 고령자의 90%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다는 조사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선우덕 외, 2009; 김혜련 외, 2006; 선우덕 외, 2005; 오영희 외, 2005; 도세록 외, 2004; 선우덕 외, 2004).

〈표 VI-9〉 고령층의 본인인지 만성질병 수

(단위: %)

연령	없다	1개	2개	3개 이상	계(명)
65~69세	10.3	20.9	18.9	49.8	1,214
70~74세	7.9	15.6	17.4	59.1	903
75세 이상	8.7	13.4	20.7	57.2	9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¹¹⁹⁾.

119) 변용찬(2009)를 재인용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90%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 상태에 있다. 65~69세에서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갖은 사람이 49.8%에 달했고 1개 이상 갖은 사람은 89.6%에 이르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만성질환을 지닌 사람은 91.3%에 이르렀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수는 2002~07년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이였다. 절대적인 수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2002년에는 6.8%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0.8%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고령자의 노인성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인성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2002년 2,405억 원에서 2007년에 8,995억 원으로 3.7배 증가하였다(V장 참조).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본인부담액이 2002년에 1,835억 원이었고, 2007년에 6,329억 원으로 6년 사이에 3.4배 증가하였다. 진료실인원 1인당 본인부담액은 2007년에 120만 원으로 6년 전에 비해 69.7%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부담금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들은 노후건강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보험산업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서 정비가 필요하다.

2) 민영의료보험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허가의료와 미허가의료(임의비급여의료라고도 하며 신의료기술의료 등이 해당)로 구분하고 다시 허가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의료인 보험적용의료가 있고 부합되지 않는 의료인 법정비급여의료가 있다. 건강보험적용의료는 다시 ① 건강보험급여의료, ② 일부본인부담의료(법정본인부담

금), ③ 전액본인부담의료로 분류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약관상 명시된 보장제외항목을 제외하고 임의비급여의료를 포함한 모두를 보충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장기간을 보장하는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후건강보장을 준비하는 개인들에게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상이했던 상품들이 2009년 10월 주요사항에 대해서 표준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들을 비교 평가하기에 용이해졌고, 보험회사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환자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장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공제액 및 보장한도를 통일하였다. 셋째, 상해 및 재해로 회사 간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상해로 통일하였다. 넷째, 면책사항 등 보장범위를 통일하였다. 다섯째, 외래와 처방조제약을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부분을 보장하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임의비급여를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의비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공급자에 의한 급여부분의 임의비급여부분으로의 전환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이에 대한 심사평가의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심사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임의비급여부분에 대한 심사는 경험데이터와 정교한 지급심사 체계를 갖추어야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반면, 임의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임의비급여부분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의비급여부분은 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고급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고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이 임의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부분을 보장하되 임의비급여서비스에 대해 심사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중복해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복가입자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중복가입의 방지 및 중복가입자의 해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211만 명(금융보험통신, 2010. 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 등 유사보험의 가입자의 중복가입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계적인 중복가입방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중복가입자라도 보험금의 청구를 한 회사에 하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체계적인 지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유사한 형태의 상품임에도 회사별로 약관이 상이하였다. 1천만 명 이상이 이러한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 있고 향후 이 점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회사는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보장비율(비례보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상품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2009년 10월에 상품이 표준화되어 이미 정책적으로는 개선되기는 했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는 표준화 이전의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지급사유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한 후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팩스나 방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상환 청구하는 체계(상환제)이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번거로운 청구 절차 및 비용 발생,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 보험회사에게는 서류접수 등의 행정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고령자가 팩스를 보유하거나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더더

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제3자 청구제)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조용운·김세환, 2008; 조용운·김경환, 2010).

마지막으로, 실손형 보험은 상환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지급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지급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운영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역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료비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은 실손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피보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심사평가가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개선방안

성공적인 노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건강보장 문제를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서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상황이고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그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65세 이후에는 민영의료보험료가 급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한 노인의료저축계좌(SMSA: Senior Medical Savings Account)¹²⁰⁾제도 등 노인인구의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20) 중장년기에 의료저축계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적립하게 하고 적립된 재원의 지출은 6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의료저축계좌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어서 65세 이상의 과잉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Evans, 1974)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대 간 소득이전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고령자에게 어려움이 많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제3자 청구제로 전환하여 고령 소비자의 편의제고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에 대한 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합리적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건강보험은 통계 집적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지급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의 급증하는 의료비 관리를 위해 현실적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고 지급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 노후건강보장: 장기간병보험

노인인구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인인구 중 노인성질환자의 비중이 2007년에 10.8%로 조사되고 있으나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노인인구의 3.3%에 불과하다. 2010년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4.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증의 환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은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공적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병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보장내용

장기간병보험(LTC: Long-Term Care)은 이동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상장애

상태나, 기질성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돌봐야 하는 치매 상태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2003년 일본 위험률을 기초로 장기 간병보험을 도입하였다. 2008년 현재 주계약으로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이다. 위험률의 변경이 가능한 위험률변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개 일시금 혹은 매월 연금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동경해상의 개호위험률을 보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현재 주계약으로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3개사이다. 주로 노인성 치매간병비를 보장하며, 대개 1천만 원 한도에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치매 상태’ 혹은 ‘일상생활장해 상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치매 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두 산업의 지급사유가 내용상 동일하나 생명보험에서는 면책기간(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없는 등의 상품 내용에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의 「일상생활장해 상태」는 일상생활장해보장책임 개시일인 계약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보장하는 유지기간을 두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매 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혹은 180일 이상의 유지기간이 있다.

나) 실적 현황

〈표 VI-10〉 간병비 보장보험 위험보험료 실적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손해 보험	상해 간병	33	93(183.6)	200(114.5)	244(22.3)
	질병 간병	68	82(19.5)	110(35.5)	131(18.4)
	상해/질병 간병	195	186(-5.0)	184(-0.3)	212(15.0)
	소계	296	359(21.6)	494(37.5)	587(18.7)
생명 보험	장기간병	1,142	1,335(16.9)	1,615(21.0)	1,926(19.2)
계		1,438	1,694(17.8)	2,109(24.5)	2,513(19.1)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간병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하여 FY2007에 2,513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위험보험료 실적은 58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위험보험료 실적은 1,9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9.2% 상승하였다.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을 활용해 요양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 문제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민영장기요양보험의 잠재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공·사 협력방안,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의 3.3%에 불과하여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성질환자의 절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비중도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2002년에 비해 2007년 3.4배 증가하여 개인의 재정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장기간병보험의 판매실적이 두 자리 수 성장을 하고 있는 등 보험을 활용해 요양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최근에 일본의 경험위험률을 들여와 개발되기 시작했고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경험 데이터의 축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액형 상품의 개발, 실손형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보험료 산정 시 안전 할증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치매 상태’ 혹은 ‘일상생활장해 상태’, ‘활동불능 상태’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양 업계 간 장해판정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장기간병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인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실손형 상품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개선방안

장기간병보험은 현재는 정액형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향후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 보험은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공적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적보험의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소득이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추가 또는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공적보험제도 하에서 급부를 받더라도 시설급부의 경우에는 20%, 재가급부의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간병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보장하면서 급부를 추가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경증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충적인 민영보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므로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실손형 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를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운영하면 소비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시장성이 있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노후 건강보장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간병보험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실손형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간병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무엇보다도 공적 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보장하지 않는 부

분의 경험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간병보험은 공적 보험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등급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현재 장애분류표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판정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험계약자와 이증판정에 따른 분쟁과 신뢰손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보험급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험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에 집중되어 있는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확대해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조용운·이종욱, 2009).

라. 자산관리서비스

1) 현황 및 문제점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단일 신탁계약에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과 더불어 보험상품까지 담을 수 있는 보험신탁이 자산관리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¹²¹⁾.

121) 보험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보험을 다른 금융상품들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생애국면 차원에서는 준비국면, 축적국면, 소진국면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재무목표 차원에서는 기본생활보장, 평균생활유지, 생활수준개선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즉 평균생활유지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생활수준개선을 위해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포함되는 한편, 기본 생활보장을 달성하려면 보험상품이나 연금의 활용이 요구된다.

〈표 VI-11〉 자산관리 시 고려되는 복합적 재무목표

재무목표	기본생활보장	평균생활유지	생활수준개선
위험-수익	무위험-원금보장	저위험-저수익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	보험, 원금보장자산	시장포트폴리오	고수익자산
관리방식	위험전가	분산투자	위험추구
비교대상	물가상승률	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다(MMI, 2008). 해외에서 자산관리서비스는 한 계좌에서 단일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SMA(Separately Managed Account)에서 시작하여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MDA(Multi-Discipline Account)를 거쳐 궁극적으로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 및 금융상품 유형을 수용하는 UMA(Unified Managed Account)로 진화하고 있다.

〈표 VI-12〉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운용자산	6,000	8,500	10,800	17,400	14,500	16,500
운용자산 성장률	30.4	41.7	27.1	61.1	-16.7	13.8
스폰서 수	120	200	180	211	248	230

자료: Private Banking KPI Benchmark, Scorpio Partnership.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영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신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기정(2009), 진익(2009)을 참조한다.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2.75배 증가하였다. <표 VI-12>는 지난 5년 동안 성장해 온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스폰서 수와 운용자산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2004년 6조 달러에 불과하던 자산관리서비스 운용자산 규모는 2007년 17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4조 5천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16조 5천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2.4%에 달한다.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형 스폰서들 사이에서 인수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 영역에 새롭게 진입한 금융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자산관리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볼 때 아직 SMA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MDA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복잡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VI-13>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금액	비율(%)	
겸영사	은행	149.6	147	142.9	150.9	155.2	43.4
	증권	24.3	27.5	36.5	54.5	69.4	19.4
	보험	0.2	0.3	0.3	0.4	0.4	0.1
	소계	174.1	174.8	179.7	205.8	225	63.0
부동산신탁회사	84.6	95.9	105.7	124	132.2	37.0	
합계	258.7	270.7	285.4	330	357.4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국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고객별 계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면 그 내용이나 구조에

서 표준형 집합투자와 차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로 간주된다. 이는 국내에 집합투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신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간접투자문화 때문이라고 보인다.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개별성을 제외하면 신탁과 집합투자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논리적인 면에서 보거나 해외 금융선진국 사례를 볼 때,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자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선방향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① 복합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의 도입,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인프라 개선, ③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신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신탁의 도입이 요구된다.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객의 소비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은 전 생애 중 축적국면과 소진국면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투자위험, 사망위험, 장수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는 것이다. 투자위험은 은행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 사망위험은 보험상품, 장수위험은 연금상품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결합이 자산관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방형-판매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개방형-판매플랫폼이 구축되면, 기능결합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복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서비스는 스폰서가 스스로 공급하되 부수서비스는 외

부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방형-판매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객-스폰서(판매플랫폼)-운용자 사이에 정보교환이 표준화되고 자동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STP(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와 외부-STP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의 지원 범위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적합성원칙에 기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의 활용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 시행, 보험업법 개정을 계기로 적합성원칙이 폭넓게 도입되었다. 동 원칙에 따르면 스폰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프로그램의 위험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고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만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적합성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과 스폰서 사이에 상황인식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때문에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폰서가 신의성실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사후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관행으로서 정착된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¹²²⁾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소진기 고객에게 적합한 것은 개별적 이해요구에 대응한 다품종 소량생산인 반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은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이다. 이러한 차이가 조정되려면 고객과 금융회사에서 자문서비스를 토대로 한 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신탁에는 투자일임제도의 투자기능과 더불어 보장기능까지 연계될 수 있다¹²³⁾.

122) GIPS는 미국 국제재무분석사(CFA)협회가 제정한 운용성과 공시표준이다.

123) 신탁을 활용하면 고객의 이해요구에 따라 권리자 속성(재산관리능력, 신용능력, 자연

그런데 우리나라 신탁제도를 보면, 고객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보험 및 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편¹²⁴⁾,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서도 보험 및 연금이 제외되어 있다¹²⁵⁾. 이는 우리 신탁제도가 투자기능에 집중하여 신탁가능재산 및 신탁재산 운용대상을 금융투자상품·예금 중심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신탁이 투자기능과 더불어 보장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신탁가능 재산 및 신탁재산 운용대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포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유형·무형, 법적·형평법적(legal or equitable)을 묻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¹²⁶⁾. 현재 신탁업무는 각 주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 각 주의 신탁업무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¹²⁷⁾.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험신탁’이 자산관리서비스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탁회사들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보험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도 유형·무형, 법적·형평법적을 묻지 않고 식별될 수 있는(identifiable)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¹²⁸⁾.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2006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제

인 성격 등이 전환될 수 있으며, 단일(복수) 권리자가 복수(단일) 권리자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재산권 속성과 관련하여 고객이 가족의 장래에 대비하고자 재산권 향유 시점을 미래로 연기하거나, 기존 재산권의 성질/형태를 전환하거나, 개별 재산들을 결합하여 포괄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참조한다.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를 참조한다.

126) Bogert, Oaks, Hansen and Neeleman, the Law of Trusts, 7th ed, 2001, p.27과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127) 2000년 Uniform Law Commissioners의 주도로 UTC(the Uniform Trust Code)가 제정되어 보급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28) Oakley, Parket and Mellows: the Modern Law of Trusts, Sweet & Maxwell, 9th ed, 2008, p. 17과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탁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2006년 개정된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범위를 “일체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 제3항)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²⁹⁾. 한편 보험업법(제99조)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고유업무(제97조) 및 부수업무(제98조) 이외에 고유업무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업무 영위할 수 있다(제99조 제3항). 특히 ‘보험금신탁’이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를 참조하여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험업법에 보장기능까지 포괄하는 “보험신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서는 신탁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표준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차등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거시경제위험 관리

가. 금융중개기능 및 경쟁력 제고

1) 금융중개기능 제고

오래전부터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많은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 강한 상관관계(correlation)뿐만 아니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인과관계(causality)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gano, 1993; Levine, 1997; Hab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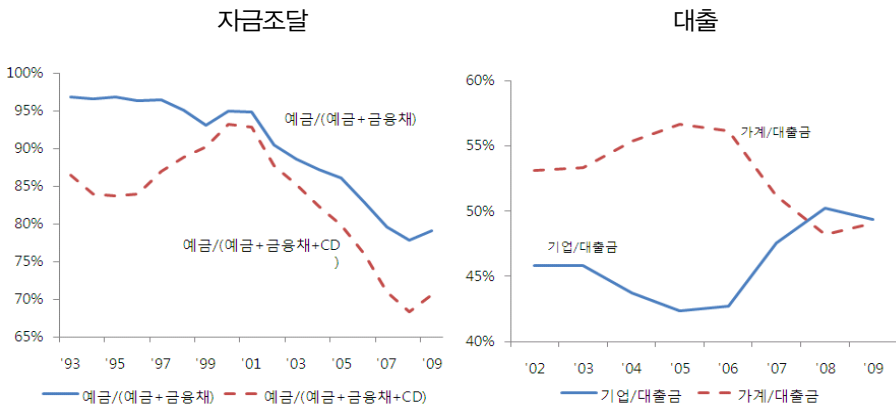
경제학 문헌에서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강

129) 최수정(2007), 『일본 신탁법』, 진원사, p. 14와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조하고 있다. 첫째, 금융발전은 금융중개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저축을 투자로 흘러가게 한다. 즉, 금융이 발전하면 생산적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발전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즉, 다양한 투자기회가 존재하지만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투자기회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발전은 가계의 저축 유인을 높인다. 즉,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면 이전보다 위험대비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저축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기능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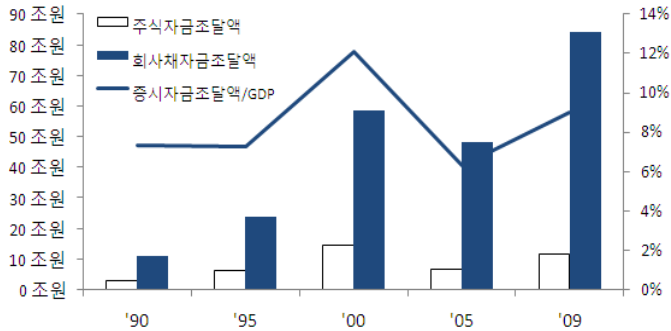
〈그림 VI-5〉 은행의 자금조달 및 대출



자료: 한국은행, ECOS.

먼저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측면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말 95% 수준에서 2009년 말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금조달에 CD를 포함할 경우 동 비중은 70%대로 더욱 떨어진다.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된다는 면에서 금융 중개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림 VI-6〉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규모를 보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채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10% 내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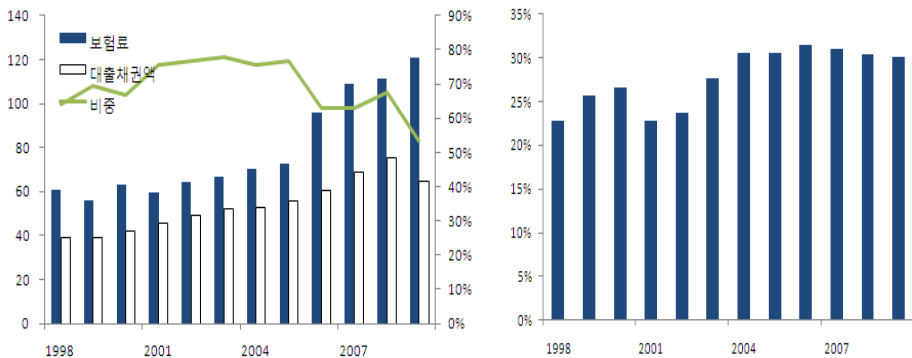
〈그림 VI-7〉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과 담보대출 비중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

(단위: 조 원)

담보대출 비중

(단위: %)



자료: 보험통계연보.

보험의 경우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에 의한 신용대출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권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회사채의 경우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낮은 상황이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의 단순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기업의 대출수요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 (relationship lending)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다.

넷째, 금융회사의 안정성 중시 경향이 높아졌다. 은행이나 보험이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계대출 대신 거래대출(transaction lending)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을 중시하였다.

다섯째, 대형화 및 겸업화로 대리인 비용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이 복잡해질 경우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ger and Udell, 1996). 그 동안 겸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 업권은 고유 영역 이외에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여섯째,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도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경우 우량기업의 상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강종구(2005)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이 높거나 부실여신비율이 낮을수록 기업대출, 중소기업

대출 및 설비자금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개선을 통한 신인도를 제고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금조달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신기능을 유지, 강화하여 기업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며 고수익채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 경쟁력 제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경우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녹색성장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제시한 바 있다¹³⁰⁾. 현재 신성장산업의 규모나 현황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발표되지 않으나 정부의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 수출, 고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¹³¹⁾.

130)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신성장산업을 발굴함에 있어 시장성과 파급효과가 주요 선정기준으로, 그리고 녹색성장 연관성이 보조 척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성장산업을 3대 분야로 구분하여, ①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인 녹색기술산업, ②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첨단융합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③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3대 신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신성장동력의 예를 보여준다.

〈표〉 신성장산업 분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

131) 우선 부가가치 총액이 2008년 기준 연평균 12% 증가하는 가운데, GDP 대비 부가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신성장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못하며, 신성장산업의 경우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결과, 국가 경제 수준에서의 편익과 개별 시장 참여자의 편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은 고유의 기능(금융중개·위험관리·가격발견·선별감시·정보생산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성장가능성이 성숙된 분야¹³²⁾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시장조성자 및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위험이 높은 분야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본 방향은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³⁾.

둘째, 금융의 금융중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의 경쟁력

가치 비중은 2008년 24%에서 2018년 38% 수준으로 1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동력 분야 수출액은 2008년 기준 연평균 약 18% 수준으로 증가하여, 10년 후 약 9,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2008년 대비 향후 10년간 약 3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해당산업 종사자가 연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32)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133)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제도개선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 시 정부가 위험인수,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민간 금융부문은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위험인수 등에 주력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 개선될 것이다. 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발달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발달 정도는 2009년 비교대상 국가 중 23위에 불과하였다. 이 또한 2008년 19위에서 4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교역규모가 세계에서 10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중개 기능이 제고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다.

〈표 VI-14〉 금융의 경쟁력 비교

국가	2009년	2008년	국가	2009년	2008년
영국	1	2	네덜란드	8	9
호주	2	11	일본	9	4
미국	3	1	덴마크	10	n/a
싱가포르	4	10	프랑스	11	6
홍콩	5	8	독일	12	3
캐나다	6	5	벨기에	13	17
스위스	7	7	한국	23	1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나. 고령친화산업 지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다. 고령친화제품 등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①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②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③ 노인요양 서비스, ④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⑥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⑦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⑧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VI-15〉 고령친화산업 분류

부문	전략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 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 기능성식품, 노인용 한방 화장품,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산업	저상서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 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형 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개념적으로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¹³⁴⁾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¹³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¹³⁶⁾. 이와 같은 14대 부문은 고령친화산업의 모태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 고령자¹³⁷⁾라는 특정 유형의 수요자에 특화한 것을 고령친화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의의는 ① 동 산업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 ②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③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표 VI-16〉 고령친화산업 수요자 추계

(단위: 만 명)

구분	2002년	2010년	2020년
건강노인	75	110	150
장기요양 필요 노인	300	420	610
수발자	30	42	61
베이비붐 세대	980	1,300	1,600
합계	1,385	1,872	2,421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134)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모 등이 예이다.

135)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이 예이다.

136) 2005년 1차로 8대 부문 19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2006년 2차로 6대 부문 15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를 참조한다.

137)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며,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로 분류하고 55세 이상을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경제적 활동의 은퇴시점인 6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인 수요자에게 특화하는 산업인 만큼,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더불어 수발자,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생) 등이 주요 수요층이다. 그런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자가 2002년 기준 1,385만 명에서 2010년 1,872만 명, 2020년 2,42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통계시스템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용품산업과 노인요양서비스로 분류하는데, 고령친화용품의 시장규모는 2006년 0.68조 원에서 2008년 1.34조 원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보건산업통계시스템에서 시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의 고령친화용품 중, 개인건강 의료용품 시장규모가 2008년 기준 5,677억 원으로 가장 크며, 배변용품 1,614억 원, 기능저하예방용품 1,166억 원 순이다.

〈표 VI-17〉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시장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판매	5,159	7,605	6,719
수출	1,130	3,286	3,312
수입	534	721	3,447
합계	6,823	11,612	13,478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요 수요층인 고령자의 수는 이미 적정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들의 구매력이 낮은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① 인식 부족, ② 시장성에 대한 불신, ③ 제도적 제약, ④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① 고령친화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시장성 제고, ③ 제도 개선, ④ 장기성장성 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내부역량을 축적

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각 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은 <표 VI-18>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초기에 정부 주도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단법인이나 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부문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 제공이 가능하다.

<표 VI-18> 개선 방향 및 실행방안

기본 방향	세부 실행방안
인식제고	① 종합정보제공체제 구축 ② 산업화지원센터 확대 ③ 생활체험서비스사업 확대
시장성 제고	①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개발 ② 정부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 ③ 클러스터 기반 사업모형 발굴 ④ 핵심 전략품목 관련 기술 개발
제도 개선	① 표준화 ② 인증제도 ③ 전문인력 양성 ④ 규제 완화 ⑤ 고령자 고용 확대
장기 성장 가능성 확보	① 주요 무역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② 관련 국제표준 선점 ③ 체계적인 정부 지원 마련

금융부문과 고령친화산업의 관련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수요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다. 시장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친화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사업 영위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협의의 자금중개기능으로서 주로 은행이나 창업투자회사가 담당하는 역할이고, 후자는 협의의 위험관리기능으로서 주로 보험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인다.

시장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수요층인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것과 고령친화상품·서비스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달성이 가능한데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고, 후자는 민영보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바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예로서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¹³⁸⁾,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이 도입된 후 동 보험이 적용되는 관련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이 급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¹³⁹⁾.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는바, 동 보험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운영실태(급여대상자 범위, 서비스수요 대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질 등)의 지속적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138) 이 밖에도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시장에 진출하는 것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39) 관련 시장규모가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상품대여, 방문요양시설 관련 영리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日本 厚生労働省, 「平成17年 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結果の況」을 참조한다.

VII. 결론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고용불안정 심화, 주택마련 비용 증가,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건수 및 결혼비율이 줄어드는 한편, 초혼연령 및 초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차: 1955~63년 출생, 2차: 1968~74년 출생)의 은퇴시기(55세)가 2010년에 도래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은 경제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총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을 줄이는 한편,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9년 4% 중반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1인당 교육투자가 증가할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경제성장 둔화가 완화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양(+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

보다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라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기준으로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20.5%인 반면 우리나라는 6.9%에 불과하나 동 비중은 2030년 14.4%, 2050년 20.8%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형수·전병목(2009)에 따르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은 2009년 GDP 대비 0.3%이나 2030년 1.22%, 2050년 1.64%로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도 2009년 GDP 대비 0.28%에서 2030년 1.65%, 2050년 2.71%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저축률 하락과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자산가격 및 수익률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실증분석 결과 은퇴가구도 양(+의) 저축을 시현하는 등 생애주기시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따라 자산공급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이자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같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실질기준으로 수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저축률 하락에 따라 투자로 연결될 자금이 줄어드는 한편, 위험자산 회피성향 증대, 자산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와 저축행태를 은퇴 전후로 살펴볼 때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해 보인다. 먼저 가계의 저축행태를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18%로 가장 낮고 60대 가구주 가계의 저축률이 26.5%로 가장 높다. 이는 은퇴 이후 순자산이 부족함을 깨닫는 한편, 가계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지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면 실물자산(비중 79%)에 집중되어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현재 소득의 58.9%이나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40% 정도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중범·전승훈(2006)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통계청 사회조사)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51.9%가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37.6%가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중 49.7%는 근로 및 사업소득, 27.3%는 연금 및 퇴직금, 15.9%는 재산소득, 7.1%는 예금이였다. 이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생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인구 중 소득이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비중도 51%로 OECD 평균 30%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에 대해 공공부문과 금융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가계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공적연금, 공적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나 문제점은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유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204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요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30년 이하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므로 실제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30% 이하가 될 것이며 2009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83만

6천 원이나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동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기준소득은 360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로 구성된 연금수급자 가계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3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은 60~7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모수적 개혁, 완전민영화, 부분민영화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연금 개혁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중장기 개편과 관련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공사연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보장성(2008년 급여율이 56.6%)이 OECD 국가(평균 80%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재정수지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이 57.5%로 전체 연령층 56.6%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65세 이상에 대해 지급한 급여비의 연도별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시행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활용을 통한 가계의 자조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이나 중증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중은 2009년 8.1%에서 2040년 17.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이 높은 항목은 노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통해서 노인인구의 소득을 보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재정을 축소하면 노인빈곤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공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노인인구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자산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역할인데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유지, 금융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출산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의 양립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침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도 1995년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추월하여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 전문화되어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높은 산업(생산자서비스)과 고령사회에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는 산업(사회서비스)을 선택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 등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부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2%에 불과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을 늘려 재정경직성을 심화시

김으로써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재정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져 금융자산을 통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금융과 가계가 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수위험과 장기자산운용위험(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금융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먼저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기채권이 기본적으로 장기국채일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신용위험을 고려할 때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국채와 관련하여 물가연동채권시장의 성장되어야 하며, 장기국채시장 발전의 보조수단으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계위험 및 거시경제위험과 관련하여 금융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가계위험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 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대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투

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 대체율 증대)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계는 노후건강을 위해 보장성이 높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2002년 2,405억 원에서 2007년에 8,995억 원으로 3.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어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금융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병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공·사 협력방안,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취급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합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의 도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인프라 개선,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거시경제위험과 관련하여 금융은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여 저축률 하락으로 부족해지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금융중개기능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

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회사채의 경우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낮은 상황이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의 단순증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증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다. 넷째,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계대출 대신 거래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다섯째,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도 금융증개기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금융증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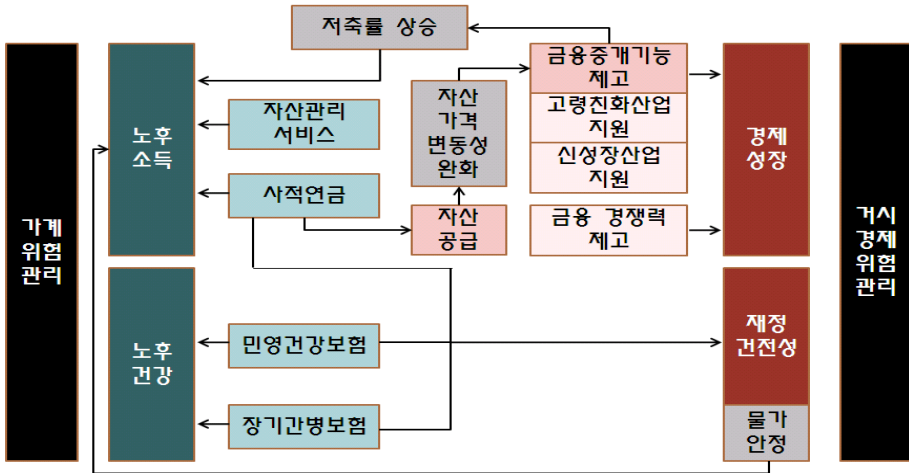
금융증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신성장산업의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할 경우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민간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

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이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VII-1>로 도식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II-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미칠 충격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역할이라는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정리하는 한편, 공공부분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충실히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차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9),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
금의 자산충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종구(2005),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14호, 한국은행.
- 강희돈·소인환(2005),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와 민간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2007),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개선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건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호.
- _____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 「평성 16년 사회보장급부비」.
- 국민연금공단(1998), 「국민연금10년사」.
- 국회예산정책처(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_____ (2010a),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
- _____ (2010b),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 금융감독원(2010), 「2010년도 퇴직연금시장 분석 및 2011년도 시장전망」.
- 금융투자협회(2011),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
- 기획예산처(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기획재정부(2009),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_____ (2011),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보도자료.
-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 김대일(2004),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심포지 「인구
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발표논문, 한국개발
연구원.

- 김동석(2004),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발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 김미숙·김성천·정익중·이혜원·오승환·이주연·신어진(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률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옥(2007),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문형표(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김원규(2004),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가능성과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39호, 산업연구원.
- 김원섭·김수완·주은선·최영준(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원섭(200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혁사례」, 200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재경·최재식(2007), 「공무원연금 다층구조 효과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김진욱(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0권.
- 김태완(2010), 「아동빈곤에 대한 소고: EU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 김현정(2006), 「서비스산업 비중증가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2권 4호, 한국은행.
- 김혜련·강영호·박은자·최정수·이영희·김영삼(2006), 「한국인의 사망과 질병 및 의료이용의 요인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 노진영·임춘성·채민석(2010),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조사연구』 2010-4, 한국은행.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
- 도세록·이연희·신창우(2004), 「의료이용환자의 상병변화 및 특성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건식(2008),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자료.
- 류건식·이창우·김동겸(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보험연구원.
- 문형표(2005),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 문형표 외(2007), 「공무원 퇴직연금 및 저축계정 도입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박석희(200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예산현안분석』 14호, 국회예산정책처.
- 박시내·심규호(2010), 「베이비 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 박양균(2009), 「국민연금 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자유기업원.
- 박종연·권진희·이정석·강임옥·이윤환·김도훈(200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박창균(2003),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 한국개발연구원.
- 박창균·임경목(2004),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장기채권시장과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박형수·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

- 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공동.
- 방하남(2005),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방안」,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 배준호·김상호(2005), 「연금 이렇게 바꾸자 - 노후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연금체계」, 한국경제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10a), 「2009 보건복지백서」.
- _____ (2010b), 「2009 아동·청소년백서」.
- _____ (2010c),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 _____ (2010d),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2007),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빈곤통계연보.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경험통계연보, 각 연호.
- _____ (2010), FY2009 생명보험 통계분석자료집.
- 보험연구원(2010), 「2010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용찬(2009), 「노인 건강보장 정책현황과 노후설계」, 2009 헬스케어심포지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삼성경제연구소(2007),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2010), 「베이비 붐 세대 설문조사」.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선우덕·오영희·이수형·오지선·이석구(2009),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송현중·이윤환·김동진(2004),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송현중·황나미·강은정·서영준·김태일·김동진(2005), 「고령화 사

- 회에서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명기(2009),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신관호·황운재(2005),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질임금 및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한국은행.
- 안중범(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 제4장」, 『KDI 연구보고서』 2003-06, 한국개발연구원.
- 안중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전후의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3호.
- _____ (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 _____ (2006), 「노후대비와 가계저축: 가구주 및 가구특성에 따른 분석」, 『공공경제』 제11권 제2호.
- 양재진(2007), 「한국 연금제도의 대안적 개혁모형: NDC소득비례형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 오영수·이경희(1998),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Ⅱ):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김종면·전병힐·우석진(2008),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조세연구원.
- 유경원·이혜은(2010),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보험연구원.
- 유해미(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윤석명(2000), 「공적연금과 명목확정각출제도」, 『보건복지포럼』 2000년 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김대철·신화연(2005),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 방안」, 제5차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집.
- 윤재호·김현정(2010),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

은행.

- 이경아(2010), 「물가연동국채 재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이규식(2002),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 이상호(201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 이상호·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 이윤경(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1호.
- 이정우(2005),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 이찬영(2009), 「가계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행태」, 『금융경제연구』 제379호, 한국은행.
- _____ (2011), 「서비스업의 투자부진 요인 및 정책과제」,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 임경목(2002),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주식 보유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오영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보험연구원.
- 장동한(2005), 「개인가좌제도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전승훈(2009),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연구』 제8호, 국회예산처.
- 전영준·유일호(2004),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후생분석」, 『경제학연구』 제52집 제1호.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보건사회연구원.

- 정영호·고속자(2009),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형선(2008), 「의료보장성/건보급여율의 개념, 산출방법 및 결과」, 연세대학교.
- _____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 정후식(2007), 「일본의 고령화 진전과 정책대응」,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 조용운·김세환(2008),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조용운·이종욱(2009),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방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진 익(2009),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경영보고서』 2009-2, 보험연구원.
- 최공필·남재현(2005),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최은영·권순만·김찬우·강주의(2005),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식(2006),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분석」, 성균관대학교.
- 최준욱·전병목(2004), 「인구고령화와 재정」, 『인구고령화 협동과제』 04-7, 조세연구원.
- 최준욱·박창균·이기영·이명현·전영준(2005),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 대책」, 『인구고령화 협동과제』 05-10-05, 조세연구원.
- 통계개발원(2008),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가계조사를 이용한 의사패널을 중심으로」.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 _____ (2007), 「가계자산조사」.
- _____ (2009a), 「가계동향조사」.
- _____ (2009b), 「사회조사」.
- _____ (2009c),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 _____ (2010a),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_____ (2010b),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개발연구원(2006),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 노인생활실태조사」.
- 한국은행(2009), 「일본의 국채발행 여건변화 및 영향」, 『해외경제정보』 2009-64.
- 한기정(2009),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 한나라당(200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나라당 공청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5), 「인구 고령화 시대,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
- 행정안전부(2010),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꿉니다」.
- 허순임 · 김미곤 · 이수형 · 김수정(2009),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경준(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 홍영호 외 12인(200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内閣府(2000), 「人口減少下の経済に関する研究会」, 中間報告書.
- 經濟産業省(2006), 『2006 年度版 通商白書』.
- 牧野文夫(2006), 「人口減少と技術進歩」, 大淵寛 · 森岡仁編著 『人口学ライブラリー—5人口減少時代の日本 経済』, 原書房.
- 吉川洋(2006), 「經濟教室日本復活の針路」, 日本經濟新聞朝刊.
- 經濟産業省(2006), 『2005 年度版 通商白書』, 2005 및 『2006 年度版 通商白書』.
- ホリオカ, C.(1996), 「貯蓄と遺産・相続の経済学」, 高山 · ホリオカ · 太田編著, 『高齢化社会の貯蓄と遺産・相続』, 日本評論社.
- Abel, Andrew(2000), “The Effects of a Baby Boom on Stock Prices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Presence of Social Security”, Mimeo,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guiar, Mark and Erik Hurst(2005), "Consumption versus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3(5).
- Allen N. Berger & Gregory F. Udell(2002),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Lend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Royal Economic Society*, Vol. 112(477).
- Arrow, K. J.(1963),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 Auerbach, Alan J. and Laurence J. Kotlikoff(1987),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Baker, David, Joseph J. Sudano, Jeffrey M. Albert, Elaine A. Borawski, and Avi Dor(2001), "Lack Of Health Insurance And Decline In Overall Health In Late Middle Ag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Baumol, W. J.(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 Banks, James, Richard Blundell and Sarah Tanner(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4).
- Becker, G. S., K. M. Murphy and R. Tamura(1990),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5).
- Berhanu, Alemayehu and Warner E. Kenneth, "The Lifetime Distribution of Health Care Costs",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39(3).
- Bergantino, Steven(1998), "Life Cycle Investment Behavior, Demographics, Asset Prices", Ph. D Dissertation, MIT.
- Berger, Allen N. and Gregory F. Udell(1996), "Universal Banking and the Future of Small Business Lending in Saunders, A. and I. Walter edited, *Financial System Design: The Case for Universal Banking*", Irwin Publishing.
- Behrman, Jere, Robert Pollak and Paul Taubman(1982), "Parental Preferences

- and Provision for Progen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0(1).
- Bernheim, B. Douglas(1991), “How Strong Are Bequests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
- Bernheim, Douglas, Jonathan Skinner and Steven Weinberg(2001),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e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4).
- BIS(2009. 9), *BIS Quarterly Review*.
- Bloom, David E., David Canning and Jaypee Sevilla(2001), “Economic Growth and the Demographic Transition,”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Brooks, Robin(1998), “Asset Markets and Savings Effects of Demographic Transitions”,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Browning, Martin and Annamaria Lusardi(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4(4).
- Burns, Sharon A. and Richard Widdows(1988), “An Estimation of Savings Needs to Adequately Fund Baby Boomers’ Retirement”, In V. Hampton (ed.)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O: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15-18.
- Carroll, Christopher D.(1997), “Death to the Log-Linearized Consumption Euler Equation! (And Very Poor Health to the Second-Order Approximation)”,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_____ (2001),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and without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3).

- Center on an Aging Society(2000), Center on an Aging Society Analysis of Data from the 2000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 Clark, C.(1940),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an & Co. Ltd.
- Clark, Lane & Peacock(2010), Pension Buyouts 2009, Nomura Research Institute.
- Cocco, Joao F. (2005), "Portfolio Choice in the Presence of Housing",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18.
- Cox, Donal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5(3).
- Cox, Donald and Mark Rank(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74(2).
- CSIS(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 Current Population Survey(2005),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 Cutler, David M., James M. Poterba, Louise M. Sheiner, Lawrence H. Summers and George A. Akerloff(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 Davis, E. Philip and Christine Li(2003), "Demographics And Financial Asset Prices In The Major Industrial Economies," *Economics and Finance Discussion Papers*, Economics and Finance Section, School of Social Sciences, Brunel University.
- Deaton, Angus and Christina Paxson(1994),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2(3).
- Deloitte Consulting LLP(2006), Annual 401(k) Benchmarking Survey: 2005/2006 Edition.
- Dent, Harry S., Jr.(1998), The Roaring 2000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Duncan, Greg J., Olivia S. Mitchell and James N. Morgan(1984), "Framework for

- Setting Retirement Savings Goal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18(1).
- Engen, Eric M., William G. Gale and Cori E. Uccello(2000), “The Adequacy of Household Saving”, *CRR WP*,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Evans, R. G.(1974), “Supplier-induced Demand: Som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 in M. Perlman(ed.), *Economics of Health and Medical Care*, Halsted Press Book.
- Feldstein, M.(2010), “Preventing a National Debt Explosion”, NBER Chapters,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 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Feldstein, M. and E. Rangelova(2001), “Individual Risk in an Investment-Based Social Security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 Feldstein, M. and Charles Horioka(1980),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Economic Journal*.
- Fisher, A. G. B.(1935), *The Clash of Progress and Security*, London: MacMillan & Co. Ltd.
- Fixler, D. and D. Siegel(1999),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0.
- Flavin, Marjorie and Takashi Yamashita(2002), “Owner-Occupied Housing and the Composition of the Household Portfolio”, *American Economic Review*.
- Fougère, M. and M. Mérette(1999), “Population Ageing and Economic Growth in seven OECD countries”, *Economic Modelling*, Vol. 16(3).
- Freeman, R. B.(1995), “Are Your Wages Set in Beij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3).
- Fuchs, V. R.(1980), *The Service Economy*, New York and London: Colombia

University Press.

Gorton, G. and A. Winton(2002), “Financial Intermediation”,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Groome, Todd, Nicolas Blanher, and Parmeshwar Ramlogan(2006), “Aging and Financial Market”, *A Quarterly Magazine of the IMF*, Vol. 2, No. 3.

Grossman, Sanford J. and Guy Laroque(1990), “Asset Pricing and Optimal Portfolio Choice in the Presence of Illiquid Durable Consumption Goods”, *Econometrica*, Vol. 58(1).

Gruber, J., and D. A. Wise(2005),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Fiscal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Haber, Stephen(2008), “Differential Paths of Financial Development: Evidence from New World Economies”, NBER Chapters, in: *Understanding Long-Ru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Kenneth L. Sokoloff*,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Hamermesh, Daniel(1984), “Consumption during Retirement: The Missing Link in the Life Cycle”,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66(1).

Holzmann(2006), Robert and Edward Palmer(eds.), *Pension reform: Issues and Prospects for Non-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NDC) Schem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Hubbard, R. Glenn, Jonathan Skinner and Stephen P. Zeldes(1995). “Precautionary Saving and Social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Hurd, Michael(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s”, *Econometrica*, Vol. 57(4).

Hviding, K. and M. Mérette(1998), “Macroeconomic Effects of Pension Reforms in the Context of Ageing: OLG Simulations for Seven OECD Countries,” *Technical Report*, OECD.

- ICI(2009),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 IMF(2005), “Household Balance Sheets”,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___(2009),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Outlook and Medium Term Policies After the 2008 Crisis”.
- ___(2010), World Economic Outlook.
- Inman, R. P.(ed.)(1985), “Managing the Service Economy: Prospects an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Jackson, R., Howe, N. and K.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SIS.
- Joseph J. Sudano Jr, PhD, & David W. Baker, MD, MPH(2003), “Intermittent Lack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Use of Preventive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 Kane, R. A., R. L. Kane and R. C. Ladd(1998), “The Heart of Long-Term C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CMU(2008), Urban Institute analysis of 2008 ASEC Supplement to the CPS.
- KFF(2007), Analysis of 2007 NHIS data.
- King, R. & R. Levin(1993), “Stock Markets Banks and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
- Kotlikoff, Laurence and Laurence Summers(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4).
- Levine, Ross(1997),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5(2).
- Mankiw, N. Gregory and David Wei(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Elsevier, Vol. 19(2).
- Martins, Oliveira, Frédéric Gonand, Pablo Antolín, Christine de la

- Maisonneuve and Kwang-Yeol Yoo,(2005),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420.
- Menchik, Paul(1980),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S. Distribution of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4(2)
- Miles, David(1999), “Modell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Economy”, *Economic Journal*, Vol. 109.
- MMI(2008), *MMI Industry Guide to Managed Investment Solutions*, The Money Management Institute.
- Modigliani, Franco, & Richard H. Brumberg(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enneth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Munnell, Alicia H., & Annika Sundén(2003), “Death and Dollars: The Role of Gifts and Bequests in America”, The Brookings Institution
- Nyman, J. A.(1999),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Revisite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 OECD(2001), “Economic Survey-Korea 2001”.
- _____(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_____(2009a), “Government at a Glance”.
- _____(2009b), “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 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 _____(2009c), “Revenue Statistics”.
- _____(2010a), “Economic Outlook”.
- _____(2010b), “Labor Force Statistics”.
- Orenstein, Mitchell A.(2008), “Privatizing Pensions: The Transnational

- Campaign for Social Security Refor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Pagano, Marco(1993), “Financial Markets and Growth: An Over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37.
- Pagano, Marco and Paolo Volpin(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17(4).
- Palumbo, Michael(1999), “Uncertain Medical Expenses and Precautionary Saving near the End of the Cycl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6(2).
- Pauly, M. V.(1968),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s*.
- Poterba, James(2001), “Taxation and Portfolio Structure: Issues and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_____ (2004), “Valuing Assets in Retirement Saving Accounts”, *NBER Working Pap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Raa, T. & Wolff, E. N.(1996), “Outsourcing of Services and the Productivity Recovery in U.S. Manufacturing in the 1980s”,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 Sadahiro, Akira and Manabu Shimasawa(2002), “The Computab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n Endogenous Growth Mechanism”, *Economic Modelling*.
- Schettkat, R. and L. Yocarini(2005), “The Shift to Services Employ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 Scholz, Karl and Ananth Seshadri(2006.11). “Children and Household Wealth”, Mimeo, University of Wisconsin.
- Sterling, William and Stephen Waite(1998), “Boomernomics: the Future of Your

- Money in the Upcoming Generational Warfare”, The Ballantine Publishing Group.
- UN(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 Whitehouse, Edward(2007), “Pensions Panorama”, World Bank.
- Wood, A.(1995),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9(3).
- _____ (2003),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An Assessment of Rec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STI Working Paper*, OECD.
- World Bank(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Yoo, Peter S.(1994), “Age Distributions and Returns of Financial Asset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 6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장동식, 최영목, 김소연,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이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만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윤 성 훈

Univeris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실장)
(E-mail : shyun@kiri.or.kr)

진 익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경영전략실 실장)
(E-mail : realwing@kiri.or.kr)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유 진 아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ina.yu@kiri.or.kr)

오 영 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화연구실 실장)
(E-mail : ysoh@kiri.or.kr)

변 해 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w.byun@kiri.or.kr)

조 용 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정책보고서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발행일 2011년 7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35-3

정가 10,000원